

2014. 2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2014~2018)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중앙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9
제1절 화장 중심 장사정책의 기본 계획 및 방향	9
제2절 화장 중심 장사정책을 위한 추진 과제	11
제3장 전국 및 충청북도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25
제1절 화장 중심으로 장묘문화 전환	25
제2절 전국 장사시설 현황	28
제3절 충청북도의 화장을 추이	30
제4절 충청북도의 장사시설 현황	32
제4장 국내외 장사시설 사례 연구	58
제1절 국내 장사시설	58
제2절 국외 장사시설	79
제5장 장사문화에 대한 충북도민 의식조사	104
제1절 도민의식조사 개요	104
제2절 도민 의식조사 결과	107
제6장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요 및 공급량 추계	125
제1절 장사시설 수요 추계	125
제2절 장사시설 수급 추계	140
제3절 재원조달 방안	161
제7장 충청북도 장사시설 중장기 공급계획	167
제1절 충북도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의 기본방향	167
제2절 충청북도 장사시설 중장기 확충 전략	175

그림 및 표

<그림 2-1> 중앙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9
<그림 3-1> 진천군 및 남부 3군의 화장률 변동치	32
<그림 5-1> 희망 장례장소	108
<그림 5-2> 부모님 및 본인 장사방법	108
<그림 5-3> 희망하는 묘지 유형	111
<그림 5-4>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111
<그림 5-5>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113
<그림 5-6> 화장 후 유골 안장 방법	114
<그림 5-7> 충북도의 장례 형태의 발전 방향	116
<그림 5-8> 장사시설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책 방향	117
<그림 5-9> 자연장에 대한 인지	117
<그림 5-10>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	118
<그림 5-11> 충북도내 봉안시설의 적정 안치기간	120
<그림 5-12> 선호하는 봉안시설	120
<그림 5-13> 봉안당 안치기간 15년 이후 유골 처리에 대해	121
<그림 5-14> 종합장사시설 확충에 어려운 점	121
<그림 5-15> 충청북도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23
<그림 6-1> 충북도 연령별 장래 인구추계	127
<그림 6-2> 충청북도 성별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28
<그림 6-3> 충청북도 성별 장래 사망자 추계-통계청	128
<그림 6-4> 충청북도 장래 사망률 추계-선형분석	129
<그림 6-5> 충청북도 장래 사망률 추계-로그분석	129
<그림 6-6> 시계열분석(선형, 로그)과 통계청에 의한 사망자 추계	131
<그림 6-7> 시군별 최근 5년간 인구비중(청주, 충주, 제천, 청원)	134
<그림 6-8> 시군별 최근 5년간 인구비중(보은, 옥천, 영동, 진천, 과산, 음성)	134
<그림 6-9> 시군별 최근 5년간 인구비중(단양, 증평)	134
<그림 6-10> 권역구분 및 기존 화장시설 현황	139
<그림 6-11> 충청북도 화장을 추이(2005-2012년)	143
<그림 6-12> 선형 회귀모형에 의한 화장을 추계선	144
<그림 6-13> 로그 회귀모형에 의한 화장을 추계선	144
<그림 6-14> 거듭제곱 회귀모형에 의한 화장을 추계선	145
<그림 7-1> 충청북도 및 인근 화장시설의 위치	170

그림 및 표

<표 2-1> 화장중심 인구 증가율	10
<표 2-2> 화장로 수요 및 공급추계	12
<표 2-3> 보건복지부의 2017년까지 자연장지 부족/공급 추계	13
<표 2-4> 자연장지 수요 및 공급 추계	13
<표 2-5> 보건복지부의 2017년까지 봉안당 부족/공급 추계	16
<표 2-6> 봉안당 수요 및 공급추계	16
<표 2-7> 연차별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투자계획(안)	24
<표 3-1> 전국 연도별 화장률 추이	25
<표 3-2> 연령별 화장률 추이	26
<표 3-3> 전국의 사망자, 화장자 및 화장률 현황	26
<표 3-4> 시도별 화장시설 설치현황('13.7월 현재)	28
<표 3-5> 전국 자연장지 설치 현황('12.12월 현재)	28
<표 3-6> 전국 봉안당 설치 현황('12.12월 현재)	29
<표 3-7> 충북도 최근 8년간 평균 화장률	30
<표 3-8> 충북 화장률 증가 추이(2007~2012)	30
<표 3-9> 충청북도 공설 화장시설 화장로 수	32
<표 3-10> 충청북도 공설묘지 운영현황	33
<표 3-11> 충청북도 법인묘지 운영현황	33
<표 3-12> 충청북도 공설 봉안당 운영현황	34
<표 3-13> 충청북도 법인 봉안당 운영현황	34
<표 3-14> 충청북도 종교단체 봉안당 운영 현황	35
<표 3-15> 충청북도 공설 자연장지 설치현황	36
<표 3-16> 충청북도 장례식장 현황	37
<표 3-17> 충청북도 장례지도자 교육기관 현황	37
<표 4-1> 인제종합장묘센터 주요시설 현황	61
<표 4-2>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62
<표 4-3> 가족봉안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63
<표 4-4> 옥외벽식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63
<표 4-5> 승화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64
<표 4-6> 인제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사용료	64
<표 4-7> 봉안시설 이용안내	67
<표 4-8> 남해 추모누리 묘역별 사용료 및 관리비	70
<표 4-9> 화장시설 사용료	70
<표 4-10> 자연장지 사용료	71
<표 4-11> 시설이용 안내	74
<표 4-12> 장사시설 사용료	74

그림 및 표

<표 4-13> 사용료 및 관리비	77
<표 4-14> 이이모리 영원조합 묘지 사용허가 상황	80
<표 4-15> 이이모리 영원조합 화장시설 사용료	81
<표 4-16> 이이모리영원조합 화장시설 사용현황	81
<표 4-17> 치구시노오카 화장시설 시설현황	83
<표 4-18> 화장시설 운영조합 구성 시의 인구	85
<표 4-19> 홍콩 장사시설 운영현황(2008~2011)	86
<표 4-20> 홍콩 장사시설 공설화장시설 현황	87
<표 4-21> 홍콩 장사시설 봉안능력 현황	87
<표 4-22> 취리히 시립묘지(Städtische Friedhöfe)	91
<표 4-23> 일본 광역 장사시설 참여 자치단체 현황	101
<표 5-1> 장사문화관련 시민의식조사의 개요	105
<표 5-2> 장사문화관련 도민의식조사의 조사 항목	105
<표 5-3> 도민의식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6
<표 5-4> 희망하는 장사방식 교차	109
<표 5-5>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교차	112
<표 5-6>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교차	113
<표 5-7> 화장 후 유골 안장 방법	115
<표 5-8>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	118
<표 5-9> 자연장 활성화의 조성 주체	119
<표 5-10> 자연장의 바람직한 형태	119
<표 5-11>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자연장 신설에 대한 의견	119
<표 5-12> 종합장사시설 확충에 어려운 점*교차	122
<표 5-13> 충청북도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123
<표 6-1> 충청북도 인구 및 사망자 추이(2005~2012년)	125
<표 6-2> 충청북도 연령별 장래 인구추계	126
<표 6-3> 충청북도 장래인구 및 사망자 추계-통계청	127
<표 6-4> 시계열분석과 통계청 자료에 의한 사망자 및 사망률 추계	130
<표 6-5>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추이 현황(2005~2012년)	133
<표 6-6>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비율(최근 5년) 및 장래 인구비율 추계	133
<표 6-7> 충청북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2013~2030년)	135
<표 6-8> 충청북도 시군별 사망자 추이(2005~2012년)	136
<표 6-9> 충청북도 시군별 사망률 추이(2008~2012년) 및 도 대비 시군별 비중	137
<표 6-10> 충청북도 시군별 장래 사망률 추계(2013~2030년) 분석	137
<표 6-11> 충청북도 시군별 장래 사망자 추계(2013~2030년) 분석 결과	138
<표 6-12> 충청북도 권역별 장래 사망자 추계(2013~2030년) 분석 결과	139

그림 및 표

<표 6-13> 충청북도 화장시설 현황	141
<표 6-14> 현재 화장시설에 대한 추가 수용가능 사망자 수(화장을 100% 가정)	142
<표 6-15> 현재 화장시설에 대한 추가 수용가능 사망자 수(화장을 59.0% 가정) ..	142
<표 6-16> 충청북도 화장을 추이(2005~2012년)	143
<표 6-17> 회귀모형에 의한 화장을 장래 추계(2013~2030년)	144
<표 6-18> 권역별 장래 화장을 추계로 분석한 수용가능 사망자 수	145
<표 6-19> 충청북도 시군별 화장을 추이	146
<표 6-20> 충청북도 시군별 장래 화장을 추계분석	147
<표 6-21> 충청북도 시군별 화장자수 추계	147
<표 6-22> 충청북도 유골 안장방법별 비율 추계	148
<표 6-23> 충청북도 시군별 자연장 추계	149
<표 6-24> 충청북도 시군별 봉안자 추계	150
<표 6-25> 화장 후 자연장 시설 추계	150
<표 6-26> 화장 후 봉안시설 추계	151
<표 6-27> 자연장 수급 추계	151
<표 6-28> 봉안시설 수급 추계	152
<표 6-29> 자연장 수요 추계에 따른 조성 면적 및 비용	154
<표 6-30> 봉안시설 수요 추계에 따른 조성 면적 및 비용	154
<표 6-31> 충청북도 시군별 매장 추계(2013~2030)	155
<표 6-32> 충청북도 시군별 매장 추계(2013~2018)	156
<표 6-33> 충청북도 시군별 매장 추계(2019~2030)	156
<표 6-34> 매장 수요 추계 합계	157
<표 6-35> 매장 수요 추계에 따른 묘지 조성 및 비용(2014~2018)	158
<표 6-36> 충청북도 소재 장례식장 분포 현황	158
<표 6-37> 충청북도 소재 장례식장 현황	159
<표 6-38> 충북 장례식장 빈소 수요 추계	160
<표 6-39> 화장시설 재원편성	162
<표 6-40> 자연장 시설 재원편성	163
<표 6-41> 봉안시설 재원편성	164
<표 6-42> 평장시설 재원편성	165
<표 7-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8
<표 7-2> 화장로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69
<표 7-3> 서울추모공원 1구 화장시간동안 대기측정 평균값	169
<표 7-4> 충청북도 인근화장시설까지 소요거리 및 시간	170
<표 7-5> 2007년도 장사업무안내	208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장사관련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 인구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개인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매장 묘지의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묘지의 비용 상승 및 부족 등에 의한 사회적 폐해의 요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장사관행이 변화하고 있음.

□ 화장 문화로의 전환

- 전국 화장률은 1991년 17.8%에서 2001년 38.3%, 2005년 52.6%, 2008년 61.9%, 2011년 71.8%, 2012년 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화장률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아직 화장률이 낮은 수준
- 2009년 현재 일본 99.0%, 대만 89.6%, 홍콩 87.1%, 스위스 82.5% 등임.

□ 화장시설의 불균형 분포와 노후화 문제

- 화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화장시설 설치와 장사 관련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인접 지역과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결과 지역 및 장사시설 유형간의 수급이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51개소이며, 화장로는 277로이지만 화장로 10로 이상 화장시설(14%)은 대부분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소도시 지역에는 화장로 4로 이하(66%)의 소규모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2009년 현재 화장률이 99.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전체 화장 시설 중 화장로 4로 이하가 80.9%이며 화장로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음.

- 현재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 수급은 문제가 없으나 지리적(이동시간 등) 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화장시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됨.
-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최대 10배 이상의 사용료 부담과 화장을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최근 건립되는 화장시설은 친환경, 현대화 시설로 운영 중이나 기존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임.
- 2012년 8월 현재 전국 53개 화장시설 중 1980년 이전에 설치된 화장시설은 전체의 51%인 27개소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개장한 서울추모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울산시 하늘공원, 용인시 평온의 숲, 경주시 하늘마루 등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등장하고 있음.

□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갈등

- 화장시설은 묘지나 봉안시설 등 다른 장사시설보다 더 기피되고 있는데, 불쾌감과 환경오염 및 보건문제를 유발시키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거주지 주민의 설치 반대에 부딪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봉안당 설치 실태

- 화장률 및 개장유골 증가 등으로 유골 안치시설인 봉안당 설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봉안당은 2001년 100개소에서 2011년 35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봉안능력은 335.1만구로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동안 공설 봉안당은 66개소에서 130개소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사설 봉안당은 34개소에서 225개소로 약 6.6배 증가함.
 - 공설 봉안당은 수요에 비하여 시설인프라가 부족하며, 공설 봉안당과 사설 봉안당의 이용료 가격 차이가 큼.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10~30만원 수준지만, 사설 봉안당은 100~1,000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대단히 큼.

□ 자연장 선호 증가

-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자연장지 인프라 부족, 조성규제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안치율이 저조한 상태임.
 - 정부가 자연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장 방식을 사용한 경우가 2011년 5%에서 2012년 14%로 증가하였음.
- 공설 및 법인묘지와 같은 집단묘지 재개발을 통하여 자연장지 등의 조성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2011년 전국 집단묘지는 463개소, 매장가능 기수는 약 245.5만구로 묘지 설치 규제 등으로 집단묘지 신규 설치는 법인묘지만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공설묘지는 재개발 등으로 감소 추세임.
 - 공설묘지의 경우 서울, 부산, 경북의 대도시 매장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강원, 제주 등은 30% 이하 수준임.

□ 지역 내 화장시설과 추모공원 설치의 증가

- 화장의 증가로 지자체는 지역 내에 화장시설과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경우 이를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음.
 - 최근 서울 추모공원과 세종시의 은하수공원뿐만 아니라 용인시와 울산시의 사례가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설치·조성·관리의 책임이 있음(장사법 제13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법 규정
 -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충의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음
 - 제13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시설 확충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함.

- 지자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을 주도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적 문제와 함께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주변에 소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거부 문제 등으로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서울 추모공원의 경우 지역주민 반대를 설득하고 건립하는데 13년 소요되었음.
- 반대로 장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장사시설이 설치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시설이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경우에 주민과 행정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 공급은 수요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의 장사에 관한 행정 의무 이외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북도 차원에서 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목적

기본 취지

- 본 연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의 연도별 출생 및 사망자의 추이, 사망자 중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의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충청북도가 필요로 하는 장사시설 종류별 수급전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세부 목표

-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 타 시도 및 선진국 장사시설의 현황 및 분석
-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추계
- 장사시설의 친환경적, 서민경제적, 가족 친화적 설치 방향 제시
- 장사시설 확충방안 및 발전방안 제시.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공간적 범위: 충청북도 12개 시·군

(2)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년도: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며, 가능한 최근 자료 사용

○ 계획목표년도: 2018년

○ 계획기간: 2014년~2018년(5년), 단, 수급추계기간은 2030년까지

(3)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분석
- 전국 및 충북의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 국내·외 모범 장사시설 조사
-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 의식 표본조사

-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요 및 수급 전망
- 공설묘지의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 처리 방안
- 장사시설 입지 전략으로서 갈등 매뉴얼 개발
- 중·장기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내용반영

○ 각 부분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들로 이루어짐.

- 중앙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분석
 - 관련 법규, 보건복지부 지침, 보도자료 분석
-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 전국과 충청북도 공설 및 범인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현황
 - 충청북도 장사시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 충청북도 장사시설 이용 실태 분석
 - 관련법규 분석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도 조례)
- 국내·외 장사시설 분석
 - 시군 단위의 수법적인 장사시설 설치사례 및 시사점 제시, 예로 남해 추모공원, 전남 담양 갑평공원, 공주 나래원, 인제 하늘내린도리안, 경기양평의 하늘숲추모원(산림청) 등 벤치마킹
 - 외국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바람직한 장사시설 설치방안이나 정책방향 제시
-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 의식 표본조사
 - 설문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시민의식 조사결과 분석
 - 선호 장사방법 및 사유, 선호 봉안시설, 자연장 도입 선호 이유와 방법 등 중점
-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요 조사 및 수급 대책
 -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시민의 수요분석 : 사망, 출생률 및 화장률, 화장 후 자연장(수목형, 잔디형 등) 추이분석
 - 연도별, 유형별 장사시설의 수요전망 및 공급 추정
 -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의 수급대책
- 공설묘지의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 처리방안
 - 공설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 처리에 관한 사항

- 지역, 유형, 규모별 형태 파악
-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당사자 간 갈등관리 방안 제시
 -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선정·재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절차 제시
 - 갈등발생 시 해결을 위한 절차 제시: 갈등 주체별 제시
 - 갈등예방 및 완화를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 제시
- 장사시설 관련 제도 개선 및 홍보방안 마련
 -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관리 등 설치 및 촉진 방안 등
- 중·장기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 개선방안
 -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 친환경적, 주민 친화적 장사환경 조성방안 마련
 - 기존 시설의 공동이용과 공동건설을 위한 시·군 간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 성방안 제시
 - 권역별 장사시설 설치방안 마련
 - 충청북도 장사시설 설치 방향에 대한 장사시설 관계자, 시·군 담당공무원 의견과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 의견 반영
 -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헌 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진행됨.
- 문헌조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충북도 조례 등 분석
 - 전국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분석
 -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전망
 -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국·내외 장사시설 조사
-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충북도민들의 장사문화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등 장 사방법 선호도 조사

- 묘지 확보 방법
 - 자연장에 대한 인식
 - 가족공원/추모공원 등 종합장사시설 설치 의견 등
- 조사방법
- 직접 조사 및 시·군 의회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 충청북도민 약 800명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 인구비례 할당에 따라 조사
- ※ 성별,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 거주 지역별(권역별) 충화표본 추출

○ 현장조사

- 남해 추모공원, 전남 담양 갑평공원, 공주 나래원, 인제 하늘내린도리안, 경기 양평의 하늘숲추모원(산림청) 등을 현장 방문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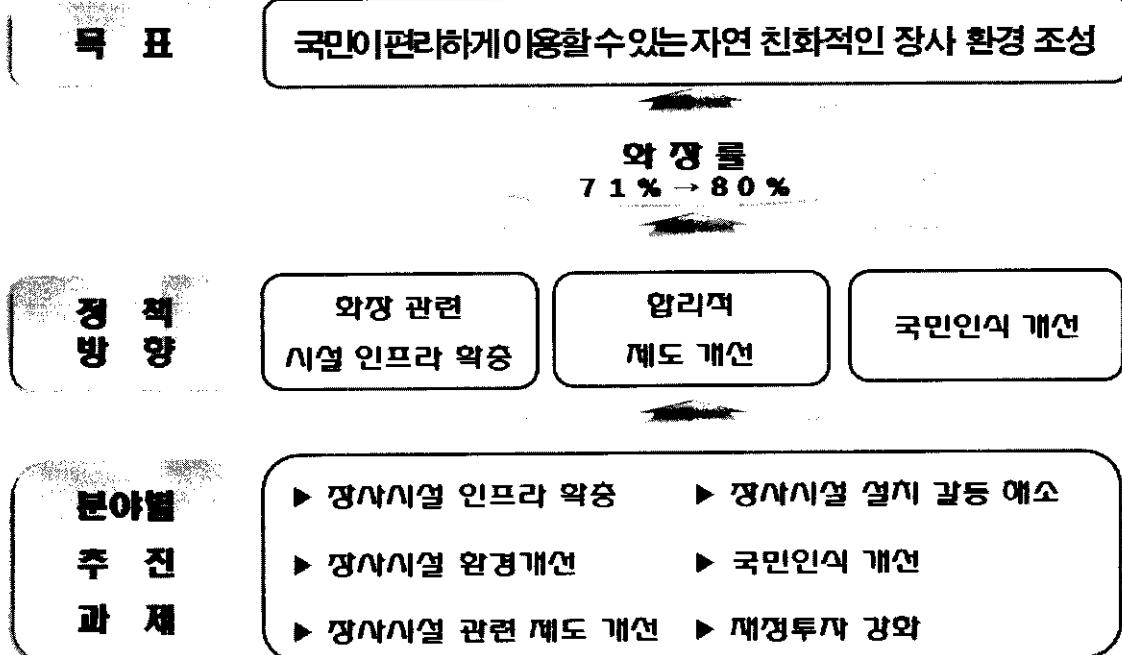
○ 전문가 간담회

- 모범 국·내외 장사시설 관련
- 자연장 유도 방안
- 친환경적 장사문화 육성 방안
- 갈등사례관리를 조정할 갈등 메뉴얼
- 충북도 중장기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 논의

○ 시·군 관계자 의견수렴 및 인터뷰

- 충청북도 장사시설 설치방향에 대한 시·군의 협조 및 의견 반영
- 시·군 장사시설 관계자 의견 수렴

제2장 중앙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그림 2-1> 중앙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제1절 화장 중심 장사정책의 기본 계획 및 방향

- 인구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할 전망, 화장률도 2011년 71.1%에서 2017년에는 8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11.23.)

<표 2-1> 화장중심 인구 증가율

구분	2008~2012년	2013년~2017년	비고
총인구 (증가율)	48,607천명->50,004천명 (2.9% 증가)	50,220천명->50,977천명 (1.5% 증가)	
노인인구 (65세 이상) (증가율)	5,016천명->5,890천명 (17.4% 증가)	6,138천명->7,119천명 (15.9% 증가)	
노인인구비율	10.3%->11.8%	12.2%->14.0%	
연간사망자 수 (증가율)	246천명->279천명 (13.4% 증가)	289천명->328천명 (13.5% 증가)	
화장률	61.9%->71.1%	74.2%->79.9%	

○ 중앙정부의 화장 중심의 장사시설 확충 계획

- 기본방향

- (화장시설) 지역적 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확충
- (봉안당)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
- (자연장지) 묘지 및 봉안당 수요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지속 확충
- (공설묘지) 신규 설치는 제한하고, 자연장지화 추진

- 구체적 내용

- (화장시설 확충) 화장시설이 접근성(이동시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 절차적 균형 마련
- (봉안시설 확충) 공설 봉안시설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
- (자연장지 확충)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 (묘지 감축)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 유도

○ 중앙정부의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

- 화장시설

- 화장시설 사용료의 차등부과는 화장시설 설치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과도한 차등부과로 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자자체에 화장시설 사용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조례 개정 권고

- 봉안시설/자연장

- 일부 사설봉안시설은 이용료¹⁾가 지나치게 비싸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불공정 운영사례로 인한 피해 우려
- 사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강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장례식장

- 장례식장 종사자는 물론 유족이나 문상객들이 감염성 폐기물, 실내 대기오염물질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건위생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음.
-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용품 구매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 민원 야기
-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폭리 가능성 상존
-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가격대비 수준(질, 형태 등)을 유족들이 인식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만 민원 발생
-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화 추진(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국민인식 개선

- 주민 · 환경친화적 모범 자연장 조성 사례를 적극 홍보 전파하여 기존의 부정적 인식 변화 유도(지역주민 우수시설 견학 등)
- 장사시설 · 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을 종교단체, 노인단체, 시민 ·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초 · 중 · 고등학생에 대해 올바른 장사문화 이해 및 고취를 위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방안 강구(교과부)
- 장사문화에 대해 관심이 높은 특정시기(추석, 한식 등)를 활용한 집중 홍보 · 캠페인 실시와 전문가 기고, 세미나 등 지속적인 릴레이 홍보 실시

제2절 화장중심 장사정책을 위한 추진 과제

1.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1) 사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가격개시 의무 부여(장사법 제24조),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미규정 되어 있음.

화장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화장 관련 장사시설 확충

- 화장률 및 자연장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를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함.
 - 시설확충의 우선순위는 화장시설(개보수 포함) → 자연장지 → 봉안시설의 순임.
 - 봉안시설은 민간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중단기적으로 적정 규모로 확대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함.
- 화장시설(화장로)

<표 2-2> 화장로 수요 및 공급추계

(단위 : 로)						
구 분	계	' 13	' 14	' 15	' 16	' 17
수요추계		353	355	357	360	362
부족분(누계)		-30	-32	-34	-37	-39
공급추계	68	20	12	12	12	12

- (수요전망)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택지개발 및 기존묘지 정리 등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 등으로 화장 수요는 지속 증가

* 화장수요 전망 : '11) 248천건 → '13) 275천건 → '15) 300천건 → '17) 325 천건

- (수요추계) '13년 30로 → '15년 34로 → '17년 39로 부족
- 화장로 1로당 1일 처리건수를 4구*로 가정하고, 시·도 경계를 무시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 * 화장로 1로당 적정 화장건수는 1일 3구이나, 개장유골 및 죽은 태아는 화장 소요시간이 일반 사체의 1/2를 감안하여 1일 4구로 가정
- (공급추계) '13년 20로 신규 설치, '14년부터 '17년까지 48로를 추가 설치하여 총 68로 확충 추진

- 화장수요 증가 추세와 화장시설 설치기간(3~5년 이상) 고려 확충
 - * 기존 화장시설의 노후로 인한 재건축(기존시설 대체)에도 별도 재정 소요

○ 자연장지

<표 2-3> 보건복지부의 2017년까지 자연장지 부족/공급 추계

(단위: 1,000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전체	-32	33	-47	33	-67	33	-91	34	-119	34	167				
서울	-2	2	-3	2	-7	3	-12	4	-16	5	16				
부산	-3	4	-5	4	-7	3	-8	3	-11	3	17				
대구	-2	2	-3	2	-4	2	-5	2	-6	2	10				
인천	-1	1	-2	1	-3	1	-4	2	-6	2	7				
광주	0	-	0	-	-1	-	-1	-	-1	-	-				
대전	-3	3	-4	3	-5	3	-7	2	-8	2	13				
울산	-1	1	-1	1	-2	1	-2	1	-3	1	5				
경기	-4	4	-6	4	-7	4	-11	4	-14	4	20				
강원	-1	1	-2	1	-3	1	-3	1	-5	1	5				
충북	-1	1	-1	1	-1	1	-2	1	-2	1	5				
충남	-2	2	-3	2	-3	2	-5	2	-7	2	10				
전북	-2	2	-2	2	-3	2	-4	2	-5	1	9				
전남	-3	3	-4	3	-6	3	-8	3	-10	3	15				
경북	-3	3	-4	3	-6	3	-8	3	-10	3	15				
경남	-4	4	-6	4	-8	4	-10	4	-13	4	20				
제주	0	-	-1	-	-1	-	-1	-	-2	-	-				

※ 자료 :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012.

<표 2-4> 자연장지 수요 및 공급 추계

(단위: 1,000구)

구 分	계	' 13	' 14	' 15	' 16	' 17
수요 추계	-	2,956	3,003	3,023	3,047	3,075
부족분	-	-32	-47	-67	-91	-119
공급 추계	167	33	33	33	34	34

- (수요전망) 단기적으로는 조성 기반·인지도 부족 등으로 수요가 낮으나 친환경 장사정책 추진 및 홍보 등으로 점진적 증가 전망

※ 유골안치 선호도(보사연) : 자연장(38.9%), 봉안시설(38.3%), 산골(22.8%)

- (수요추계) '13년 32천구 → '15년 67천구 → '17년 119천구 부족
- 자연장지가 없는 지자체는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서울 등 7개 광역시는 통합 이용, 나머지 시·군은 자기 지역 이용을 가정

- (공급추계) '17년까지 매년 34천구씩 총 167천구 확충 추진

- '13~'17년까지 안치수요 119천구의 2배인 238천구를 확충하되, 공공부분에서 70%인 167천구를 공급 확충
- 공설 자연장지의 지역적 편중(도지역 155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 불과)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장지가 없는 자자체에 우선적 설치 추진
* 자연장지 설치 자자체 : 22개 시군구 23개소(도지역 17개 시군 18개소)
- 정부는 2012년 6월부터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가능 지역 : 주거지역(일반·준주거), 상업지역(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일반·준공업)
- 앞으로도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하여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추진할 계획

- 선진국의 자연장 장사시설 운영사례

- 독일 : Freiswald라는 브랜드명의 수목장림은 1999년 스위스 윌리 자우터씨에 의해 창안되어 2001년 이후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된 자연 상태의 숲을 그대로 이용하는 장법
- 영국 : 공원묘지, 공원 또는 소구역의 수목생육지에 있는 관목이나 교목을 선택하여 나무 주변에 화장한 분골을 묻거나, 어린나무 꽃나무를 조성하여 최소한의 면적을 활용,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하고 있으며 Rose garden이라고 불리우는 장미정원은 가족단위 산골로써 장미를 심어놓은 것이 특징
- 스웨덴 : 산골방법은 유골함을 땅에 묻거나 화장한 유골을 Minneslund(회상의 숲)로 불리우는 숲에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골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유족이나 참배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와 유가족이 직접 산골할 수 없고 산골시설 잔디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일본 : 화장한 유골을 자연 속에 뿌리는 산골이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으나 일본 시민단체인 「장송의 자유를 추진하는 회」가 화장한 유골을 산골하기 시작하여 사회 각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옴.

- 선진국의 장사시설을 통한 시사점

- 선진국 장사시설은 무엇보다 친환경적 시설로 조성된 것이 특징

- 수목과 잔디 등으로 조경하여 묘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함.
 - 역사적 유물이나 일정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유가족이나 조문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문화·공간 등 종합적인 시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시기반시설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도시계획의 원칙에서 장사시설은 죽은자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자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시설로 계획되고 이를 공원화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기존 집단묘지 내 자연장 등의 장사시설의 다양화

- 선진국의 자연장 시설은 단순히 유골을 뿌리거나 묻는 장소가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징적 장소
 - 상징적인 명칭과 함께 추모 상징물을 설치, 엄숙하면서도 경건함을 일깨워 주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사시설을 공급

- 미래 수요에 대비한 적정한 장사시설을 설치

- 중장기적 수급계획에 따라 적정한 장사시설 설치방안 마련,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음.
 - 인근지역 지자체간의 장사시설 내 공동설치로 상호간에 이익, win-win 방안으로 적정한 장사시설을 주민들에게 공급.

- 낙후된 산골시설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미흡

-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골에 관한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특히 화장한 유골 및 개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시설설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보건위생상 또는 미관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화장한 유골을 물어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일정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
 -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운영은 상업성 배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설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하는 것은 후선만 가중시키고 지나친 상업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음.

- 장사시설의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의 접근이 필요

- 자연장지 조성은 향후 발생하는 다양한 장사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되,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하도록 구상
- 장사시설 내 자연장 도입을 통해 장사시설의 현대화, 공원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극소화해야 함.

○ 봉안시설(봉안당)

<표 2-5> 보건복지부의 2017년까지 봉안당 부족/공급 추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급
	부족	수요									
전체	-103	48	-152	48	-216	48	-284	48	-358	47	239
서울	-9	4	-15	5	-36	7	-56	7	-78	8	31
부산	-3	2	-7	2	-10	2	-14	2	-17	2	10
대구	-4	2	-7	2	-11	2	-15	2	-19	1	9
인천	39	-	31	-	24	-	-2	-	-7	1	1
광주	-1	-	-2	1	-3	1	-5	1	-6	1	4
대전	30	-	0	-	-1	-	-3	-	-4	-	-
울산	-7	2	-10	2	-12	2	-15	2	-17	2	10
경기	-33	12	-46	12	-58	10	-71	10	-85	9	53
강원	-3	2	-4	2	-5	2	-6	2	-8	2	10
충북	-2	2	-3	2	-3	2	-4	2	-5	1	9
충남	-4	3	-6	3	-8	3	-9	3	-11	3	15
전북	-4	2	-5	2	-7	2	-9	2	-11	2	10
전남	-10	6	-14	5	-19	5	-23	5	-28	5	26
경북	-14	6	-20	5	-25	5	-30	5	-35	5	26
경남	-9	5	-13	5	-18	5	-22	5	-27	5	25
제주	26	-	23	-	20	-	17	-	13	-	-

자료 :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012.

<표 2-6> 봉안당 수요 및 공급추계

구 분	계	' 13		' 14		' 15		' 16		' 17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 추계	-	3,623		3,775		3,839		3,907		3,981	
부족분	-	-103		-152		-216		-284		-358	
공급 추계	239	48	(179)	48	(36)	48	(36)	48	(36)	47	(35)

- * 예상 수요 358천구 중 50%인 179천구를 공공부분에서 확충
- * 기존묘지의 개장 등으로 인한 유골 화장구수(연 6만여구)의 20%인 12천구가 매년 봉안당 수요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수요 전망) 화장을 증가 등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자연장 수요 증가 등으로 감소 전망
- * 봉안시설 이용('11년 봉안시설 약 10만구, 자연장지 약 5천구 이용)
- (수요 추계) '13년 103천구 → '15년 216천구 → '17년 358천구 부족
- 봉안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봉안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가정
 - ※ 서울 등 7개 광역시는 통합 이용, 나머지 시·군은 지자체별 이용을 가정
- (공급 추계) '17년까지 매년 48천구씩 총 239천구 확충 추진
 - '13~'17년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239천구를 공공부분에서 확충하되, 자연장지 기반 확충을 감안하여 단계적 축소 추진
 - ※ 자연장지 조성기반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설봉안시설 공급 확충 필요
 - 이용료 부담(사설 10배)이 적고, 만장된 공설묘지 재개발로 발생하는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공설봉안시설 확충(지자체 의견)
 -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지자체(도지역 155개 시군 중 76개 시군)를 대상으로 우선 확충 추진
 - * 시도별(시군구) 공공부문 봉안당 세부 공급 계획

○ 집단묘지(공설 및 범인묘지)

- (수급 전망) 매장률은 꾸준히 감소 추세이며, 기존 집단묘지의 잔여분('11년 말 현재 약 100만구)도 있으므로 공급은 충분 전망
 - 다만 서울, 부산, 경북의 가매장률이 90% 수준이나 강원, 제주 등은 30% 이하 수준임에 따라 대도시 지역은 묘지 부족
- (감축추진) 공설묘지의 신규 설치는 제한하고, 기존 묘지도 재개발하여 공원화 또는 자연장지화 유도
 -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할 경우 및 제한구역에 묘지 설치 시 법적 제재 사항에 대한 홍보를 통해 묘지 설치 억제

2. 장사시설 환경 개선

□ 장사시설 환경 개선

- 노후화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유족 편의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설치
 - 공해방지시설(싸이클론과 여과집진장치)이 설치된 화장시설(53개소)은 20개소(38%)
- 친환경 화장용품 준수 및 화장용 제품 사용 여부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의 차등화(규격화·표준화 선행)
 -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두꺼운 관 등) 사용 시 화장시간 지연 (20-30분), 환경오염 초래
 - 화장시설,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등을 통한 친환경 제품 사용 권장 및 홍보

□ 분묘 개장 촉진

- 기존 묘지의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묘지 개장 후 봉안 및 자연장을 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묘지 개장 장려금 지원 및 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를 확산
 - 묘지개장장려금 : '10년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실시(건당 5~10만원 지급)

□ 집단묘지 재개발

-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추진
 - 공설묘지(308개소)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조성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경우 재개발 비용 지원 검토
 - 중장기적으로 집단묘지의 감축 및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비용 지원 추진
 - 기존 법인이 운영하는 집단묘지(155개소)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공설봉안시설·자연장지 우선 안치 유도 및 사용료 감면 등 검토

3. 장사시설 관련 제도 개선

-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법인 자연장지 조성 면적 기준 완화(10만m² 이상 → 5만m² 이상) 및 문화재 보호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규모 확대(5천m² 미만 → 3만m² 미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12.11.1부터 시행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내 자연장지 조성 점진적 허용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자연장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어 불가능
 - 건축물 및 공작물이 없는 자연장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가능도록 추진
 - * 주거지역(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일반·준공업지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보건복지부)
-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설치·촉진 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기준 완화 추진(현,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공동 설치)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보건복지부)
 - 자연공원 경계나 그 인접에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연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검토
 - 화장시설이 자연공원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인식될 우려
 -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장사시설 폐지 등에 따른 규정 강화

- 사설 장사시설 설치자가 적립금을 목적(시설 보존과 관리, 재해예방과 보수)외 사용할 경우 제재 규정 신설
- 장사시설이 부도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 도입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설 장사시설 관리자는 연간 총수 입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미적립시 업무정지 등)
- 사설 장사시설에 안치된 시체, 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 없이 장사시설을 폐지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별칙으로 강화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설 장사시설 폐지 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신고 없이 폐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 의무화 및 표준약관 제정 검토

4. 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 해소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조정 절차 도입

- 입지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 마련(장사법 개정 추진)
 -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비선호시설로 설치 시 주민 반발 소지가 상존하나 설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 프로세스 부재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입지선정시 지자체-주민간 협의절차 및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있음.

□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 장사시설 설치 입지지역 선정은 선공모-후선정 방식으로 처음부터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보장※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을 경우 선선정-후협의 방식으로 추진
- 주민동의서 및 법률적 문제, 지리적 입지조건 등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를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

□ 지역주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장사시설 인근에 주민편의 복지시설,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장사문화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음.
- 지역주민의 장사시설 사용료 · 관리비 등을 다른 지역주민과 합리적 차등 부과 및 장사시설 운영 위탁 등 지원

5. 국민인식 개선 강화

□ 장사문화 · 장사시설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국민의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장사문화 · 장사시설의 개선에 대한 공모(UCC, 포스터, 사진, 용어 등) 추진
- 장사시설 · 문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을 종교단체, 노인단체, 시민 ·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장사용어 순화(시체 → 시신 등)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를 친근한 이미지로 전환

□ 홍보 대상의 다양화 및 홍보채널의 다각화

-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올바른 장사문화 이해 및 고취를 위한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방안 강구(교과부 협의)
 - *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과 장사시설에 대해 친숙하게 접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각종 사생대회나 백일장 대회 유치 등)
- 국민의 수용 수준이 넓어짐에 따라 TV, 신문 이외에 새로운 매체(인터넷, SNS 등) 등을 통한 다각적 홍보 추진
 - TV 드라마 등에 PPL(Product Placement)을 통한 자연스럽게 자연장 등 장사문화 홍보
- 장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정시기(추석, 한식 등)를 활용한 집중 홍보 ·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전문가 기고, 장사포럼, 세미나 등 지속적인 릴레이 홍보도 실시

□ 모범적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통한 친화도 제고

- 주민 · 환경친화적 우수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적극 홍보 전파하여 기존 부정적 인식 변화 유도(지역주민 우수시설 견학 등)
 - 미술전시회(서초구 서울추모공원)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 유치로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

□ 장사관련 종합정보사이트 「e-하늘 장사정보」 활용 접근성 제고

- 친환경 자연장 등 장사방법 안내 및 현대식 화장시설 소개 등을 통해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국민편의 도모

6. 재정 투자 계획

장사시설 지원 원칙

화장시설

- 「1 지자체 1 화장시설」 설치보다는 생활권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재정 절감
 - * 예) 동해시(3로)와 삼척시 화장수요를 통합하여 증축 또는 신축(현대화 시설)
- 도심 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1~2로) 설치 허용을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 유도

자연장지

- 묘지 및 봉안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 추진
- 공설 자연장지의 확충을 통해 저비용 자연장지 공급 확대
 - ※ 자연장지는 공설이 차지하는 비중(84.5%)이 높고 지역별 편중('11년 23개 소)이 있음.

봉안시설

- 봉안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토록 하되, 자연장지 확대에 맞추어 신규 봉안시설 설치 예산 지원 축소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적극 모색
 - * 사설봉안시설이 공급과잉인 지자체는 신규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사설봉안시설과 협약 체결, 매입 등을 통하여 재정 절감 등 활용

집단묘지

- 공설 묘지의 신규 설치는 억제하며, 기존 공설·법인묘지를 자연장지 전환 및 공원화 추진 시 재정 지원 추진 검토
 - * 만장된 공동묘지 재개발을 통해 님비현상 극복 및 재정 절감 효과 발생

□ 국고보조금 지원 등

- 사업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행정절차 완료여부, 긴급성, 지방비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지원
 - 인근 자자체간 공동 설치·조성, 신도시 건립 시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
-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자자체 중장기 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산의 탄력적 지원
- 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 * 화장로 1기 설치비용은 약 5억원이나, 예산 기준단가는 2.2억원으로 국고 지원액은 약 1.5억원(2.2억원의 70%)만 지원, 총 금액의 30%만 국고 지원
 - 장사시설 총 사업비 중 화장시설·봉안시설의 건축비 및 자연장지 조성비(국고 70%), 화장로 개보수비(국고 50%)만 지원
 - 장사시설 이외 진입로·주차장 등 부대시설,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필요한 예산 미지원으로 지자체 자체부담 과중, 이로 인한 장사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애로

□ 장사시설 확충 재정투자계획

〈표 2-7〉 연차별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 13	' 14	' 15	' 16	' 17
계	313,497	60,159	60,992	60,992	65,808	65,546
화장시설 신증축	153,821	32,529	28,146	28,146	32,500	32,500
자연장지	100,430	18,522	20,246	20,246	20,708	20,708
봉안시설	59,246	9,108	12,600	12,600	12,600	12,338

- '13~'17년까지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3,135억원(국고) 투입
 - 화장시설 1,538억원(신·증축 854억원, 화장로 신증설 351억원, 화장로 개보수 333억원)
 - 자연장지 1,004억원(자연장지 804억원, 묘지 자연장지화 200억원)
 - 봉안시설 593억원

제3장 전국 및 충청북도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제1절 화장 중심으로 장묘문화 전환

<표 3-1> 전국 연도별 화장률 추이

연도	'92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화장률(%)	18.4	42.6	46.4	49.2	52.6	56.5	58.9	61.9	65.0	67.5	71.1	74.0

*자료 : 보건복지부, 2013.10.29 보도자료

- 우리나라 장사방법은 불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었음.
- 전국 기준 화장률은 1965년 5.8%에서 1992년 18.4%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42.6%로 크게 증가한 후 2005년에는 50%를 넘었으며, 2012년 74.0%를 기록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2~3년 내에 화장률이 약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지난 2000년 전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매년 3~4%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화장률이 높은 국가들인 일본의 99.9%, 대만의 90.79%, 홍콩의 89.8%, 스위스의 84.53%와 비교할 경우 아직까지는 화장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2> 연령별 화장률 추이

연령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화장률(%)	91.7	99.8	97.8	95.3	93.3	88.4	80.5	70.2	64.2

*자료 : 보건복지부, 2013.10.29 보도자료

-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연령층의 경우 사망자의 대부분(99.8%)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화장률은 남성 77.2%, 여성 70.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남녀 모두 화장률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전국의 사망자, 화장자 및 화장률 현황

구 분	사망자수(명)		화장자수(명)		화장률(%)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계	257,396	267,221	182,946	197,717	71.1	74.0
서 울	40,320	41,514	31,751	33,846	78.7	81.5
부 산	19,643	20,534	16,848	18,027	85.8	87.8
대 구	12,355	12,352	8,713	9,177	70.5	74.3
인 천	12,504	12,881	10,589	11,055	84.7	85.8
광 주	6,593	6,874	4,348	4,785	65.9	69.6
대 전	6,336	6,580	4,488	4,772	70.8	72.5
울 산	4,462	4,567	3,560	3,734	79.8	81.8
세 종	-	820	-	503	-	61.3
경 기	48,394	50,830	37,526	40,683	77.5	80.0
강 원	10,521	11,030	6,940	7,543	66.0	68.4
충 북	10,176	10,478	5,564	6,178	54.7	59.0
충 남	14,025	13,994	7,531	7,823	53.7	55.9
전 북	13,126	13,700	8,011	8,902	61.0	65.0
전 남	16,090	16,766	8,351	9,623	51.9	57.4
경 북	20,237	20,644	11,586	12,517	57.3	60.6
경 남	19,593	20,419	15,222	16,565	77.7	81.1
제 주	3,021	3,238	1,657	1,860	54.8	57.4
지역미상			261	124		

*자료 : 보건복지부, 2013.10.29 보도자료

- 시 · 도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8%, 울산 81.8%, 서울 81.5% 등의 순임.
-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5.9%, 제주 57.4%, 전남 57.4%, 충북 59.0% 등의 순임.
- 시 · 도별 화장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6개 시 · 도로, 전년도(부산, 인천)보다 4개 지역(서울, 울산, 경기, 경남)이 증가
- 수도권 화장률은 81.3%, 비수도권 69.1%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2.2%p 높게 나타남.
-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 · 광역시는 80.9%, 그 외 도지역은 69.3%로 특별 · 광역시가 11.6%p 높게 나타남.

*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11년 12.9%p) 및 특별 · 광역시와 도지역 차이 ('11년 12.5%p)는 모두 2011년에 비해 감소

- 전국 230개 시 · 군 · 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 92.6%, 경남 통영시 91.9%, 경북 울릉군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80% 이상인 시 · 군 · 구는 67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 중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화장률이 낮은 시 · 군 · 구는 충남 청양군 26.5%, 전북 무주군 30.8%, 전남 장흥군 3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도시인 서울, 부산, 인천 및 화장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상남도의 화장률이 2012년 현재 80%이상으로 추산되는 반면 전남, 충남, 충북, 경북 및 제주의 화장률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50%대 중후반 수준임.

제2절 전국 장사시설 현황

<표 3-4> 시도별 화장시설 설치현황('13.7월 현재)

시·도 (시설수)	시군구(화장로수)	시·도 (시설수)	시군구(화장로수)
서울 (2)	고양(23), 서초(11)	강원 (7)	춘천(3), 원주(2), 동해(3) 태백(3), 속초(3), 정선(2), 인제(2)
부산 (1)	(15)	충북 (3)	청주(8), 충주(4), 제천(4)
대구 (1)	(11)	충남 (3)	논성(8), 천안(8), 공주(3)
인천 (1)	(20)	전북 (4)	전주(6), 군산(5), 익산(7) 남원(3)
광주 (1)	(9)	전남 (5)	목포(3), 여수(4), 순천(3) 광양(3), 소록도(1)
대전 (1)	(10)	경북 (10)	포항(우현3, 구룡포1), 경주(7), 김천(2), 안동(3), 영주(2), 상주(3), 문경(2), 의성(2), 울릉(2)
울산 (1)	(10)	경남 (10)	창원(창원 4, 마산 7, 진해 4) 진주(7), 통영(3), 사천(3), 김해(6), 밀양(3), 고성(2), 남해(2)
세종 (1)	(10)	제주 (1)	(5)
경기 (3)	수원(9), 성남(15), 용인(10)		

* 전국 화장시설 : 55개소 314로

*자료 : 보건복지부, 2013.10.29 보도자료

<표 3-5> 전국 자연장지 설치 현황('12.12월 현재)

구분	개소수	조성면적 (㎡)	총자연장능력 (구)	기자연장 안치구수 ('12년 포함)	향후 자연장 가능구수	'12년 실적(구수)
계	652	945,802	327,753	23,483	304,270	12,210
공설	32	463,865	235,503	15,735	219,768	5,354
사설	620	481,937	92,250	7,748	84,502	6,856

*자료 : 보건복지부, 2013.10.29 보도자료

<표 3-6> 전국 봉안당 설치 현황('12.12월 현재)

구분	개소수	총봉안능력(구)	기봉안구수 ('12년 포함)	향후 봉안 가능 구수	'12년 실적 (구수)
합계	384	3,525,902	1,041,674	2,484,228	88,552
공설 봉안당	131	1,489,549	629,429	860,120	51,437
사설 봉안당	소계	253	2,036,353	412,245	37,115
	법인	53	920,047	217,299	702,748
	종교 단체	200	1,116,306	194,946	921,360
					20,525

*자료 : 보건복지부, 2013.10.29 보도자료

- '13년 7월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55개소(화장로 314로)이며, '13년에 3개소(용인 10로, 공주 3로, 울산 10로)가 추가로 완공·운영되고 있음.
 - 특히, '12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이어, '13년 1월부터 용인 '평온의 숲'이 운영되면서 수도권의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1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개소(춘천 6로, 구미 5로)가 각각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며, '15년 1월에 1개소(강릉 4로)가 신규 운영될 예정임.
 - 그 외에도 2013년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 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
- * '13년 국고예산 : 601억원(화장시설 309억, 봉안시설 120억, 자연장지 172억)

제3절 충청북도의 화장률 추이

<표 3-7> 충북도 최근 8년간 평균 화장률

연도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률(%)
2005	9,661	2,873	29.74
2006	9,509	3,597	37.80
2007	9,638	3,657	37.94
2008	9,717	4,131	42.51
2009	9,987	4,760	47.7
2010	9,826	4,914	50
2011	10,176	5,564	54.7
2012	10,478	6,178	59.0

○ 전국 : 56.5('06) ⇒ 58.9('07) ⇒ 61.9('08) ⇒ 65.0('09) ⇒ 67.5('10)

⇒ 71.1('11) ⇒ 74.0('12)

○ 충북도 평균 화장률이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3-8> 충북 화장률 증가 추이(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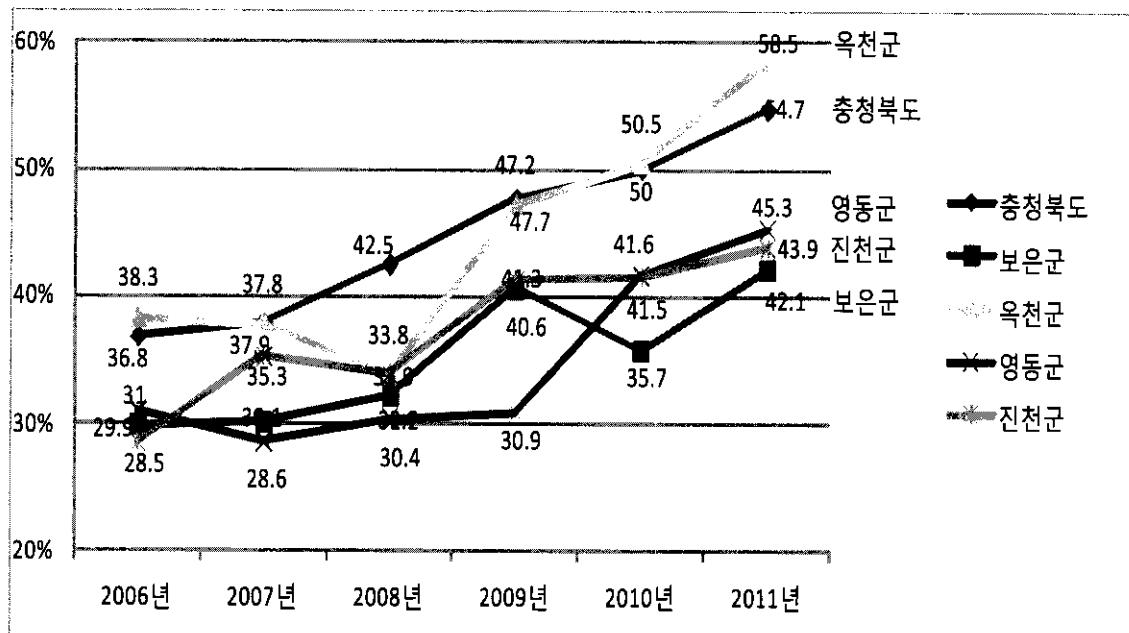
시군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사망자 (명)	화장수 (구)	화장률 (%)															
전국	244,874	144,255	59	246,113	152,420	61.9	246,942	160,433	65.0	255,403	172,276	67.5	257,396	182,946	71.1	267,221	197,717	74.0
전체	9,638	3,657	38	9,717	4,131	42.5	9,987	4,760	47.7	9,826	4,914	50.0	10,176	5,564	54.7	10,478	6,178	59.0
청주시	2,556	942	37	2,671	1,211	45.3	2,725	1,383	50.8	2,633	1,355	51.5	2,748	1,518	55.2	2,78	1,66	59.6
충주시	1,380	548	40	1,386	648	46.8	1,442	744	51.6	1,369	727	53.1	1,479	893	60.4	1,538	980	63.8
제천시	931	485	52	954	573	60.1	1,012	615	60.8	1,018	655	64.3	1,079	743	68.9	1,06	739	73.5
청원군	1,000	313	31	1,031	356	34.5	1,054	442	41.9	1,054	458	43.5	1,069	510	47.7	1,11	603	54.3
보은군	409	123	30	425	137	32.2	436	177	40.6	428	153	35.7	404	170	42.1	455	200	44.0
옥천군	571	216	38	515	174	33.8	532	251	47.2	513	259	50.5	579	339	58.5	613	371	60.5
영동군	489	140	29	562	171	30.4	531	164	30.9	565	235	41.6	543	246	45.3	600	301	50.2
증평군	210	83	40	199	84	42.2	214	93	43.5	222	122	55.0	214	120	56.1	197	135	68.5
진천군	482	170	35	466	158	33.9	480	198	41.3	472	196	41.5	465	204	43.9	511	235	46.0
괴산군	486	175	36	481	158	32.8	466	191	41.0	473	203	42.9	504	236	46.8	542	275	50.7
음성군	772	287	37	697	292	41.9	770	326	42.3	747	360	48.2	749	377	50.3	772	449	58.2
단양군	352	175	50	330	169	51.2	325	178	54.2	331	191	57.7	343	208	60.6	347	230	66.3

*자료: 보건복지부

- 2011년 현재 기준 화장률이 60% 이상인 지역은 제천, 충주, 단양임.
 -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주민층이 군지역보다 젊은 연령층이고, 소득수준과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농촌지역보다 매장지가 적기 때문에 화장률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측되나 청주지역은 의외로 낮은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양군 지역이 타 군지역에 비해 높은 화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띤다.
 - 청주시역의 화장률이 도시지역으로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원인은 매장하기에 좋은 산세(야산, 자산, 동산)와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외 개인 선선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청주, 청원, 괴산, 보은, 음성 등의 지역이 매장하기에 비교적 좋은 토양을 지나고 있음.
 - 충북의 백두대간 중간지역에서부터 경북 안동까지와 전북 무주 같은 곳이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화장률이 더디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 충주는 강을 끼고 있고 개인 토지보다는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화장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옥천도 유사한 조건으로 습기가 많은 토양이 화장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천과 단양은 같은 생활권이고 석회암석의 토양이 많기 때문에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2012년 화장률이 60% 이상인 지역은 제천, 충주, 단양, 증평, 옥천임.
 - 제천시 73.5%, 단양군 66.3%로 이 지역 생활권이 가장 화장률이 높으며, 충주시도 63.8%로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도내에서 화장률 순위가 높으며, 눈에 띄는 지역으로는 증평군이 68.5%로 전년 대비 1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 <그림 3-1>는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으로 최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진천군 및 남부 3군의 화장을 변동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의 전형적인 증감 패턴으로 꾸준한 화장을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3-1> 진천군 및 남부 3군의 화장을 변동치

제4절 충청북도의 장사시설 현황

1. 일반 시설현황(2012. 12. 31 현재)

공설 화장시설 관리운영 현황

<표 3-9> 충청북도 공설 화장시설 화장로 수

시군구	화장시설명	화장로수		
		계	운영화로	예비화로
청주시	계	16	12	4
청주시	청주시목련공원	8	6	2
충주시	충주시하늘나라	4	3	1
제천시	제천시영원한쉼터	4	3	1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공설묘지 관리운영 현황

<표 3-10> 충청북도 공설묘지 운영현황

시군구	묘지명	허가 면적 (㎡)	총매장 가능구수 [A]	기 매장구수 [B]	향후매장 가능구수 [A-B]
	계	2,119,182	27,901	23,662	4,239
청주시	청주시목련공원	1,501,511	5,562	5,081	481
충주시	충주시공설묘지	41,500	2,689	2,599	90
청원군	매화공원	396,694	12,439	12,139	300
	오창장미공원	95,642	2,700	726	1,974
옥천군	선화원	14,728	1,800	582	1,218
진천군	진천군공설묘지	69,107	2,711	2,535	176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법인묘지 관리운영 현황

<표 3-11> 충청북도 법인묘지 운영현황

시군구	묘지명	허가 면적 (㎡)	총매장 가능구수 [A]	기 매장구수 [B]	향후매장 가능구수 [A-B]
	계	2,021,870	70,971	45,254	25,717
충주시	진달래동산	925,615	20,000	13,086	6,914
	충주공원묘원	278,696	7,800	7,538	262
제천시	개나리공원묘원	124,186	6,530	5,336	1,194
청원군	천주교요셉공원묘지	108,900	6,500	4,715	1,785
음성군	대지공원묘원	477,819	23,341	13,105	10,236
	꽃동네낙원묘지	106,654	6,800	1,474	5,326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공설 봉안당 관리운영 현황

<표 3-12> 충청북도 공설 봉안당 운영현황

시군구	묘지명	부지 (㎡)	연면적 (㎡)	총봉안 능력(구) [A]	기봉안 구수 [B]	향후봉안 가능구수 [A-B]
	계	108,679	9,353	122,387	32,796	89,591
청주시	제1목련당	311	388	5,321	4,522	799
	제2목련당	654	709	10,000	5,864	4,136
충주시	천상원	74,876	3,090	36,000	3,284	32,716
제천시	제천시 영원한 쉼터	7,474	875	15,297	4,866	10,431
청원군	매화원	2,992	894	6,500	424	6,076
	오창장미원	2,000	475	8,272	1,036	7,236
옥천군	선화원	8,081	797	7,700	1,531	6,169
진천군	진천군 츄모의집	5,406	864	8,000	539	7,461

*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법인 봉안당 관리운영 현황

<표 3-13> 충청북도 법인 봉안당 운영현황

시군구	묘지명	부지 (㎡)	연면적 (㎡)	총봉안 능력(구) [A]	기봉안 구수 [B]	향후봉안 가능구수 [A-B]
	계	135,578	113,474	9,804	2,410	7,394
제천시	개나리공원묘원	124,186	112,916	696	216	480
음성군	대지공원남골당	11,392	558	9,108	2,194	6,914

*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 자료

□ 종교단체 봉안당 관리운영 현황

<표 3-14> 충청북도 종교단체 봉안당 운영 현황

시군구	봉안당 명칭	관리주체	설치년도	부지 (㎡)	연면적 (㎡)	총봉안 능력 (구) [A]	기봉안 구수 [B]	합동봉안 가능수 [A+B]
청주시	정음사 원봉안당	정음사원	2002	1,155	385	10,508	1,804	8,704
	용호사 봉안당	용호사	2005	4,620	927	10,000	45	9,955
	보현사 봉안당	보현사	2005	158	99	528	29	499
	충북불교회 관봉안당	충북불교회관 (광명선원)	2007	857	584	5,000	8	4,992
	복대성당 봉안당	복대성당	2005	1,993	125	847	-	847
충주시	화암사 봉안당	대한불교 조계종 화암사	2003	443	196	700	187	513
	정토사 봉안당	(재)대한불교 관음종 정토사	2006	7,438	127	504	-	504
	봉은사 봉안당	(재)한국불교 법륜종 봉은사	2006	5,395	174	2,478	639	1,795
	(재)생활불교 봉안당	(재)생활불교	2003	7,408	691	5,542	382	5,160
제천시	신정청풍 하늘공원	신정제일교회	2008	7,136	3,284	20,500	159	20,341
	최양업신부 조각공원	(재)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2005	-	439	1,296	363	933
청원군	늘푸른 안식관	강덕수	2005	809	99	6,144	28	6,116
	(재)세계불교 법왕청당 화정사봉안당	이준영	2008	1,063	256	6,000	18	5,982
옥천군	보륜사 봉안당	대한불교 조계종보륜사	2009	12,135	95	114	8	106
	금강사 봉안당	대한불교 조계종금강사	2010	12,135	106	2,250	17	2,233
영동군	천국사 흐자당	종교단체	2005	1,484	992	7,000	5,955	1,045
진천군	성림사	성림사	2004	500	15	500	224	276
괴산군	(재)세계불교 법왕청평화 재단봉안당	세계불교법왕 청 평화재단	2007	4,078	609	10,000	-	10,000

시군구	봉안당 명칭	관리주체	설치 년도	부지 (㎡)	연면적 (㎡)	총봉안 능력 (구) [A]	기봉안 구수 [B]	향후 봉안 가능 구수 [A-B]
음성군	예은 추모공원	신진대	1999	10,679	3,715	32,000	2,746	29,254
	미타사	이정애	2000	52,246	450	2,526	501	2,025
	생극사	김일중	2004	7,495	4,459	14,090	2,356	11,734
	생극 남골공원	김철중	1999	12,033	1,641	10,444	6,654	3,790
	광명선원	하성호	1986	5,734	-	187	187	-
단양군	기독교 감리교 봉안당	대한기독교 감리회유지재단 (인천주안여명교회)	2004	492	277	500	26	479
	명부전	장안사	2010	190	68	1,218	1	1,217

공설 자연장지 (1개소)

<표 3-15> 충청북도 공설 자연장지 설치현황²⁾

(단위 : 구)

시군	묘지명	위치	묘지설치 현황				
			설치 년도	조성면적 (㎡)	총자연장 능력	가 자연장	향후 가능
청주시	목련공원 제1자연장지	청주시 목련로 731 상당구	2010	6,039	5,746	135	5,611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2) 제천 '영원한 쉼터' 자연장지 조성계획은 현재 실행 중에 있으나 진천 자연장지 조성[국비]계획은 담보 상태임.

< 진천 자연장지 조성 계획 >

추진계획

○ 위치 :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일원(진천 공설묘지 옆)

○ 사업기간 : '13 ~ '16 (4년간)

○ 사업규모 : 자연장지 20,000㎡(9,305기) : 제천 14,400㎡, 6,700기 조성 대비)

- 주요시설 : 잔디장, 수목장, 수목장림, 공동 분향대, 주차장 등

○ 사업비 : 2,000백만 원(국비 1,400, 시비 600)

- '13년 2,000백만 원 추진 중(이월)

=> 현재 도시계획시설설계계획용역이 중단된 상태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계획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 장례식장 현황

<표 3-16> 충청북도 장례식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47	8	5	6	1	4	2	3	2	5	3	6	2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 장례지도사³⁾ 교육기관 : 3개소(청주 1, 충주 2)

<표 3-17> 충청북도 장례지도자 교육기관 현황

지역	교육기관명	소재지	설치 신고
계	3개소		
청주 (1)	청주 장례지도사교육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93	2012. 8. 8
충주 (2)	고려 장례지도사교육원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340-14	2012. 8. 8
	충주 장례지도사교육원	충주시 목행동 22-34	2012. 8. 8

*자료: 충북도 보건복지국 내부자료

3)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개요

- 장례지도사란 장례 상담, 시신판리, 의례지도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
- 장례관련 불법 불공정 행위 사전 차단 및 장례문화 수준제고로 건전 장사문화 조성('12. 8. 5일부터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자격증 발급 절차

- 충청북도에 설치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에 자격증 발급 신청(무 시험 검정)
- 발급기관 : 충청북도(노인장애인과)

○ 교육시간

- 표준교육과정반 : 300시간
-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자(3년 이상) : 6시간
-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자(1년 이상 3년 미만) : 100시간
-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력자(1년 이상 3년 미만) : 25시간
- 민간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자(1년 이상 3년 미만) : 50시간
- 종교단체 염습종사자(1년 이상) : 50시간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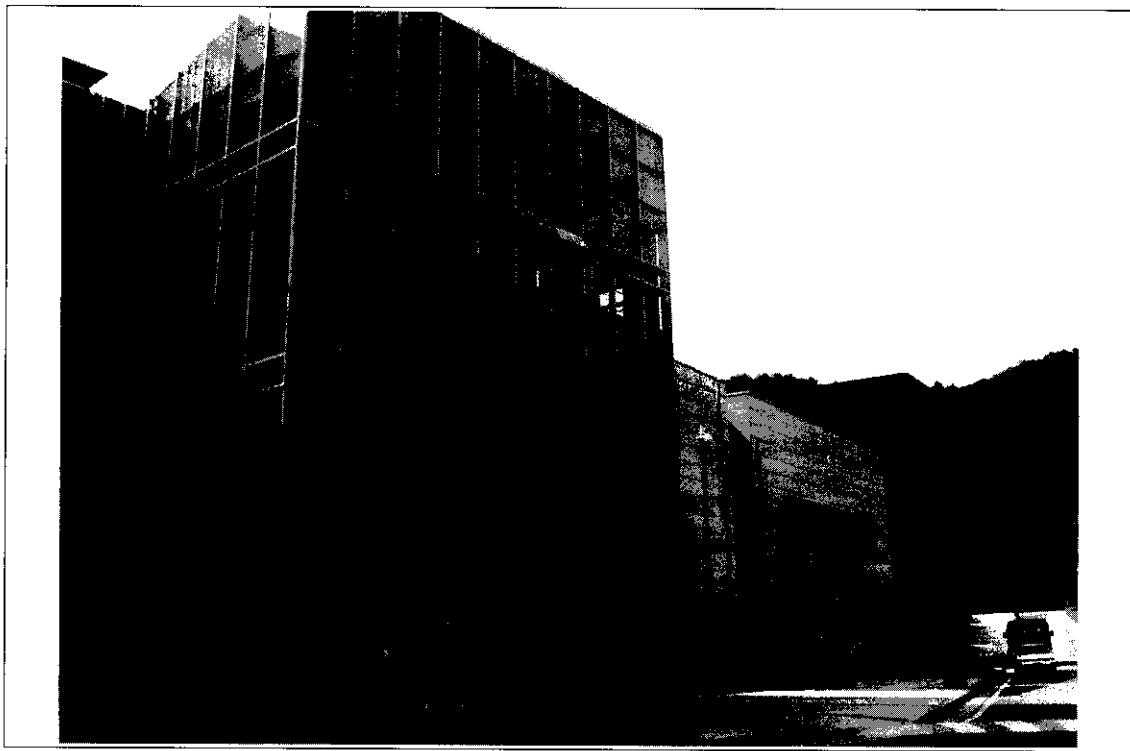
- 소정의 기준(시설, 학습교구, 직원배치, 실습연계)을 갖추어 도에 설치 신고
- 최소 연면적 80m² 이상, 1명당 2m²이상의 강의실
- 교육인원 40명당 전임교수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

□ 2013년 추진실적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신고 수리 : 3개 기관(청주 1, 충주 2)
- 자격증 발급 : 86명 * '12년 : 225명

2. 종합 장사시설

1) 청주 목련공원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31(월오동) 목련공원 내
- ▶ 공설묘지('97년) : 5,562구('11년 말 4,666구)
 - ▶ 화장시설('07년) : 8기, 부지 78천 m², 연면적 8,296m²
 - '13년 : 화장로 개보수(집진기 가동중, 유해가스처리설비 8기 교체)
'13년 1,760백만원(국 880, 지 880) ⇒ 국비 확보
 - ▶ 제1 봉안당('97년) : 5,321구('11년 말 4,465구)
 - ▶ 제2 봉안당('07년) : 10,000구('11년 말 4,665구)
 - ※ 봉안당 증설('12 ~ '14년) : 3,666m², 55억 원
 - '12년 5억, '13년 49.9억(예산확보)
 - ▶ 자연장지('10년) : 잔디형(6,039m²), 기간 45년(사용료 390천 원)
 - 능력 5,746구, 실적('11년 66구)
 - ▶ 장례식장('07년) : 임대(대표 월오주민협의체), 빈소(5개, 안치 9구)

화장시설



- 목적 : '09. 7. 1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09.12.31일 이전 설치한 화장시설에 유해가스기준치 적용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유해가스처리설비 등) 설치 의무화
- 이행 : 화장시설 유해가스 5가지
 1. 먼지 : 여과집진기, 싸이크론 집진기 설치
 2. 질소산화물 : 유해가스처리설비 설치 /다이옥신, 백연 처리 겸용
 3. 황산화물, 염화수소 : 기준치 이내 배출, 별도 시설 불필요
 4. 일산화탄소 : 완전 연소 조치로 해결
 - > 백연은 연통에 200°C 이상의 고온으로 처리 중,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이옥신, 먼지 등의 처리가 문제임.
 - > 다이옥신은 유럽 기준치 0.01ng/m²을 준수하고 있음.
- 추진 계획
 - ('13년) 청주 화장로 유해가스처리설비 8기 교체
 - 사업비 : '13년 17.6억원(국비 8.8, 시비 8.8) 사업비 확보

□ 청주 화장로 개보수

- 화장률 제고를 위한 노인회 견학교육이나 well-dying 프로그램 등을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 볼 수 있음.
- 고독사나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 있음.
- 현재 청주 목련공원 화장시설에 화장로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북도 차원에서 전용개장 화장로로 지정해 볼 수 있음.
 - 일반 화장과 분리된 전용개장 화장으로 일반 화장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자연 친화적 묘지사용 억제정책과 산림녹화, 국토사랑이라는 시각으로 추진 필요
- 이제 우리나라로 일본처럼 반려동물 화장로 설치를 검토해야 함.
-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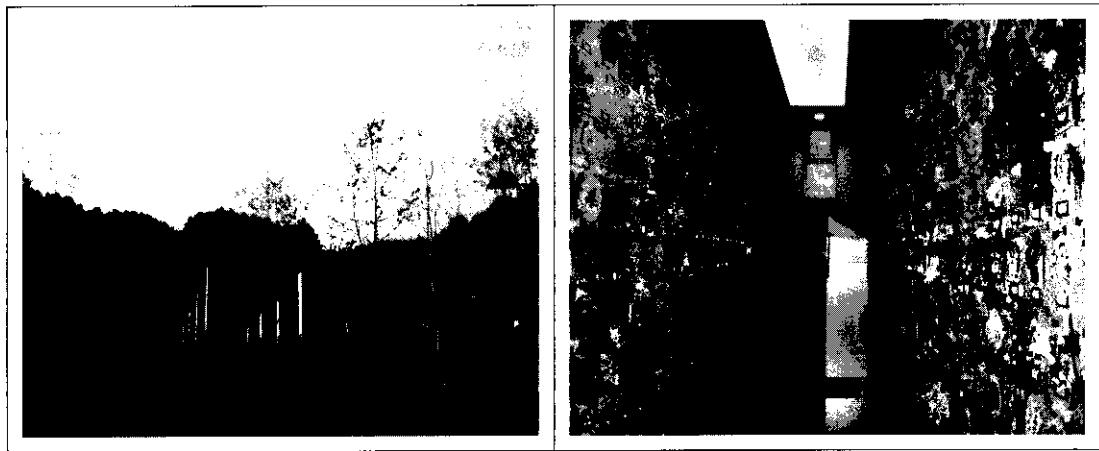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청주시민 (청원군민포함)	인접지역 (청주청원을 제외한 충북지역)	기타지역주민
대인 (만15세 이상)	100,000	300,000	500,000
소인 (만15세 미만)	50,000	100,000	200,000
사산아	30,000	50,000	100,000
개장유골	50,000	100,000	200,000

* 사용료 감면 (고인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청주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청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무연고 행여사망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중 무연고자,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 모두 100% 감면

□ 봉안당



○ 청주 봉안시설 건립

- 목 적 : 기존 봉안시설 수용능력 한계('15년 만장 예상)에 따라 봉안당 추가 건립으로 수급안정 도모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도모
- 사업 기간 : '12 ~ '14년 (3년)
- 사업 규모
 - 제3 목련당 건립(지상 3층, 묘지공원 제4주차장 옆 녹지에 1800m² 부지, 3,666m² 면적, 안치능력 3만기, 2015년부터 약 20년 사용 가능)
- 총사업비 : 55억 원 (국비 38.5, 지방비 16.5) *m²당 1,500천 원
 - '12년 500백만 원(국 350, 지 150) ⇒ 추진중 (이월)
 - '13년 4,999백만 원(국 3,499.3, 지 1,499.7) ⇒ '13년 국비예산 확보

※ 총사업비는 55억 원에서 1백만 원 부족한 54,999백만 원임.
- 추진 상황
 - 2011. 3 : 봉안당 추가 건립계획 수립
 - 2012. 3~5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 조건부 승인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12. 10월 예정)
 - 2012. 4~5 : 봉안당 건립 입지 변경(주차 공간 부족)
 - ⇒ 목련공원 내 화장시설 주차장 → 묘지공원 녹지
 - 2013. 1 : 실시 설계 완료
- 향후 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2014. 7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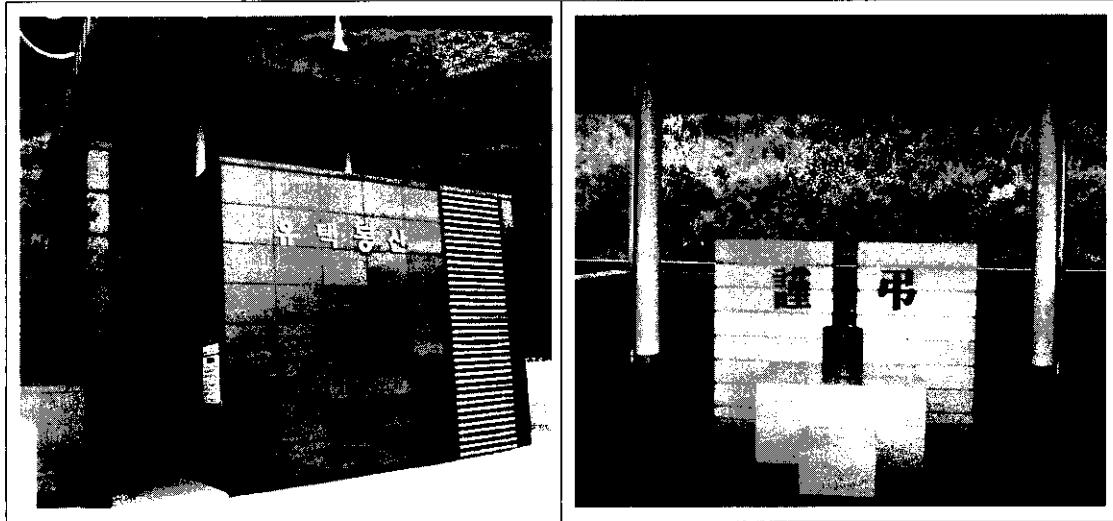
- 이전에 건립된 건물들에 습기가 차고 물이 고이기 시작하여 바닥의 석재에 얼룩이 지고, 봉안함을 안치하는데도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유족들의 방문을 위해서 봉안당 실내 환경을 밝게 조성해 주어야 함.
 - 전력소비를 고려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창문은 넓고 크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건물자체의 어두운 색감
 - 유족들이 방문하였을 때 어두운 계열의 봉안당은 방문 뒤 불안감과 슬픔을 전달하므로 외국사례의 봉안당처럼 밝은 색감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함.
- 봉안 안치 명패의 경우 일반 종이를 사용하고 있음.
 - 종이보다는 명패의 통일감이나 외관상 이미지를 위해 시설장만의 명패를 만드는 것을 추천
- 유골 안치의 높이가 너무 높아 사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 사설의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 봉안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아서 설치하지 않고 있음.
- 옥외 봉안답은 습기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지 않은 상태
-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일반 사용료		부부단 사용료	
	관내(청주)	연장 사용료	관내(청주)	연장 사용료
유연유골	300,000	300,000	500,000	500,000
무연유골	135,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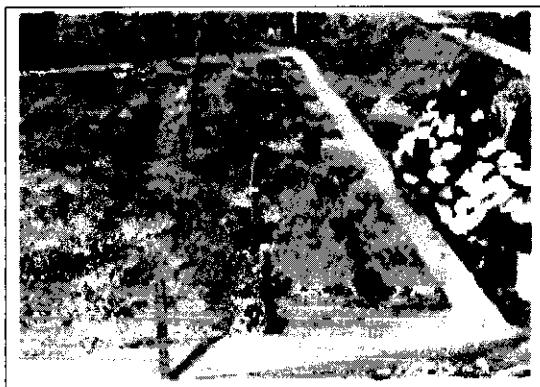
※ 사용료 감면(고인 기준) 대상자는 화장시설 이용의 경우와 유사

유택동산



- 유골을 안치할 수 없고 산골해야 하는 유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장소로 다소 차가운 느낌을 줌.

자연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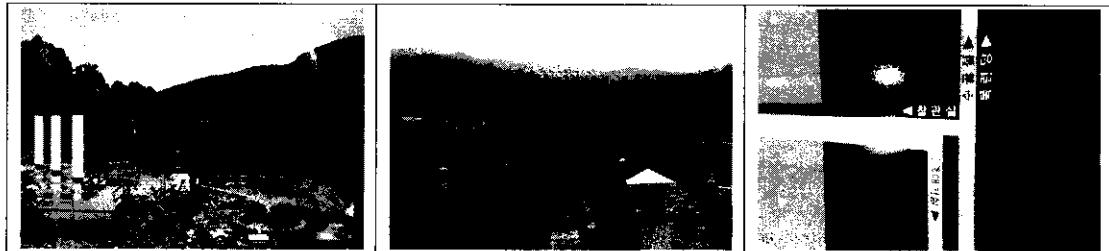
- 자연장의 경우 현재는 관리가 허술한 상태이며, 자연장을 이용하려는 유족들이 아직 많지 않다고 함.
 - 초기에 평분처럼 만든 경우에는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아 찾는 유족이 거의 없었으나 봉분처럼 만든 후 호응이 있다고 함.
- 사용료 : 개인단 390,000원, 부부단 780,000원
 - 사용 기간 : 45년

* 사용료 감면(고인기준) 대상자는 화장시설 이용의 경우와 유사

□ 장례식장

- 청주시에서 1년에 3,200만원 지원
- 빈곤층, 무연고자, 가끔 일반층도 이용
- 장례식장의 경우 정문은 유족들의 입구인 반면, 시신은 뒷문이 입구인 잘못된 방식

□ 외관 시설물



- 연관성을 가진 건축적 설계
- 동선을 표시해 유족들이 동선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편리하고, 외관상 컬러감이 좋음.
- 쓸모없는 공간인 유수지를 연못으로 활용하여 대기시간에 유족들에게 위로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외관 및 환경적인 면에서도 우수함.
- 경관 조명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족들이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는 희박하므로 경제적인 낭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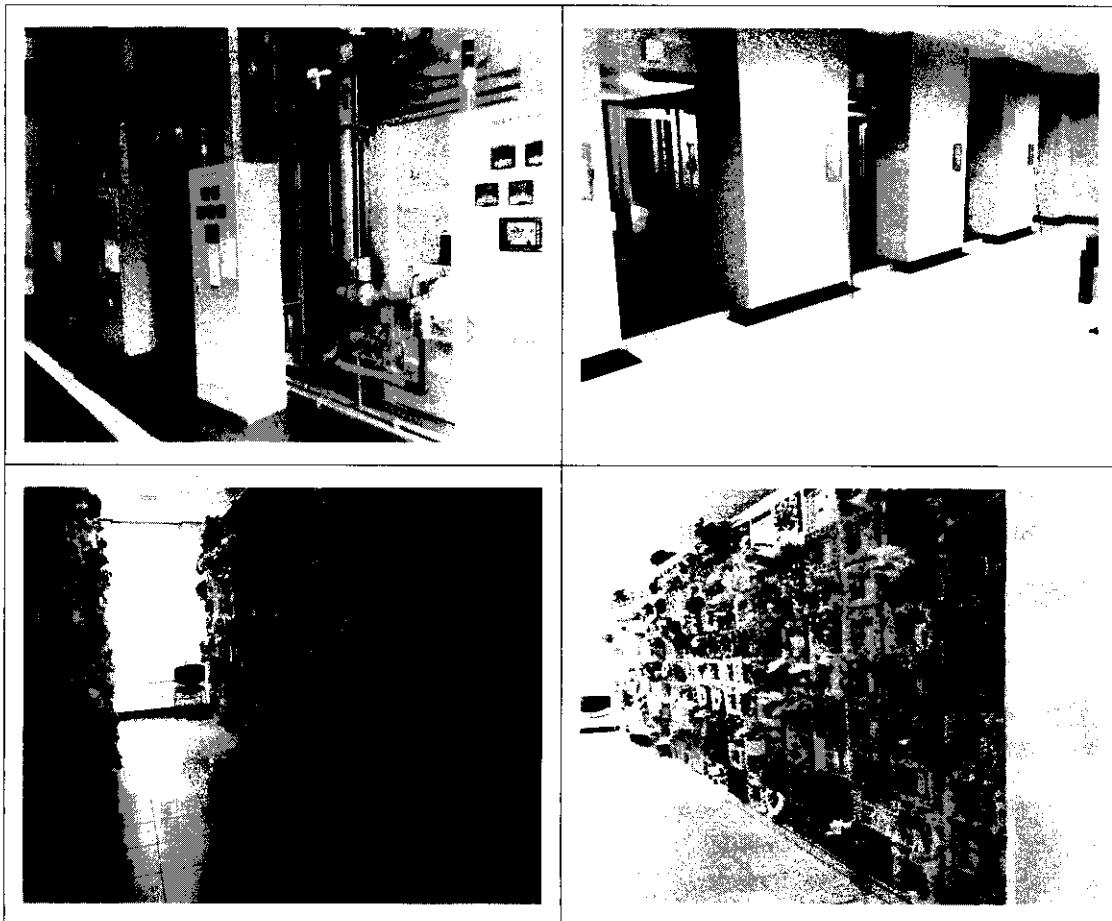
2) 제천 영원한 쉼터

- 위치 :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 9길 122(포전리 594)
- 부지면적 : $7,474m^2$
- 화장시설 : $542.66m^2$, 화장로 4기('08), 1일 화장능력 9구
- 봉안시설 : $1,261m^2$, 제1,2,3 봉안당('86, '94, '05) 총 15,297기
 - '11년까지 : 5,117백만원(국 1,915, 지 3,202)
- 부대시설 : $332m^2$ (매점 $43m^2$, 식당 $128m^2$, 휴게실 $161m^2$), 주차장 157 구획
- '11~14년 : 자연장지 조성
 - '12년 1,013백만원(국비 504, 시군비 509) ⇒ 추진중(이월)
 - '13년 720백만원(국비 504, 시군비 216)
- '13년 : 화장로 개보수(집진기 가동중, 유해가스처리설비 교체)
 - '13년 880백만원(국 440, 지 440) ⇒ 국비 확보
- 시설물이 노후 되었고 주민들이 운영하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며, 현재 바닥, 화장실, 방수 등 보수 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음.

□ 화장시설

- 화장로 4개가 설치된 가운데 여유간격이 없어서 향후 추가 화장로 설치가 불가능
- 제천의 화장률이 높은 이유는 공설묘지가 없고 사설묘지만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사설묘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는 것이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봉안당



- 창문이 크며 햇빛이 잘 들게 설치되어 있음.

제천 자연장지 조성



- 목적 : 자연장지가 없는 북부권(제천 단양 영월)에 자연장지 조성으로 수급안정 및 주민편의 증진 도모
- 추진 계획
 - ('11~'14년) 제천 영원한쉼터 내에 14,400m²(6,700기) 규모로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
 - 사업비 : 17.33억원(국비 10.08, 시비 7.25)
 - '12년 1,013백만원, '13년 720백만원 확보
 - 공사 착공('13. 7월), '14. 5월 준공 예정

- 자연장 조성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잔디장으로 조성 예정
- 영원한 쉼터의 사방이 수목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수목장을 계획한다면 좋은 조건임.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제천시 관내	충청북도 관내,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군	충청북도 관외	
화장 시설	15세 이상	1구당	100,000	300,000	500,000	
	15세 미만	1구당	70,000	200,000	300,000	
	개장유골	1구당	70,000	200,000	300,000	
	태아	1구당	30,000	90,000	120,000	
봉안당	개인단	1구	160,000	360,000	460,000	사용기간 15년
	부부단	2구	320,000	720,000	920,000	

* 비고 : 제천시 관내란 시신의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의 경우 사망시 주소지가 제천시인 경우를 말하며,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은 단양군,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을 말하며, 충북도 관내는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며, 충북도 관외란 충청북도 관내 이외의 주소지를 말함.

□ 참배실



- 보기 드물게 전통적인 묘의상을 쓰므로 우리 정서에는 좋으나 외국인
이 보기에는 낯설게 보일 수 있음.
- 참배실내 블라인드 설치는 관리인들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유족들을 배
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참배실 내에 향을 피워 향냄새가 화장시설에 배는 문제도 있음.

□ 주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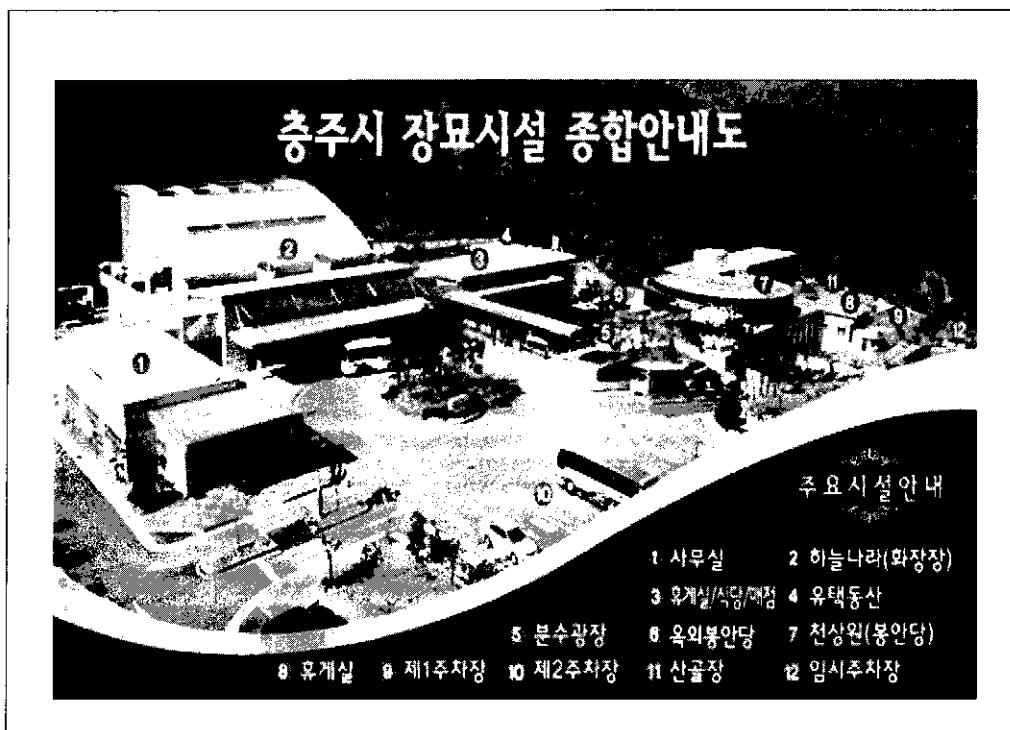
- 진입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혼잡한 경우에는 더욱 주차시설의 마비가 우
려되므로 특히 명절 때 시간대별 방문 예약이 요구됨.

주민과의 갈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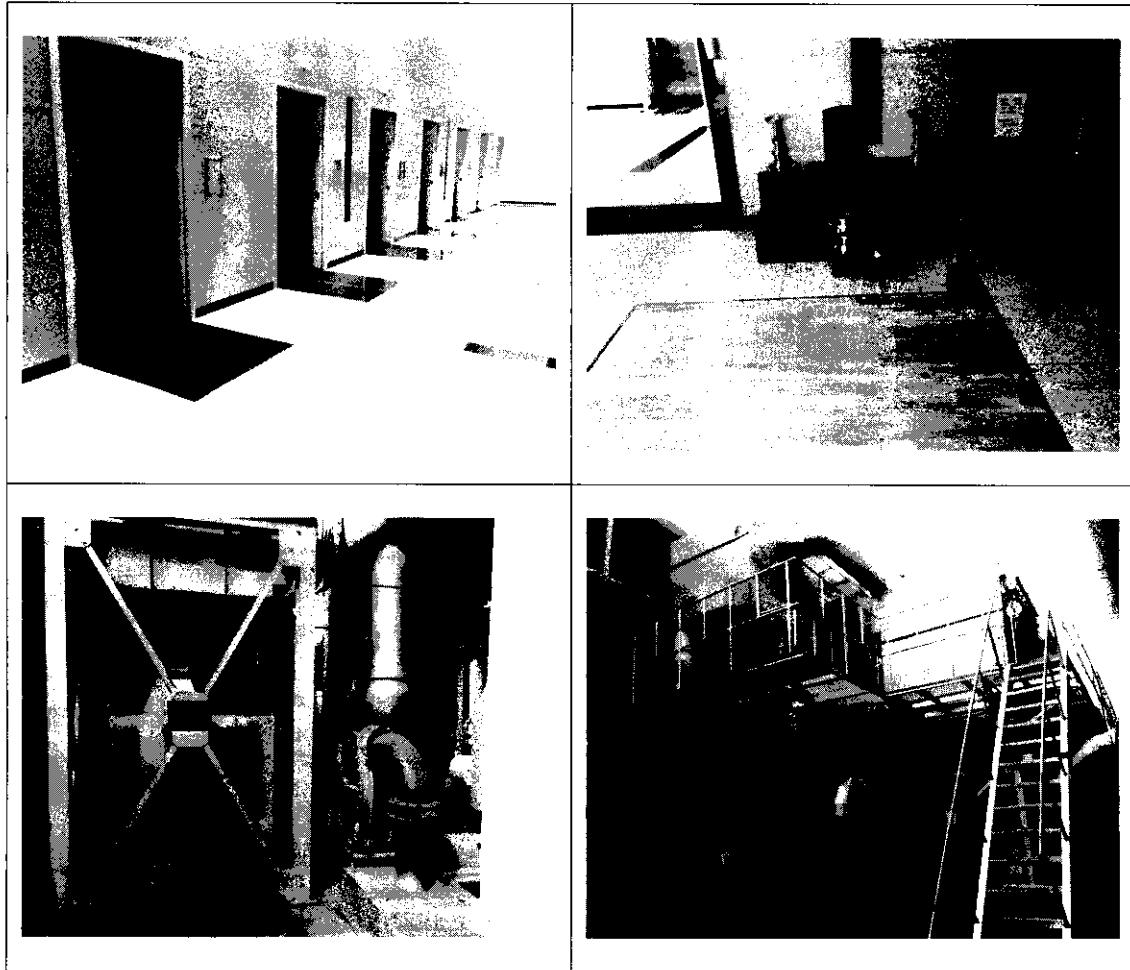
- 2009~2012년까지 주민과의 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에서 2012년 10월부터 직영형태로 전환
 - 주민들 사이에서 운영상의 마찰, 갈등, 관리 소홀과 이권에 매몰된 환경문제 발생시킴.

3) 충주 하늘나라



- 위치 : 충주시 목별길 256(목별동)
- 부지면적 : 74,876m²
- 건축면적 : 5,945m²(화장시설 2,855m², 봉안시설 3,090m²)
- 화장시설 : 화장로(최대 8기 규모 => 현재 4기('08) 설치 운영),
1일 화장능력 9구
- 봉안당 : 안치단(36,000기 규모 => 6,099기 안치단 설치)
 - 개인단 3,348, 부부단 915, 무연고단 1,836기
- 산골장 : 무궁화동산, 철쭉동산
- 주차장 : 324대 수용
 - 제1주차장-83대, 제2주차장-96대, 임시주차장-145대

화장 시설



- 도내 다른 시설들과 달리 유족의 참배실 입구와 운구 시신 입구가 함께 동일한 정방향으로 이동되도록 동선이 잘 만들어져 있음.
- 화장로 관리가 규정에 맞추어 잘 되어 있고, 집진시설 또한 백필터로 교체하여 미세 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점을 보완
- 화장로 총 8기 설치 가능 공간에 4기 미설치로 여유 공간 보유
 - 총주 시민 20만 명 인구추계상 현재 4기만 설치(하루 평균 1.5기 정도 추계)
 - 현재 4기중 3기만 사용하며 1기는 대기
- 최대 8기 규모로 미래의 인구가 늘어나도 수요가 가능하도록 미래지향적 설립
- 전남 담양의 '갑평공원'의 경우와 같이 인근 공동묘지를 재개발한다면 아주 좋은 환경
 - 현재 충주시 주덕읍 공설묘지에 잔여기수는 90기
- 사용료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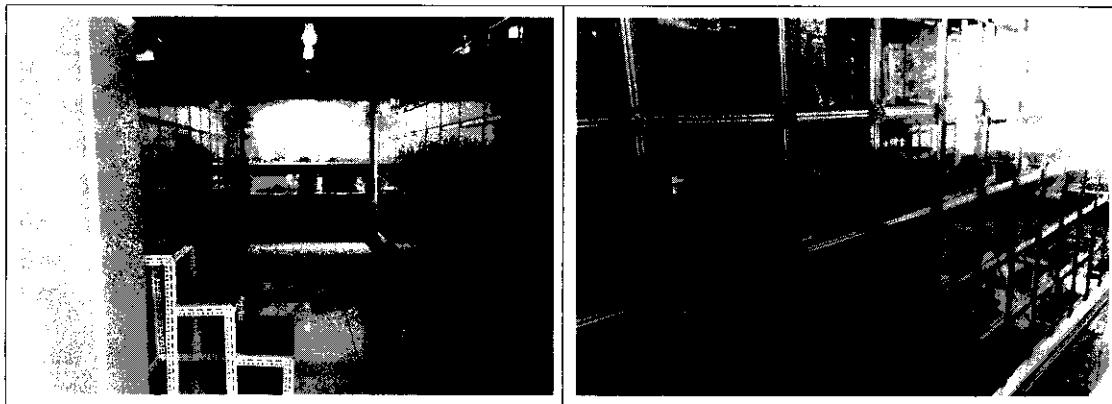
구분	충주시		타시군 ⁴⁾		비고
	일반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일반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15세이상	100,000	무료	500,000	무료	현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15세미만	70,000		350,000		
사산아	35,000		130,000		
개장유골	70,000		260,000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6개월 미만 충주시에 거주자는 관내요금의 30%가산 사용료 적용

4) 음성이 충주 하늘나라 시설 이용시 관내요금 적용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현재 화장시설 관내 100,000원, 관외 500,000원 사용료) 이를 위해서는 충주시 의회 조례개정이 따라야 하고, 또한 음성군의 장사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어서 거절한 적이 있다고 전함(시설 관계자의 전언).
 화장시설의 운영적자를 면할려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데, 사용료는 시 의회의 발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고 여타 인근 장사시설의 요금을 참고하여 관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료로 보기는 어려움.

- 사망자가 타시·군 거주자라도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관내 요금(사용료) 적용(개장유골 제외)
※ 직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제출
- 감면대상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100% 감면, 참전용사, 개장유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봉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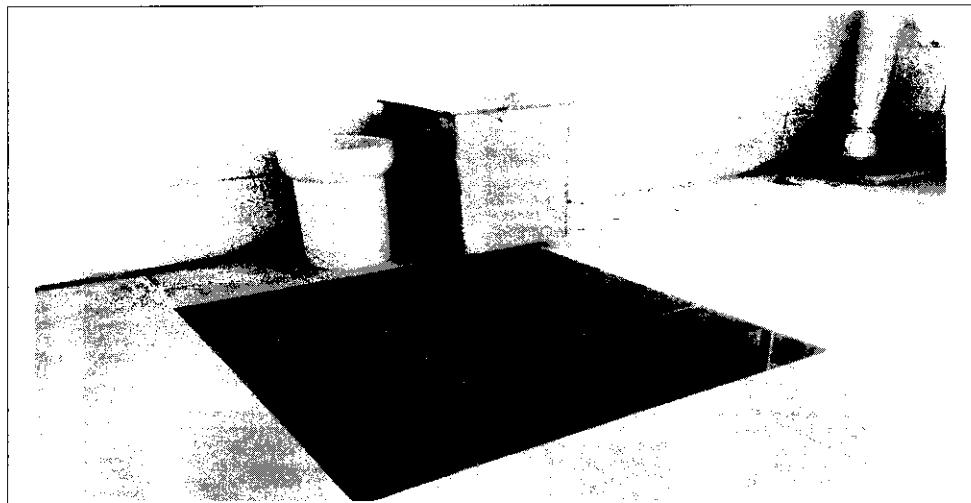
- 36,000기 중 2013년 현재 6,100기 봉안당에 안치
-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충주시		타시군		비고
	사용료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	
개인단	200,000	100,000	600,000	300,000	사용기간: 15년(3회 연장 가능, 총60년)
부부단	400,000	100,000	1,200,000	300,000	
무연고	50,000	20,000	150,000	60,000	사용기간: 10년

- 사용 기간 : 최초 15년, 연장 제한 없음
- 사용료 가산 및 감면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6개월 미만 충주시 거주자일 경우 관내요금의 30%가산 사용료 적용
 - 사망자가 타시·군 거주자라도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관내 요금(사용료) 적용
- ※ 직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1부 제출
- 감면대상 : 기초 수급자, 국가 유공자 각 50% 감면, 참전용사, 개장유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유택동산



-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설

외관 기타 건물



- 사용하지 않는 외관 조형물의 자리 차지 및 초기 설계의 문제가 있음.

그 외

- 충주시내에 이미 장례식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위치가 시내와 떨어져 교통 불편을 감안하여 장례식장은 설치하지 않았음.
- 시설에 지역주민들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지역민과 화장시설의 갈등관계에 다리역할을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4) 시사점

장사시설의 지역 편중

- 종합장사시설이 시와 도농복합지역인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그 외 군 지역에서는 다른 관내, 관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음.

과잉 시설공급과 시설 부재

- 봉안시설(장례식장도 마찬가지)은 향후에도 공급이 충분할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선호도가 높은 자연장은 청주 목련공원 외에는 부재함.
- 매장 욕구가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불법 매장을 억제할 수 있는 공설묘지 설치 필요, 집단·공설묘지 재개발이든 신규설치든 일원화한 묘지관리가 필요함.

3. 충청북도 12개 시·군 지자체의 장사시설 이용실태

(2013. 10월 담당공무원과의 유선인터뷰 내용)

○ 증평군

- 2011년 기준 화장률은 56.1%로 비교적 낮으나 2012년 통계에는 68.5%로 상당한 증가를 보임(표 3-8). 군민의 전반적인 장사문화로 보아 이러한 증가 현상이 일시적인지, 어떠한 이유인지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인구 약 3만 4천 500명 중 노인인구는 인접 괴산군의 경우 28.4%이지만 증 평군은 13.9%로 적어 노인사망의 경우 아직은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군 민들이 지역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화장을 하는 경우 인접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설치하는 것보다 효 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실태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무연고 묘지의 경우는 공장부지나 주택부지 조성 시 조사하여 공설묘지에 10년 정도 안치 처리
- 2012년 무연고자 시신 1구 접수, 2013년 접수된 경우 없음.

○ 보은군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42.1%, 2012년 44.0%로 낮음.
- 청주시와 협약을 맺어 화장시설 이용 시 기타 지역주민으로 30만원 비용 지 불, 그 중에 20만원은 보은군이 지원하여 이용자는 10만원만 부담, 소인도 동일함.
- 남부 3군의 경우 세종시, 상주, 청주, 김천의 화장시설을 주로 이용
- 증평군과 마찬가자로 인구수와 사망자수가 적은 이유로 화장시설 설치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영동군과 옥천군의 공동 화장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 공동 설치 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

○ 단양군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60.6%, 2012년 66.3%로, 타군지역에 비해 높은 기록 을 보이고 있음.

- 제천 화장시설 이용 시 장려금 지원이 협약 체결되어 있으며, 지원 금액은 보은군과 동일.
- 자연장으로의 권장, 유도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움 :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미흡하고, 비용부담과 절차가 까다로움.

○ 괴산군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46.8%, 2012년 50.7%로 낮은 편임.
-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주, 청주, 문경의 화장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 20만원 지원되어 보은, 단양과 동일한 경우가 되었음.
- 지형적으로 산과 임야가 많아서 묘지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직 매장문화가 근소하게 우위
- 앞으로 매장을 할 시 부지 이용 및 절차·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져서 꺼리는 경향이 늘어남.

○ 음성군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50.3%, 2012년 58.2%를 기록 중임.
- 노인인구 층에서 아직까지는 화장에 대해 부정적 시각
-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화장장려금 제도를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진천군과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위해 협의를 했으나 진천군에서 단독설치로 선회
- 민원으로는 가족, 종종묘지 신청건이나 본인 땅 인근에 묘지가 있어 처리해 달라는 건이 많음.

○ 제천시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68.9%, 2012년 73.5%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 중임.
- 화장시설은 30년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고, 자연장지도 2014년 5월 준공예정임.
- 타시군 주민의 제천 화장시설 이용료는 강원도 영월군과 협약이 체결되어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1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단양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에 의해 단양군민이 10만원의 이용료 부담, 충북 지역 외 평창, 봉화, 영주와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충북 타지역 주민 이용료와 동일한 30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있음.

- 법인 묘지가 만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신설 묘지나 종종묘지를 쓰고자 할 경우 지자체에서 허가를 까다롭게 하면서 자연장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
- 봉안에서 자연장지로 유도하는 친환경 장사정책도 지자체에서 추구
- 민원사례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예로 묘자리 공사 시 처리문제나 분묘를 할 경우 불허가에 대한 민원, 개별적인 자연장을 하고자 할 때 허가문제, 개인 토지 소유자가 산소를 쓰고자 할 때 그 장소가 공중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음.
- 화장시설이 일제 강점기부터 신백동에 있었고, 1976년에 현재 지역인 포전리로 이전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화장문화는 타지역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임.

○ 진천군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43.9%, 2012년 46.0%로 저조.
- 군민이 대개 청주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함과 비용부담 안고 있음.
- 진천의 공설묘지와 봉안당 부지에 화장장지와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쳐 현재 한국갤럽에 의해 설치 찬반에 대한 설문 진행 중(이후 화장시설 설치는 무산되어 국비 반납, 민선 6기의 과제로 남겨짐).
-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갈등으로 올해 3월부터 군청 주도 화장운동, 화장시설 설치 홍보로 주민 인식개선은 많이 되었다고 보임.
- 인접 음성군과의 공동설치에 대한 협의나 요청은 없었고,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 공동설치의 필요성이 논의된 정도였음.
- 음성군의 입장에서는 양 군의 중간 접경지대인 광혜원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기를 희망할 수 있으나 진천군은 공설묘지와 봉안당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장사시설로 그 곳에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민원으로는 장사법률에 사후 30일 이내에 장사처리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장소에 위배되는 묘지를 쓸 경우 불법으로 처리, 일부 이러한 불법묘지 처리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개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임. 무연고 분묘는 개발사업 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음.

○ 영동군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45.3%, 2012년 50.2%로 비교적 저조

- 화장시설은 주로 인근 김천, 대전, 세종시 시설을 이용
- 화장장려를 위한 주민홍보로는 이장회의나 단체회의 워크숍시 1시간 정도 강사 초빙 강연
- 현재 육천, 영동간 공동 화장시설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에 주민반발을 겪고 있음(결국 이후 무산과 국비 반납).
- 화장시설 공동 건립에 남부 3군 중 보은군이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도에서도 금전적 행정적 지원은 없음.
- 민원으로는 불법묘지 건이 가장 흔하며, 대부분 묘지주인과 민원제기자 간의 개인 갈등에 연유하는 경우가 많음.

○ 충주시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60.4%, 2012년 63.8%를 기록.
- 시민 화장률과 장사시설 이용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특별한 화장률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이나 홍보는 없으며, 단지 자연장지가 없어 아쉬움이 있음.
- 민원으로는 묘지 이장이나, 종종묘지 사용, 만장 시 봉안묘를 쓰고자 할 때 발생하는 불법 봉안묘에 대한 행정처분 등 다양

○ 청주시

- 2011년 기준 화장률이 55.2%, 2012년 59.6%를 기록.
- 민원으로는 많지 않은 불법묘지 신고가 있을 정도임.

○ 공통 사항

- 무연분묘의 처리는 정부에서 일제조사가 아니고는 어려움.
- 불법묘지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내려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반발 및 어려움 상존

제4장 국내외 장사시설 사례 연구

제1절 국내 장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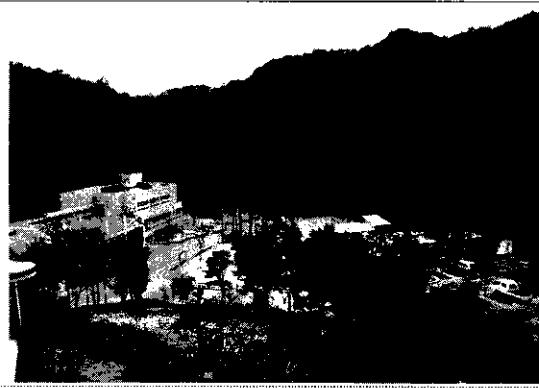
1. 인제종합장묘센터(하늘내린도리안)

□ 연혁

- '05. 04. 13 남전 1리 종합장묘센터 입지선정
- '05. 07. 27 실시계획인가
- '05. 08. 19 기공식 → 장묘시설 준공 '07. 09. 25
- '07. 11. 01 준공식
- '08. 01. 02 화장시설, 봉안당 운영개시
- '08. 02. 28 장례식장 개관

□ 시설현황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266번지
- 부지면적 : 60,351m²
 - 화장시설·장례식장: 2,855m² (863평)
 - 옥외벽식 봉안당: 현재 1,324기, 전체 2,400기
 - 공설묘지 : 285위(관내주민)
 - 가족봉안당 : 95위('09년도 시설중)
- 사업비
 - 13,241백만원(국비 1,536, 도비 200, 특교 1,500, 군비 10,005)



↳ 시설 전경



↳ 장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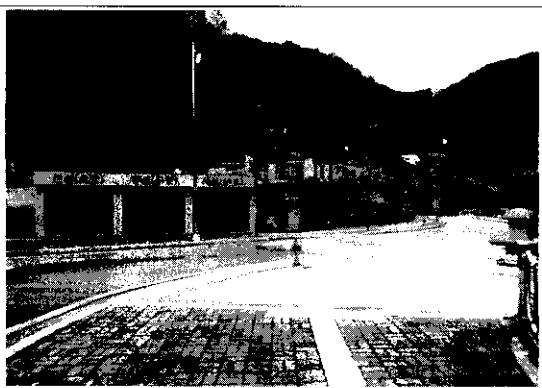
↳ 화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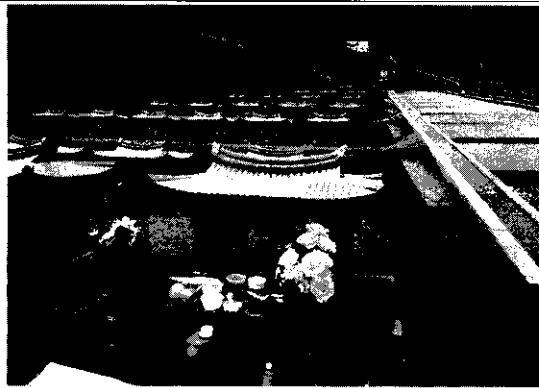
↳ 묘지



↳ 봉안당



↳ 제례당



↳ 봉안묘



↳ 유택동산

주요 시설

<표 4-1> 인제종합장묘센터 주요시설 현황

화장시설	- 화장로 : 3기(예비 1기) - 고별실 : 3실 - 분향실 : 2실 - 휴게실
봉안시설	- 옥외봉안당 : 2,400기 - 부부봉안당 : 680기
묘역	- 매립묘지 : 285기 - 가족봉안당 : 95위 - 유택동산 : 합동처리장
장례식장	- 빈소 : 소형1실, 중형1실, 대형1실 - 안치실 - 염습실 - 매점 - 식당 : 식사가능(예약가능)
주차시설	- 주차장 : 126대

○ 승화원

- 이용대상
 - 제한 없음

○ 봉안당

- 이용대상
 - 사망자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봉안 가능
 - 배우자 중 1인이 부부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
 - 관외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매립묘역

- 이용대상
 - 군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실상 사망일까지 거주한 자

○ 가족봉안묘

- 이용대상
 - 가족봉안묘 허가 신청 당시 군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실상 거주한자
 - 가족봉안묘의 수장대상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단, 관외지역의 개장유골은 4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함

○ 유택동산

- 이용대상
 - 무연고자, 봉안당 보관을 희망하지 않는 유골
 - 봉안당 안치 무연고자 중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
 - 봉안당 안치 유골중 사용기간 연장 신고 미이행 유골
 - 구비서류 : 화장예약시 신청서 작성
 - 이용절차 : 사용신고 → 유택동산 이동 → 합동유골 처리장

□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 하늘공원 (공설묘지)

<표 4-2>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 : 원)

명 칭	사용료		관리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하늘공원(개인)	1기(6㎡)	3,000,000	1기 / 최초 15년 (연장 10년)	750,000 (500,000)
하늘공원(합장)	1기(9㎡)	4,500,000	1기 / 최초 15년 (연장 10년)	1,125,000 (750,000)

*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용료는 최초 1회에 한하며, 관리비는 년 50,000원 기준, 일시불(최초 15년, 연장 10년)로 선납으로 한다.

○ 하늘내린 보금자리 (가족봉안묘지)

<표 4-3> 가족봉안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 원)

명 칭	사용료		관리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하늘내린 보금자리	12기(18㎡)	8,000,000	12기/15년	3,000,000

※ (관내 거주자에 한함) 사용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관리비는 년 200,000원 기준, 일시불(15년)로 선납한다.

○ 유택동산

- 사용료 없음

○ 휴공원(옥외벽식 봉안당)

<표 4-4> 옥외벽식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 원)

명 칭	사용료		관리비		비 고 (사용기간)
	관내	관외	관내	관외	
휴공원(개인단)	200,000	700,000	100,000	300,000	15년
휴공원 (부부봉안당)	400,000	1,400,000	200,000	600,000	15년

※ 관외 거주자의 유골은 부부동시 안치 경우에 한하여 부부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으며, 휴공원 개인단에서 부부봉안당으로 이동하는 경우 휴공원(부부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규 적용한다. 이때 기존 개인단 잔여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승화원(공설화장시설)

<표 4-5> 승화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기준	금액
가. 대인(15세 이상)	1구당	70,000	700,000
나. 소인(15세 미만)	1구당	60,000	500,000
다. 개장 유골	1구당	40,000	200,000
라. 사산아(7개월 미만)	1구당	30,000	100,000

- 휴공원/승화원 사용료 전액 감면(관내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여 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휴공원/승화원 사용료 50% 감면(관내 거주자)
 -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군수가 정한 지역주민

○ 장례식장

<표 4-6> 인제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사용료

(단위: 원)

구 分	기 준	사용료	
		관내	관외
장례식장	기본조문객실 1실당 (12시간 기준)	30,000	60,000
	대조문객실(12시간기준)	120,000	240,000
	빈소1실당(24시간기준)	50,000	100,000
	안치실1구장(24시간기준)	50,000	100,000
	영습실 1회	30,000	30,000

* 남전 1리 주민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이 운영

□ 시사점

- 인구 3만 2천여 명의 면적이 넓은 군지역에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장묘문화에 대한 군 자치단체장의 인식 및 의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입지 지역주민의 반발에 새농촌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를 마을에 설치하도록 인센티브 제공(70억)하고, 장례식장 운영을 마을협의회에 맡김.
- 수도권과 홍천 등에서 화장시설 이용객 증가, 현재 춘천과 홍천의 공동화장 시설 건립이 진행 중
- 옥외 봉안당 및 건축물 조성에 미관 및 주민 편의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

2. 담양군 갑향, 오룡공원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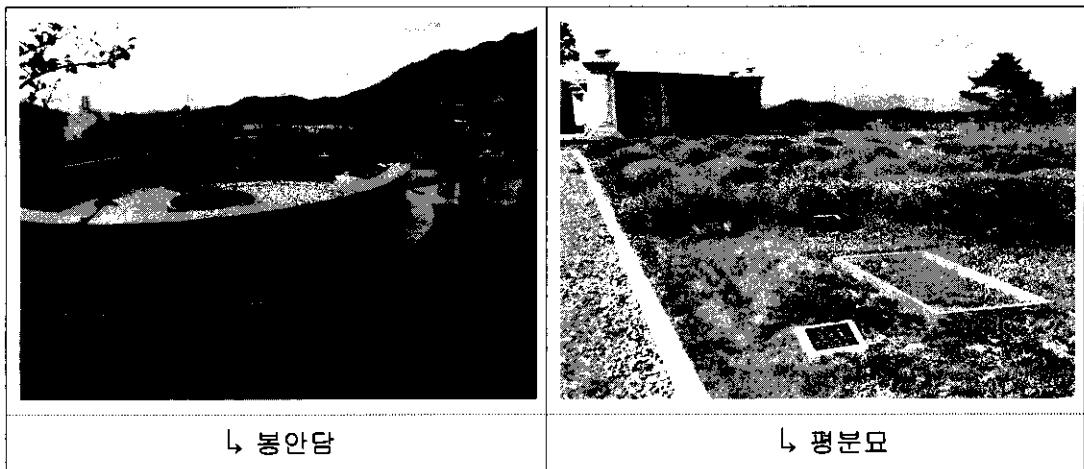
- 화장시설은 현재까지 대개 광주 영락원을 이용
 - 화장률은 담양 46%(전국 65%, 광주 57%, 전남 45%)
- 2000년대 초반부터 군민 대상 장사문화개선의 필요성 강조
- 새롭게 임야를 개간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군내에 산재한 공동묘지 대부분이 군유지임에 착안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 2002년 갑향리에 모범적인 봉안시설과 함께 군민의 장법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지지도 같이 확보하기로 정함.
 - 대전면 갑향리 901번지에 위치한 갑향공원은 전형적인 공동묘지로 총 면적 약 2만㎡(6천여 평)에 그 대부분을 400여기(100여기의 무연분묘 포함)의 분묘들이 산재한 가운데 보기 좋은 소나무가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었음.
- 주민 반발에 부딪쳐 갑향리에 경로당(마을회관)을 신축하고, 공동묘지 주변에 있던 50여주의 감나무까지 보상하는 조건으로 설득에 성공
- 2002년 빌주한 담양군 갑향리 봉안공원 기본계획 및 환경디자인 계획의 검토를 거친 후 2003년 말 최종안 확정

- 2003년 12월에 착공한 갑향공원 1차 정비 및 시설공사, 2004년 4월 하순 옥외벽식 봉안시설 2,276기와 200기의 평분형 묘지가 준공됨.
 - 평분묘와 봉안시설은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 6일까지 2차 공사를 추진해, 2,792기의 봉안시설 및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를 추가함.
 - 무연고자를 위한 열주형 봉안시설, 주차장, 산책로 등 대부분의 시설을 완공
- 2005년 12월에는 무정면 오룡리에 5,400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344기의 매장묘(평장) 시설까지 갖춤.
 - 옥외 벽식 봉안시설 10,468시(갑향공원 5,068기, 오룡공원 5,400기), 일반 매장묘 544기(갑향공원 200기, 오룡공원 344기)가 갖추어짐.
 - 갑향리와 오룡리에 각 1억원 씩의 주민시설 지원비용 외에 총 23억원(국비 9천 8백만원, 군비 13억원)이 소요됨.

□ 시설 현황

- 대전면 갑향리 901번지 2,075m²(5,068기)
- 무정면 오룡리 산 29번지 17,851m²(5,400기)





□ 주요 시설

○ 봉안 시설

-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로 공원을 가꾸어 추모객 및 일반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탐방형 묘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타 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

○ 시범자연장지 조성 예정(오룡공원)

<표 4-7> 봉안시설 이용안내

구 분	관 내		관 외	
	15년	60년	15년	60년
가족봉안(6기)		6,470		12,940
가족봉안(12기)		13,000		26,000
문중봉안(24기)		26,000		52,000

* 관내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를 말함.

□ 시사점

- 갑향공원과 오룡공원 조성에 소요된 4년여 동안 총 16회의 지역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 51회의 군민교육 및 군정보고를 활용한 주민의식개혁 노력, 85회에 이르는 군민들의 시설견학 등이 있었음.
- 전국에 산재한 공동묘지들을 재개발하면 묘지 및 봉안시설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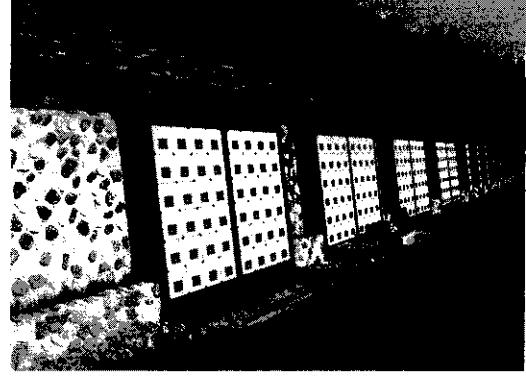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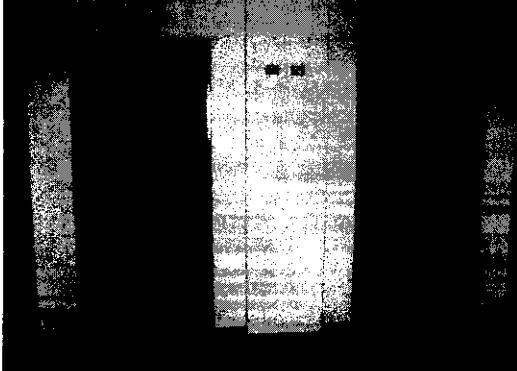
3. 남해 추모누리

□ 연혁

- 부족한 묘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 공설공원묘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면적 99,500㎡(3만평) 연건평 200평 2층 규모에 2,70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과 426기를 매장할 수 있는 묘역(1차)을 '99.4.29일 준공'
- 2001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사업 추진
- 공설공원 묘원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2001년에 5억원의 사업비로 매장묘역 500기, 옥외벽체식 봉안묘 360기, 조경 등 2차 묘역을 완료, 2002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차 조성사업 추진
- 상가방문 민원처리제
 - 담당공무원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주와 장례문화를 논의, 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선.

□ 시설현황

- 위치: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8번지 일대(남해군공설공원묘원내)
- 사업기간: 2002년 10월~2003년 12월
- 사업량
 - 부지 면적: 12만㎡
 - 매장 묘역: 4만 4700여 ㎡(1450기)
 - 봉안당: 3개실(4530기)
 - 봉안평장묘역: 4개소(2060기)
 - 옥외벽체식 봉안묘: 360기(48기 문중형 4개소, 12기 가족형 14개소)
 - 부대 시설: 100평(휴게실 및 식당, 관리사 등)
 - 화장 시설: 화장시설 1동(826㎡ 250평)에 화장로 2기
 - 자연장지: 2012년 10월 1만기 규모(2만 4천 793㎡) 추모정원 조성
- 사업비: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종합장례시설로 104억 3900만원 투입

 <p>남해공설 종합묘원 주모누리 안내도</p>	
<p>↳ 종합 조감도</p>	<p>↳ 장례식장</p>
	
<p>↳ 봉안 평장묘</p>	<p>↳ 봉안당</p>
	
<p>↳ 봉안당</p>	<p>↳ 자연장지</p>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묘역별 사용료 및 관리비

<표 4-8> 남해 추모누리 묘역별 사용료 및 관리비

(단위: 원)

묘역명	계 (15년기준)	사용료	관리비			석물대	규격	비고
			5년	10년	15년			
매장묘역	2,490,000	860,000	80,000	160,000	240,000	1,390,000	8.25㎡, 비석1, 상석1	남해군민 한정
봉안당	280,000	160,000	40,000	80,000	120,000	-	-	남해군민 한정
봉안당 (관외)	840,000	480,000	120,000	240,000	360,000			타지역 민
봉안평장	310,000	130,000	10,000	20,000	30,000	150,000		남해군민 한정
봉안묘	3,975,000	3,120,000	285,000	570,000	855,000			
담식 봉안시설	4,100,000	3,950,000	50,000	100,000	150,000		가족형 12구기준	

* 묘역 관리는 최초 15년간 관리되며, 1회에 15년씩 3회까지(총60년간) 연장할 수 있음
(단 사용료는 1회에 한하여 징수함)

* 단, 매장, 평장묘역은 사망일 1년 전부터, 자연장지는 사망일 전부터 남해군 주소, 등록
기준지인 자에 한함

영화원(화장시설) 사용료

<표 4-9> 화장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남해 군민	타지역 주민
대인(만15세이상)	60,000	300,000
소인(만15세이하)	40,000	20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 자연장지 사용 수수료

<표 4-10> 자연장지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사용기한		비 고
개인용	300,000	30년 (연장 150,000)	15년간 한정연장 가능	
2구형 가족용 (개소당)	450,000	60년 한정	연장불가	- 1구당 0.9㎡ 한정 - 가족 또는 문중용은 1개월 이내 구수에 따라 2분의 1 자연장하는 경우 사용가능
4구형 가족용 (개소당)	1,100,000	60년 한정	연장불가	
6구형 가족용 (개소당)	1,650,000	60년 한정	연장불가	
문중·종중용	안치가능구수	60년 한정	1구당 275,000원	

* 자연장지 시공단가(1구당): 70,000원(단, 1일 1건당 3구째부터는 1구당 1만원 적용)

시사점

- 한국에서 군단위 선진 장사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천할 만함.
-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한 장사문화 개혁의 일환으로 주민 대상 군의 홍보 및 의식개혁 노력은 타지자체에서 본받을 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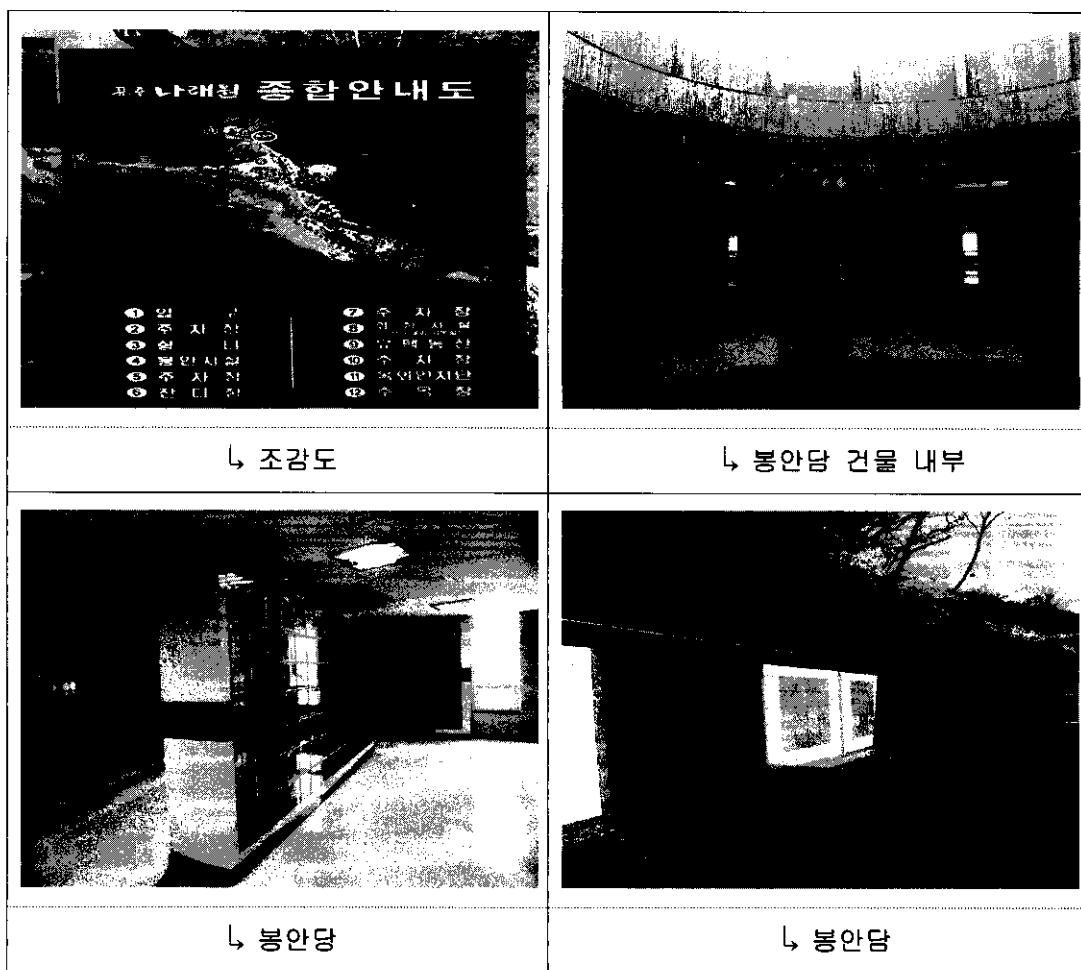
4. 공주 나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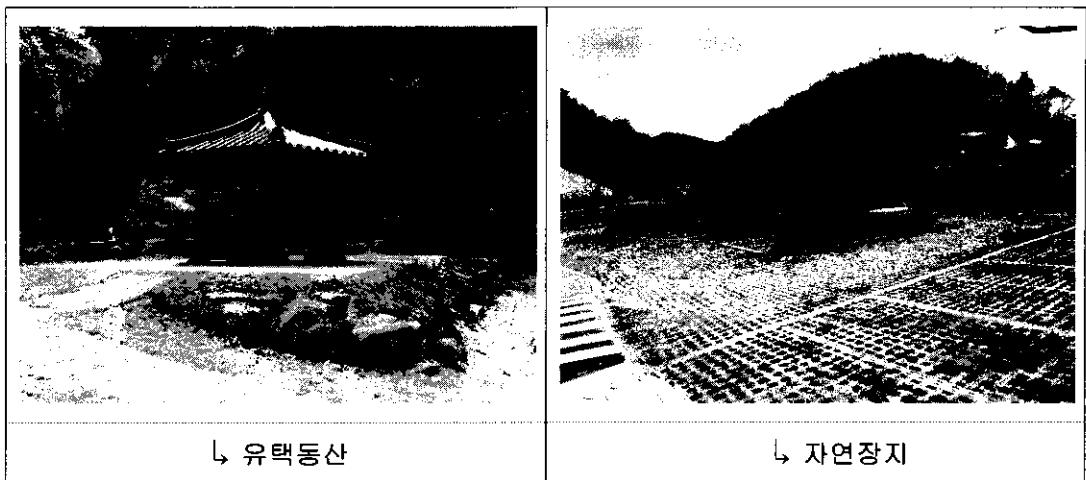
연혁

- 나래원은 2007년 입지 응모를 통해 이인면 운암리를 사업지로 선정
- 2010년 공사 착공
- 2012년 7월 시설 준공
- 2013년 2월 개관

□ 시설현황

- 위치 : 공주시 이인면 삼배실길 70(운암리)
- 부지 면적: 246,100m²
 - 화장시설 : 3,109m²
 - 봉안시설 : 3,226m²
 - 수목장 : 2,500m²
 - 잔디장 : 3,400m², 옥외안차단(600기)
 - 기타시설 : 주차장, 식당, 매점 휴게시설 등
 - 연중 무휴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 운영





□ 시설 현황

○ 화장시설

- 무연·무취시설로 화장로 3기, 식당, 매점, 휴게실(지하 1층, 지상 3층)

○ 봉안시설

- 봉안식 행사와 참배 등이 이루어지는 자연 채광되는 돔형시설로 화장 후 21,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 자연장

- 묘지와 봉안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2008년 5월부터 시행한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
 - 수목장 : 화장한 유골을 수목하부에 매장할 수 있는 시설
 - 잔디장 : 화장한 유골을 잔디하부에 매장할 수 있는 시설
- 현재 시설 내 자연잔디광장 조성 중

□ 시설 이용

○ 화장시설

- 인터넷 예약 :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 이용 대상 : 제한 없음
 - 사망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후 가능

○ 봉안시설

- 이용 대상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봉안가능
 - 타 지역 봉안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도 가능
 - 관외지역 무연유골은 사용제한

○ 봉안당 종문종 및 가족 예약실

<표 4-11> 시설이용 안내

구 분		내 용
봉안기수	문·종종	10기 이상 동시 봉안시
	가족단위	4기 이상 봉안시
안치 기간		접수 후 3개월 이내 안치(문·종종) 가족의 경우 접수시 사용료는 15년 분을 완불하고 봉안자가 안치될 경우 그 동안 사용료 정산 후 새로 15년 재계약

장사시설 사용료

<표 4-12> 장사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별	구 分	사용료	
		관내 지역	관외 지역
화장시설	만 15세 이상(1구)	100,000	500,000
	만 15세 미만(1구)	80,000	450,000
	개장유골(1구)	80,000	200,000
	죽은태아(1구)	50,000	100,000
봉안시설	일반(1위, 15년)	500,000	1,000,000
	부부(2위, 15년)	1,000,000	2,000,000
	무연유골(1위, 10년)	100,000	사용제한
자연장지	수목장	1위(15년)	300,000
	잔디장	1위(15년)	300,000
유택동산	1위	10,000	10,000
	죽은 태아	5,000	5,000

* 관내 : 공주시 관할구역 내, 관외 : 공주시 관할구역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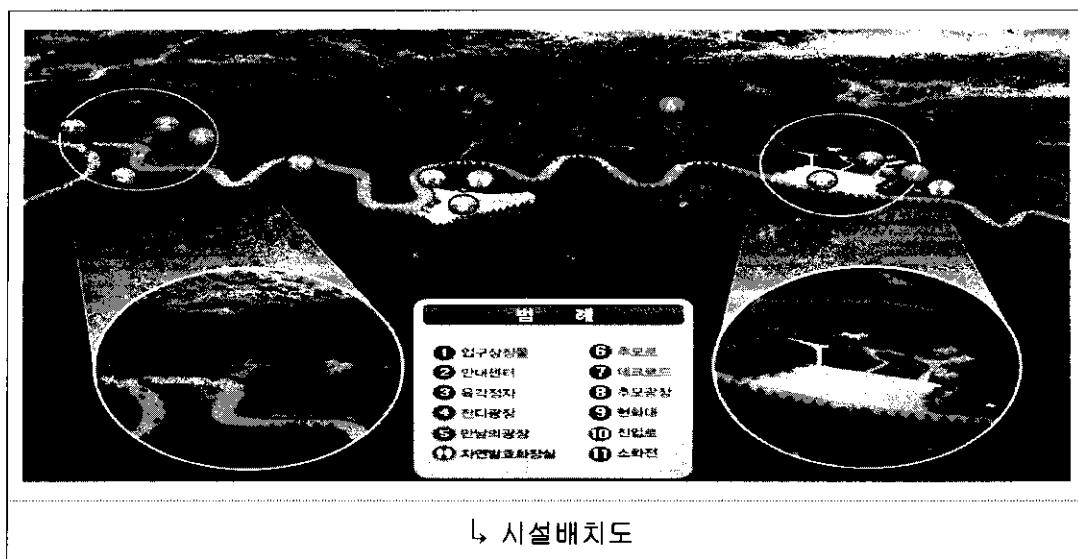
□ 시사점

- 비교적 거주주민이 적은 곳을 입지 선정하였고, 주민반발은 있었지만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시설에 마을 주민 채용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음.
- 이용객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부지와 봉안규모는 수요예측 및 주민편의성에 의문이 있게 함.

5. 경기 양평 하늘숲 추모원(자연장지)

□ 시설현황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 개관 : 2009.5
- 구역 면적 : 55ha
- 국립 수목장림 : 10ha
- 운영 주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 위탁)





↳ 입구 상점로



↳ 안내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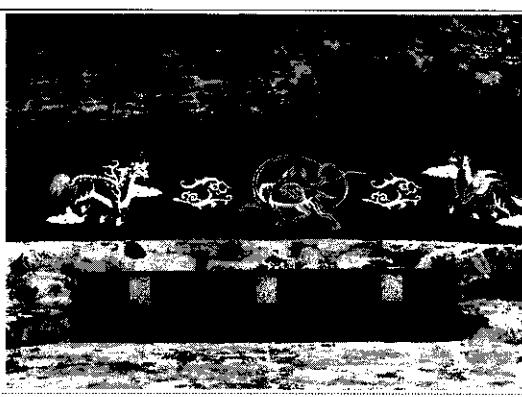
↳ 추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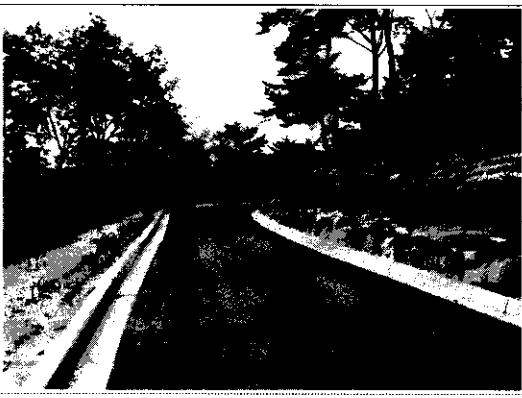
↳ 데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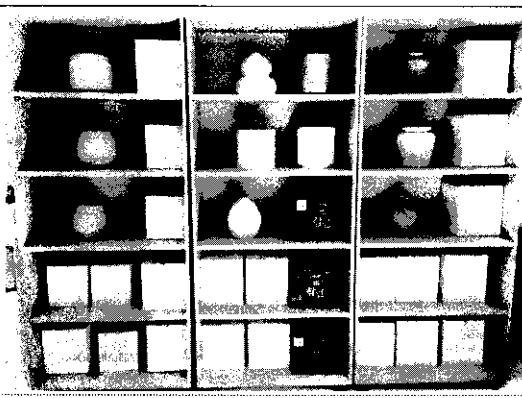
↳ 현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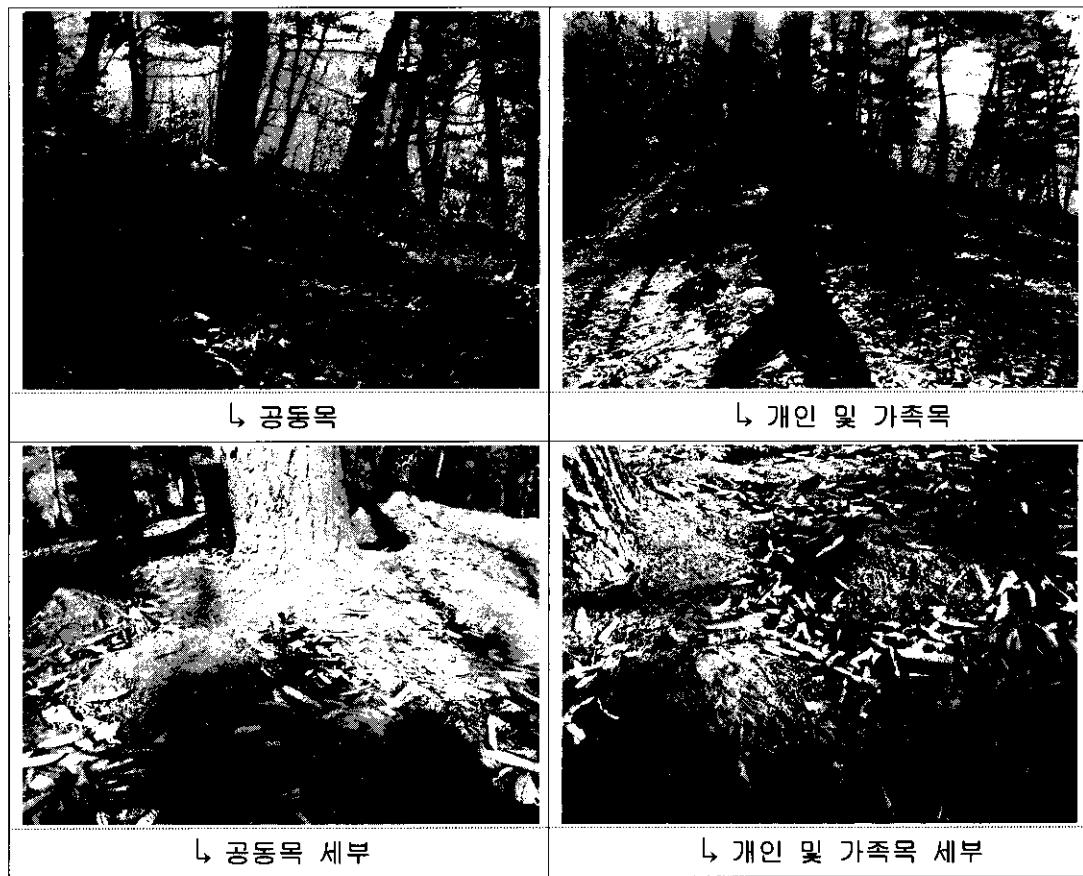
↳ 현화대



↳ 진입로



↳ 유분함



시설 이용

<표 4-13> 사용료 및 관리비

구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 고
가족목	A등급	20,000원	135,000원	·사용료는 추모목 한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당 1년 관리비 45,000원 씩 추가됨.
	B등급	16,000원		
	C등급	12,000원		
공동목	A등급	4,000원	45,000원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의 5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사용료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B등급	3,200원		
	C등급	2,400원		

* 사용료 : 추모목 1그루에 부과되는 금액

* 관리비 : 유골 1위에 부과되는 금액

<추모목 사용 기간>

- 추모목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
 - *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번에 15년 이상 계약 가능

□ 시사점

-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산사태, 수해 등의 우려가 있음.
 - 자연장지의 대상지 선정이 주민들과 협의가 가능한 인허가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산사태, 물난리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추모목의 위치를 GPS로 측량하여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 중
- 재선충, 병해충 등 수목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활엽수림, 혼유림으로 수종변경이 필요하고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됨.
 - 임수기간을 몇 년으로 계획할 것인가에 따라 수종의 크기와 수량 정함.
 - 추모목 훠손으로 인해 대체할 때 대체목의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으로 하거나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함.
 - 추모목 사용 시 국민의 정서가 공동목 보다는 가족목, 개인목을 더 선호함.
- 현재 수목장이 봉안당의 선호도보다 높으나 수목장의 실이용은 2~3%에 지나지 않음.
 - 원인은 장례식장의 영업사원과 봉안당과의 유착관계에 의한 리베이트 비용이 25~40%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장지로의 유도 어려움.
 - 다른 원인으로는 지자체에서 수목을 이용한 조경을 친근감 있게 조성했다면 실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임.
- 양평의 경우 노약자 및 장애인이 방문하여 추모하기에는 교통 불편 및 지형이 순탄치 않음.
 -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는 수목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하차해야 하며, 택시는 실제 마을에 몇 대가 되지 않아 자차가 아닌 이상 방문하기 어려워 현재 마을회관을 기점으로 관리소 직원 차량으로 방문 문의 시 교통편의 제공 중

제2절 국외 장사시설

1. 일본 오사카부 이이모리 공원묘지 및 화장장

□ 영원조합 4개시 연합 현황

○ 시조나와테 시(장사시설 소재)

- 면적 : 18.74km²
- 인구 : 56,965명
- 위치 : 오사카의 동북부

○ 모라구치 시

- 면적 : 12.73km²
- 인구 : 144,633명
- 위치 : 오사카 평야의 거의 중앙부

○ 카도마 시

- 면적 : 12.28km²
- 인구 : 127,467명
- 위치 : 오사카부의 북동부

○ 다이토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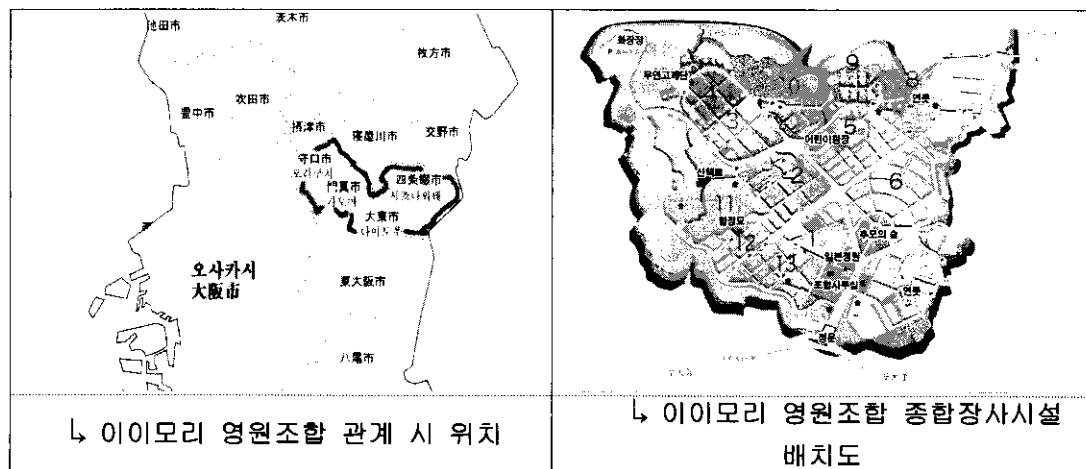
- 면적 : 18.27km²
- 인구 : 124,552명
- 위치 : 오사카부의 동쪽, 가와치 지방의 거의 중앙부

□ 조합의 장사시설 및 사업 현황

○ 4개의 시가 연합하여 조직한 자치단체조합에서 종합장사시설을 운영

○ 묘지는 물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symbol zone (상징공간), 일본정원, 연못과 폭포와 산책로, 휴식 광장, 잔디 광장 등 마련

□ 시설 현황



○ 영원(靈園) 공원묘지

- 1965년 조합설립과 동시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계획 공원묘지로서 도시 계획이 결정
- 현재 총 면적은 57ha(0이이모리 화장장 제외)
- 분묘 1기에 4m²내지 30m²까지의 면적을 지닌 2만 4천여 구획이 설치
- 일반묘소(일본식묘), 벽형묘소, 잔디묘소로 구분되며, 2007년 4월 새로운 형식의 합장묘 「니지노오카 ‘무지개 동산’」을 완성하여 주민에게 제공

○ 묘소 사용허가 상황

<표 4-14> 이이모리영원조합 묘지 사용허가 상황

도시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2년 말 사용허가상황	
	구획수	구성비	구획수	구성비	구획수	구성비	구획수	구성비
모리구치	62	26.1	55	22.1	46	21.4	4,170	20.0
가토마	69	29.1	59	23.7	47	21.9	3,006	14.4
다이토우	31	13.1	42	16.9	34	15.8	2,519	12.1
시조나와테	31	13.1	47	18.8	34	15.8	1,631	7.8
기타	44	18.6	46	18.5	54	25.1	9,527	45.7
계	237	100.0	249	100.0	215	100.0	20,853	100.0

* 출처 : 이이모리영원조합 2013년판 조합요람

○ 화장장

- 1968년 10월에 화장장을 건설, 이후 관계 시 및 근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왔지만 오랜 세월 노후화되어 1992년 8월 새로운 화장장을 착공하여 1993년 5월 준공
- 부지면적: 11,404.91m²
- 화장장: 화장동과 대합동으로 구성(연면적: 1,748.94m²)
- 화장로: 최신기술이 결집한 무연 무취의 무공해 시설로써 화장로 10기 중 표준 3기, 대형 7기, 오물 1기와 2기 설치 가능한 예비공간
- 고별실·수골실 등을 기능적으로 배치, 고별실 3실, 수골실 2실, 영안실 1실
- 대합 홀에서는 신록이 풍부한 산맥을 조망할 수 있는 등 업숙한 중에도 쾌적함을 겸비한 근대적인 시설로 사랑받고 있음.

□ 화장장 사용료(최근 개정 2011년 4월 1일)

<표 4-15> 이이모리영원조합 화장장 사용료

종 별	구분	단위	사용료(円)		
			관계시	交野市	기타
화장로	만12세 이상자	1구	20,000	65,000	70,000
	만12세 미만자		13,000	43,000	47,000
	임신 4개월 이상 사태		4,000	14,000	16,000
오물로	출산 오물 등 인체 일부	1개 또는 1포 (약30cm ³)	1,600	3,100	3,700
영안실	시신보관(1구)	24시간까지	700	4,000	4,500
		24시간 초과 1시간마다	70	400	450
대합실	和室(일본식 다다미방)	1시간 30분까지	1,000	4,500	5,000

* 출처 : 이이모리영원조합 2013년판 조합요람
 * 카타노시(交野市)는 화장장이 있는 바로 북쪽에 접한 시

□ 화장장 사용 현황

<표 4-16> 이이모리영원조합 화장장 사용현황

도시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모리구치	1,123	23.1	1,107	21.3	1,203	23.2
가토마	1,050	21.6	1,051	20.3	1,131	21.8
다이토우	826	16.9	890	17.2	953	18.4
시죠나와테	380	7.8	414	8.0	399	7.7
소계	3,379	69.9	3,462	71.2	3,686	71.2

가타노	177	3.7	147	2.8	148	2.9
기타 市町村	1,277	26.4	1,250	24.1	1,346	26.0
소계	1,454	30.1	1,397	28.8	1,494	28.8
합계	4,833	100.0	4,859	100.0	5,180	100.0

* 출처 : 아이모리영원조합 2013년판 조합요람

□ 공영장의 사업

- 이이모리영원조합의 공영장의 사업은 장제의 간소화 및 장제비용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 6월부터 실시
- 업무는 민간장의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신청자가 지정업자 중에서 선택하여 위탁 집행, 사용자에게는 「장려금」으로 1건당 3만 円을 지급
- 조합 장의는 상주 혹은 사망자가 관계 시민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
- 공영장의는 이이모리영원조합의 지정을 받은 취급 지정업자가 희망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장의 一式를 거행하며 「공영장의 취급지정업자 일람표」에서 희망하는 취급지정업자를 선택하여 지정업자에게 직접 전화로 신청함.

2. 일본 효고県 타이시町 치구시노오카 화장장

- 筑紫の丘斎場(揖龍火葬場) -

□ 치구시노오카 화장장 현황

- 자치단체 광역조합을 구성하여 재래식 화장장을 현대화
 - 위치: 이보군(揖保郡) 다이시정(太子町), 원래의 위치에 확장
 - 이보가와(揖保川), 미츠(御津), 타이시정(太子町)의 3개 정(町)의 광역화장장과 인접한 타츠노시(龍野市)의 화장장이 통합하여 신설

□ 조합의 장사시설 및 사업 현황



↳ 치구시노오카 화장장의 현대화 전후 모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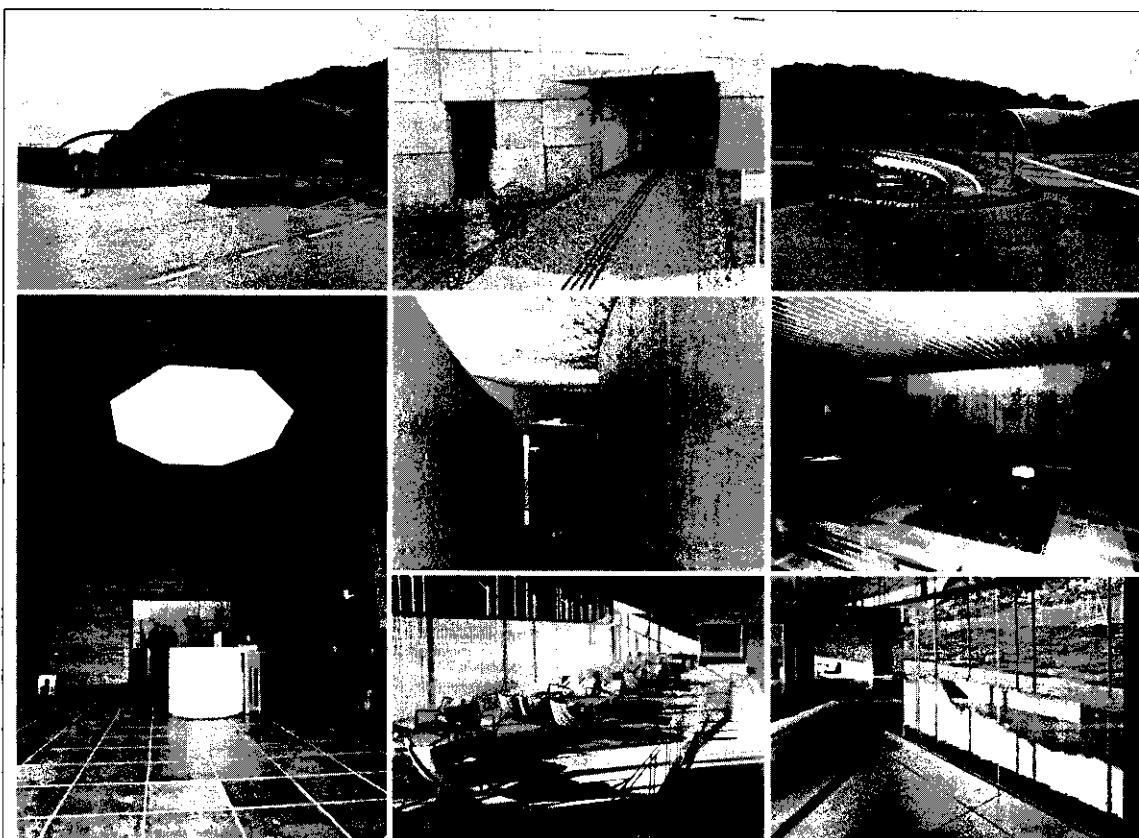
- 화장장 입지의 특징은 인가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큰 구조물인 국도 2호선과 인접
- 일본인들의 평면적인 공간개념 속에서, 산자와 죽은자가 동일 평면상에 있는 평면적인 선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화장장의 평면 동선을 계획하게 됨.
- 화장로는 6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으나 모든 로(爐)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벽으로 밖에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만을 열어 시신을 담은 관을 받음.
- 유족 및 조문객은 넓은 고별 hall에서 고인을 위한 단 하나뿐인 爐에서 의 의식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마치 이 건물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설 현황

<표 4-17> 치구시노오카 화장장 시설현황

명칭	揖龍保健衛生施設事務組合營火葬場『筑紫の丘斎場』
소재지	효고현 이보군 타이시정 치요오카 捷保郡太子町佐用岡732番地
부지	12,685㎡
면적	바닥면적 2,315㎡, 건축면적 2,771㎡,
구조	트러스 콘크리트 구조 + 철골조
공사기간	2001년 7월 ~ 2003년 3월 31일 (2003년 1월 1일부터 사용시작)
설비	<p>화장부문</p> <p>화장로 6기, (1일 화장건수 10구)</p> <p>- 백필터 600㎡/min 측매식 다이옥신분해제거장치</p> <p>고별실 2실</p>

	<p>로전홀 수골실 2실 영안실 1실 동물로 1기 동물고별실</p> <p>대합부문 대합로비 ① 26席、대합로비 ② 14席(무료) 대합실 (10畳) 4실(유료) 휴게실</p> <p>주차장 승용차 33대, 대형버스 (전장 11m 이내) 2대, 마이크로버스 2대</p>
직원	4명 (市町 파견직원 1명, 임시직원 1명)
휴업일	1月1日, 1月2日
공사비	1,561,455천 엔



치구시노오카 화장장의 여러 모습

- 제일 윗줄 ; 좌로부터 화장장 정면 우측, 주 출입구, 중앙 정면
- 가운데 줄 ; 좌로부터 고별실, 내부 복도, 로전 및 송별 훌,
- 아래 줄 ; 공동대합실, 水庭

화장장 운영 조합 - 捐龍保健衛生施設事務組

- 사무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타츠노시(たつの市)’와 ‘타이시정(太子町)’은 효고현(兵庫縣)의 남서부 니시하리마(西播磨)지역의 핵심도시인 하메지 시(姫路市)의 서쪽에 위치
- 구성 시의 인구 등(2013년 4월 1일 현재)

<표 4-18> 화장장 운영조합 구성 시의 인구

市町	소재지	전화 번호	인구수	구성비	세대수	면적(km ²)
타츠노市	たつの市龍野町富永1005-1	0791-64-3131	80,193	69.8	29,518	210.93
타이시町	揖保郡太子町鶴1369-1	079-277-1010	34,681	30.2	12,902	22.62
계			114,874	100.0	42,420	233.55

3. 홍콩의 녹색장사(Green Burial) 정책

□ 장사문화

- 홍콩에서 매장과 호화장례라는 중국적인 유교전통을 빨리 청산했던 것은 인구의 과밀과 묘지난 때문이었음.
 - 홍콩의 면적은 외곽의 신계지역까지 합쳐 1,104km², 인구가 707만 여명 (2011년)으로 인구밀도가 무려 6,544명에 달해 초 과밀상태
- 매장하는 경우에는 6년 동안만 매장토록 하는 시한부 묘지제도를 1970년에 도입, 묘 면적도 1기당 묘의 길이와 폭이 각각 2.4m와 0.9m(0.65평)이하로 엄격히 제한
 - 관 없이 유골만 묻는 봉안묘지는 최대면적 0.9m×0.9m로 엄격히 규제
- 홍콩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공설봉안당이며, 봉안당들은 대체로 주택가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다 건물이 깨끗하고, 2인용(부부용) 혹은 4인용(가족형)으로 적지 않은 공간을 가져 쾌적한 편
 - 홍콩 행정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봉안당을 건립하여 공급하지만 매년 4만 2천 여 명의 사망자 중 90% 이상이 봉안당을 원해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 봉안당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값비싼 사설봉안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임시 봉안당(고인호텔이라는 별명으로 불림)에 모시기도 함.

- 홍콩특별행정구정부 식품환경위생서에서는 봉안당 수급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산골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유골가루를 뿌리는 산골은 화장장이나 묘지에 마련된 기념화원에 유골을 뿌리는 것과 홍콩 앞바다에 산골하는 것, 2가지 유형을 장려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녹색 장법(green burial)을 이용하는 수가 증가, 추모의 정원에서 유골을 뿌리려는 신청서가 2008년 383건이던 것이 2013년에 2,023건으로 5배 이상 증가

□ 장사시설

- 홍콩 장사시설 운영현황 총괄

<표 4-19> 홍콩 장사시설 운영현황(2008~2011)

구 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묘지	계	41	41	41	41	
	공설묘지(公眾墳場)	11	11	11	11	
	사설묘지(私營墳場)	28	28	28	28	
	영연방묘지(*1)	2	2	2	2	
화장장	계	12	12	12	12	
	공설화장장 (公眾火葬場)	6	6	6	6	
	사설화장장 (私營火葬場)	6	6	6	6	
매장 수	계	4,814	5,082	5,244	5,312	
	관(棺木)	3,943	4,026	4,102	4,210	
	유골항아리(金塔)	871	1,056	1,142	1,102	
화장 수	계	41,101	40,441	41,091	40,557	
	시신(屍體)	36,410	36,486	38,006	37,916	
	개장 유골(骸骨)	4,691	3,955	3,085	2,641	
개장 수	계	7,395	7,144	7,054	5,866	
	관(棺木)	5,987	5,895	6,127	4,572	
	유골항아리(金塔)	1,408	1,249	927	1,294	

* 주 1 ; 英聯邦紀念墳場管理委員會墳場, Cemetery under Common War Graves Commission)

* 출처 : 홍콩특별행정구 FEHD 홈페이지(2013.12월)

- 공설묘지(公眾墳場) : 11개소 HONG KONG NEW Columbarium

- 홍콩 묘지 Hong Kong Cemeteries 香港墳場, 1845년 건립

- 케이프 콜린슨 추모의 정원 Garden of Remembrance (Cape Collinson) 歌連臣角紀念花園,
- 마운트 캐롤라인 묘지 Mount Caroline Cemetery 掃桿埔咖啡園墳場,
- 신 쿠룬 8호 묘지(다이아몬드 힐 봉안묘지) New Kowloon Cemetery No. 8 (Diamond Hill Urn Cemetery) 新九龍8號墳場 (鑽石山金塔墳場),
- 죄수 묘지 Prison Cemetery (Stanley) 赤柱監獄墳場,
- 화 흡 섹묘지 Wo Hop Shek Cemetery 和合石墳場, 1950년 건립
- 청 차우 묘지 Cheung Chau Cemetery 長洲墳場,
- 타이 오 묘지 Tai O Cemetery 大澳墳場, 1932년 건립
- 라이 치 유엔 묘지 Lai Chi Yuen Cemetery 禮智園墳場
- 샌디 라이즈 묘지 Sandy Ridge 沙嶺墳場, 1949년 건립
- 샌디 라이즈 Sandy Ridge Urn Cemetery 沙嶺金塔墳場, 1949년 건립

○ 공설화장장 : 6개소(2005년 11월)

<표 4-20> 홍콩 장사시설 공설화장장 현황

화장장 명칭	화장로	연간 화장능력	운영시간
합 계	32기	34,446구	
Cape Collinson Crematorium 歌連臣角화장장	12기	10,278구	09:00 ~ 18:00
Diamond Hill Crematorium 鑽石山화장장	6기	5,724구	09:00 ~ 18:00
Fu Shan Crematorium 富山화장장	4기	5,724구	08:30 ~ 18:00
Kwai Chung Crematorium 葵涌화장장	4기	6,996구	08:30 ~ 18:00
Wo Hop Shek Crematorium 和合石화장장	4기	3,816구	08:30 ~ 17:30
Cheung Chau Crematorium 長洲화장장	2기	1,908구	09:00 ~ 17:30

○ 봉안당 (2013년 현재)

<표 4-21> 홍콩 장사시설 봉안능력 현황

명 칭 (위 치)	봉안 능력		
	2005년	2010년	2013년
Cape Collinson Columbarium	59,527구	61,615구	61,615구
Diamond Hill Columbarium	43,310구	61,811구	63,311구
Fu Shan Columbarium	9,625구	9,625구	9,625구

Kwai Chung Columbarium	3,508구	9,276구	9,276구
Wo Hop Shek Columbarium	19,890구	22,290구	65,990구
Cheung Chau Columbarium	1,309구	2,335구	2,335구
Lamma Island Columbarium	490구	490구	490구
Peng Chau Columbarium	490구	490구	490구
계	138,149구	167,932구	213,132구

산골시설 (추모의 정원)



2007년 말에 오픈한 Cape Collinson 화장장 추억의 정원

- 홍콩 FEHD(食物環境衛生署, 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이 기관 산하에 2개소의 묘지 및 화장장 관리처가 있음)의 화장장 및 공공묘지 등에 화장유골을 뿐릴 수 있는 10개소의 '추모의 정원'을 조성해 두고, 사설 또는 공공봉안시설에 유골을 봉안하고 있던 시민들이 그 중 한곳에서 무료로 유골을 뿐릴 수 있도록 함.
- 추모의 정원이 있는 장사시설
 - Cape Collinson 歌連臣角 (화장장)
 - Diamond Hill 鑽石山 (화장장)
 - Fu Shan 富山 (화장장)
 - Kwai Chung 葵涌 (화장장)
 - Wo Hop Shek 和合石 (화장장)

- Cheung Chau 長洲 (화장장)
- Lamma Island 南丫島 (묘지)
- Peng Chau 坪洲 (묘지)

○ 추모의 정원 신청방법 및 수수료

-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공인 대리인은 '화장유골의 반출허가서'를 가지 고 FEHD의 홍콩 또는 구룡 지역 묘지 및 화장장 관리사무소 중 해당 사무 소에서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은 우편, FAX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FEHD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신청은 7일(근무일) 이내에 처리
-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추모의 정원에 있는 벽에 고인을 추모하는 기념 패를 부착 할 수 있음.

○ 새로운 추모의 정원 개설



다이아몬드힐의 새로운 추모의 정원

- 2012년 7월 9일, FEHD에서는 다이아몬드 힐 화장장에 유골을 뿌리는 새로운 추모의 정원을 개설하고 사용에 들어감.
- 2,000m² 면적의 추모의 정원은 아름답고 평온한 환경 속에 특색 있는 다양한 꽃과 식물로 가꾸어져 있음.

○ 위홉谢(Wo Hop Shek) 추모의 정원

서양식(Western-style GoR)

중국식(Chinese-style GoR)



워홀섹 봉안당의 기념화원 모습

- 워홀섹(Wo Hop Shek)은 키우타우(Kiu Tau)路 봉안당 5구역에 설치된 새로운 서양스타일의 기념화원, 추모의 정원이 2013년 5월 6일부터 사용이 시작되었음.
- 홍콩의 11번째 추모의 정원은 아름답고 평온한 환경 속에 다향한 꽃과 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인을 추모하는 명판을 부착할 수 있는 추모의 벽도 있음.

4. 스위스 취리히 시립묘지의 자연장

취리히 시립 장사시설

- 2개의 화장장과 24개의 묘지에 55,000기의 묘가 있음.
 - 질펠트 묘지에 있는 화장장은 취리히 화장협회에서 설치·운영하며, 노르트하임 화장장은 시립임.
 - 묘지는 시립이 19개소, 유대인묘지 등 사설 묘지는 5개소임.
- 장례와 관련한 업무는 ‘장례와 묘지사무소’에서 관장하며, 묘지구역의 원예 관리는 취리히 시 녹지부서에서 담당함.

<표 4-22> 취리히 시립묘지(Städtische Friedhöfe)

번호	묘지 명칭	개설연도	면적(㏊)	봉안시설	자연장지	특기사항
1	아풀테른묘지(Friedhof Affoltern)	1683	23,373	×	○	
2	알비스리덴묘지(Friedhof Albisrieden)	1902	10,052	×	○	
3	알트스테텐묘지(Friedhof Altstetten)	1908	15,884	×	○	
4	아이히뷔헬묘지(Friedhof Eichbühl)	1966	141,401	○	○	
5	엔젠뷔헬묘지(Friedhof Enzenbühl)	1902	98,334	×	○	
6	프룬데른묘지(Friedhof Fluntern)	1887	33,250	×	○	
7	薨그묘지(Friedhof Höngg)	1500이전	8,970	N/A	N/A	
8	薨걸베르크묘지(Friedhof Hönggerberg)	1948	57,290	×	○	2003 수목정원 병설
9	레임바크묘지(Friedhof Leimbach)	1883	1,656	×	○	2004 수목정원 병설
10	마네그묘지(Friedhof Manegg)	1897	111,375	×	○	
11	노르트하임묘지(Friedhof Nordheim)	1899	125,992	화장장 ○	○	시립화장장 연결
12	뮐리콘묘지(Friedhof Oerlikon)	1876	7,230	×	○	가족묘지 전용
13	레할프묘지(Friedhof Rehalp)	1874	31,159	○	×	
14	슈바엔딩겐묘지(Friedhof Schwamendingen)	1912	65,518	○	○	
15	쉬반덴홀츠(Friedhof Schwandenholz)	1903	105,800	×	○	
16	질펠트묘지(Friedhof Sihlfeld) A-E	1877	288,000	○	○	화장협회 화장장
17	우에트리베르크묘지(Friedhof Uetliberg)	1971	95,639	○	○	
18	비티콘묘지(Friedhof Witikon)	1957	63,480	○	○	무슬림 묘역
19	비티콘교회묘지(Kirchhof Witikon)	1270	1,349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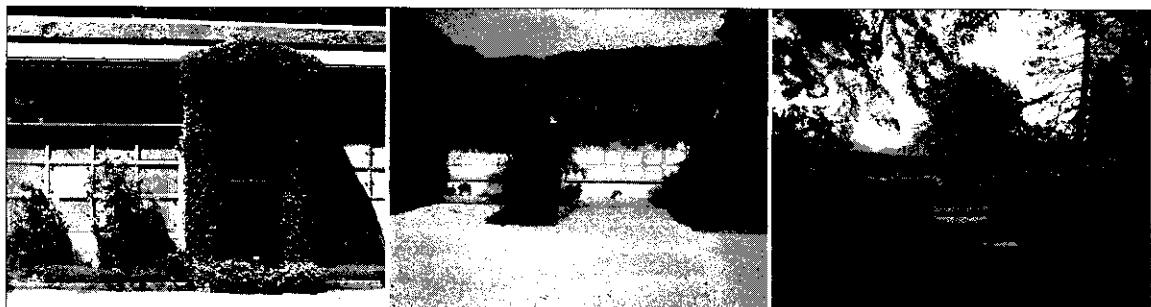
* 주 ; 1. 봉안시설에는 봉안묘는 포함하지 않음
2. 노르트하임 화장장에 봉안당 설치

배정묘와 배정봉안시설

- 취리히 시에서 거주하다 사망하는 사람에게는 배정묘 또는 배정봉안시

설이 20년간 무료로 제공

- 무덤에는 유족들이 비를 세우고 가꾸어야 하며, 봉안시설에는 고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 사용기간이 지나면 시에서 무덤을 제거하며, 유골이나 유골항아리는 땅에 매몰함.
 - 배정 봉안묘(Urnen-Reihengrab) : 크기 1.2m × 0.8m, 유골항아리 4개 안장, 연장 불가
 - 배정 매장묘(Erdbestattungs-Reihengrab) : 크기 1.8m × 0.9m, 연장 불가
 - 어린이 배정묘(Kinder-Reihengrab) : 크기 1.2m × 0.75m, 연장 불가
 - 배정 봉안시설(Urnen-Reihennischen) : 봉안담, 유골항아리 1~2개 안치, 자연석 또는 동판
 - 무슬림 묘역(Grabfeld für Musliminnen und Muslime) : 2.2m × 0.8m



*봉안시설 봉안담 - 좌로부터 가족임대봉안담, 배정봉안담, 임대봉안담

임대묘와 임대봉안시설

- 가족형 봉안묘, 매장묘 또는 봉안담은 일정기간 임대 가능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으며 종료기간은 사용자가 결정
- 거주자 또는 외국인은 모든 묘지의 분묘를 사용할 수 있음.
 - 배정임대봉안묘(Urnen-Reihenmietgräber): 임대기간은 30년이며, 면적은 1.8m × 0.9m이고, 가족형으로 6개의 항아리를 땅 속에 매장할 수 있다.
 - 가족매장임대묘(Familien-Erdbestattungsmietgräber): 임대기간은 30, 40 또는 50년이며, 면적은 3.0m × 2.2m이고, 분묘를 디자인할 수 있음.

- 가족임대봉안묘(Familien-Urnemietgräber): 임대기간 30, 40 또는 50년, 크기 2.0m × 1.6m, 분묘를 디자인할 수 있음.
- 가족임대봉안담(Familien-Urnemietnischen): 임대기간 30년, 질펠트묘지의 반원형의 봉안담
- 임대봉안담(Urnen-Mietnischen): 1~2유골항아리 수용, 질펠트 · 레할프묘지 및 노르트하임 화장장에서 20년간 임대 가능
- 가족 임대수목장(Familien-Mietbaum): 가족구성원의 숫자대로 매장 가능, 참나무 · 소나무 및 단풍나무 중에서 선택, 시민 1,000프랑, 외국인 2,000프랑의 사용료 징수, 숲의 관리를 위해 1매장마다 214프랑을 징수, 식물 가꾸기 · 이름 새기기 및 양초 사용 금지, 30년 사용 후 나무의 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

□ 공동체 무덤

- 대부분의 취리히 시립묘지에는 공동체무덤이 제공됨.
- 공동체무덤 공간에서는 개별적인 표시, 식물 가꾸기 및 장식도 할 수 없지만, 일부 묘지의 공동체무덤에서는 이름을 부착할 수 있음.
- 주민은 물론 외국인도 안장이 가능하며, 화장 유골만 허용함.
 - 기명 공동체무덤(Gemeinschaftsgrab mit Namensinschrift) : 알비스리덴, 알트스테덴, 프룬데른, 마네그, 노르트하임, 윌리콘, 쉬바멘딩겐 및 질펠트묘지에서는 고인의 이름과 날짜를 새길 수 있으며, 시민은 사용료가 없고 안장 시 214프랑의 관리비를 받고, 이름을 새길 때는 따로 210~400프랑의 비용을 징수함. 사용기간은 20년이며, 개장은 불가능함.
 - 무기명(Gemeinschaftsgrab ohne Namensinschrift) : 아풀테른, 아이힐뷔헬, 엔谮뷔헬, 횡걸베르크, 라임바크, 쉬반덴홀쓰, 우에트리베르크 및 비티콘묘지에 있으며, 시민은 사용료가 없고 안장 시 214프랑의 관리비를 받으며, 사용기간은 20년이며, 개장은 불가능함.
 - 어린이전용공동체무덤(Gemeinschaftsgrab für die ganz Kleinen) : 노르트하임묘지에 있으며, 출생 직후 사망하거나 사산아 전용이고, 25cm크기까지의 사산아는 매장도 가능하고, 백색 대리석에 비문을 새기는 것이 가능하며, 20년 동안 안장하고, 개장이 불가능하며, 취리히 시민자녀는 무료, 외국인 자녀

는 375프랑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모든 안장자에게 214프랑의 관리비를 받음.



<각 묘지의 공동체무덤 - 자연장지>

수목장

- 횡걸베르크묘지와 라임바크묘지에 연접하여 화장유골을 매장하는 숲(수목장림)을 개설
 - 공동 또는 가족 나무 중에서 선택하여 매장
 - 일반적으로 공동나무는 중후한 오크나무로써 불특정인 여럿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0년이고, 가족나무는 임대할 수 있음.
 - 식물을 가꾸거나 이름을 달지 못하며, (추모용) 양초도 사용할 수 없음.
- 횡걸베르크 수목장림



<횡걸베르크 묘지 수목장림>

- 면적 약 3.3ha, 고도 해발 520m, 2003년에 설치
- 선택한 산림구역은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은 횡걸베르크 묘지와 인접하고 임도로 경계를 짓고 있고, 좁은 산책로를 따라 비교적 올창한 숲으로 이어지며, 대체로 산갈퀴와 너도밤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 토양은 통기성이 좋은 흙이며, 지형은 대부분 평평함.
- 공동 또는 가족 나무에 매장할 수 있는데, 라임바크 수목장림에 비해 평평함.
- 방문자들은 횡걸베르크 묘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도 가능함.

○ 라임바크 수목장림



<라임바크 수목장림>

- 선정된 숲은 임도와 산림 산책로 끝자락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라임바크 묘지와 연접하며, 큰 주차장이 있음.
- 나무가 우거진 2~3개의 작은 숲길을 지나가며, 숲은 종류의 다양성과 주목나

무의 수가 눈에 뛰며, 숲의 경관은 매우 좋으며,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1.2ha의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높이는 해발 510m에 이릅.

- 횡걸베르크와는 달리 주로 평坦하지 않으며 많은 경사를 지니고 있음.
- 공동나무 또는 가족나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공간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수목장에 적합함.
- 방문자는 라임바크 묘지의 주차장을 포함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음.

5. 서양의 자연장지

한국의 자연장 제도

- 우리나라가 자연장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참고한 모델은 영국에서 Garden이라고 불리던 봉안묘의 일종과 독일의 Friedwald라는 수목장림을 혼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 자연장과 외국의 일반적인 자연장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시행착오라고 보면 무리가 없음.

영국(미국)의 화초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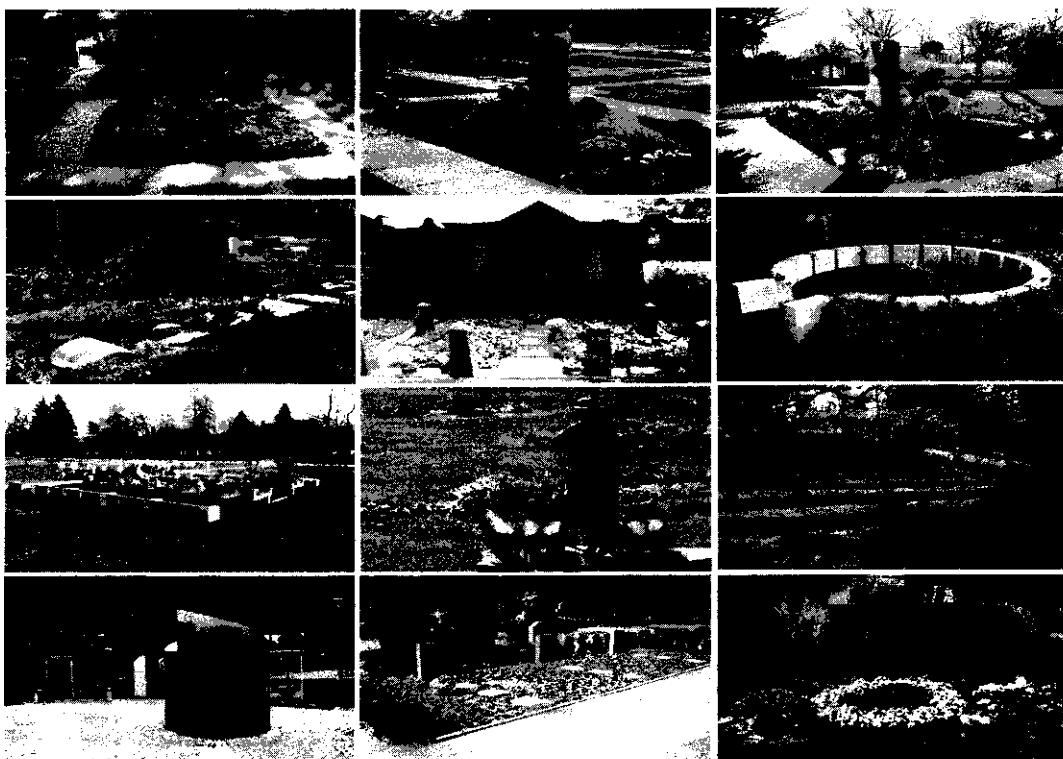
<영국 베이징스톡 화장장 부속묘지 - 다국적기업이 운영>

- 다수는 장미를 심고, 그 주변에 유골을 묻거나 뿌린 다음, 고인을 추모

하는 표지를 달기도 하고, 나무 아래에 두기도 함.

- 이 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하는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
 -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장미 종류가 아닌 다른 초목류를 이용하며, 개별 사용 공간에 대한 명확한 영역구분 없이 사용하는 곳도 적지 않음.
 - 영국, 네덜란드의 일부 다국적기업 또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의 경우, 자연장지 한 구획마다 확실하게 영역을 구분 표시하여 주는 경우 가 많음.
 - 각양각색의 꽃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묘역이지만 우리나라의 토질과 기후가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과 4~5개월이라는 동절기에는 썰렁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관리비용이 부담됨.

□ 독일 및 스위스 자연장지



<독일 여러 묘지의 공동체 봉안묘지>



- 사회보장 차원에서 20년 정도의 제한된 기간에 매장지 또는 봉안시설을 무료로 배정해 주는 제도 확립되어 있음.
- 자연의 산림에 따로 설치된 자연장지는 우리 장사법상 수목장림에 해당되고 거의 대부분 스위스에서 시작된 Friedwald라는 특허를 지난 민간 기업에서 국공유림을 대부받아 설치된 곳이 대부분 차지, 이에 비해 공공묘지 안이나 연접한 숲에 ‘수목형태’의 자연장을 한 곳들은 Baumgrad, Baumbestattung 등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나무 무덤 또는 수목장으로 보아도 좋음.
- 대부분의 묘지 안에 있는 자연장지는 넓은 잔디밭 또는 다년생 풀로 꾸며진 정원 모습이고, 화초 형태의 자연장지는 그리 흔치 않음.
- 독일이 통일된 후, 구동독지지역에 공동체봉안묘역 방식(크지 않은 면적단위로 구획을 지어 20~30명 단위로 안장하고, 고인의 이름 등을 새기는 공동표지를 설치)의 묘지가 점차 늘어남.

□ 스웨덴의 자연장지



* 스웨덴 여러 묘지의 미네스룬드-주위경관과 조형물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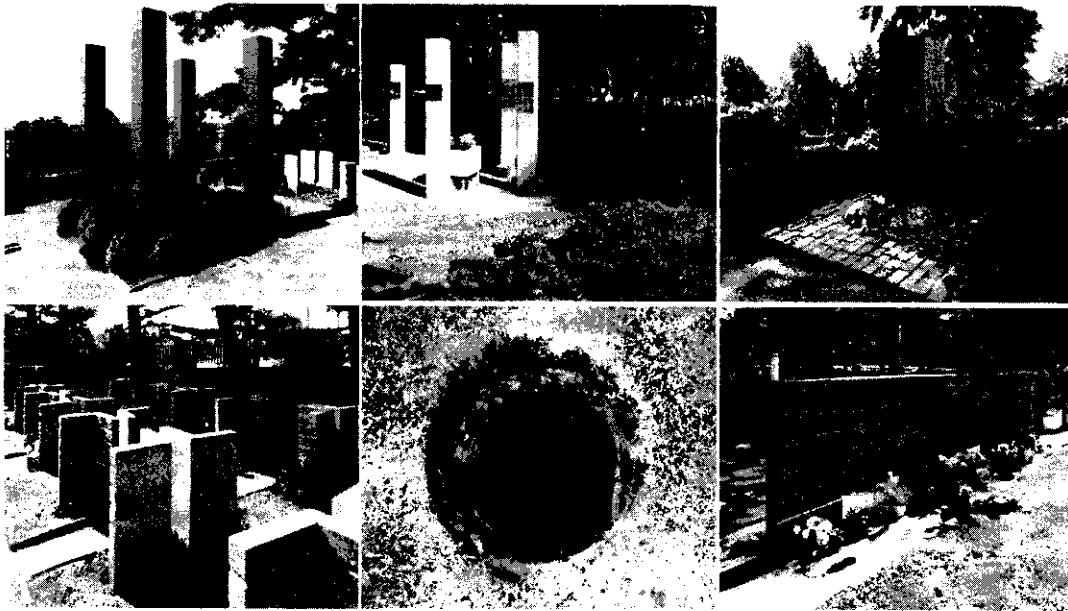
- 스웨덴의 묘지에는 대체로 하나 이상의 미네스룬드(minneslund, 추모의 작은 '터' 또는 '숲') 설치
-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개된 것은 그스키로코고덴(Skogskyrkogården, 영어명 Woodland Cemetery) 묘지의 미네스룬드로써, 이와 같이 작은 숲 형태도 있지만, 대다수는 잔디형태이고, 일부는 화초형태임.
 - 미네스룬드의 특징은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구성한 우수한 조경, 추모 조형물과 수공간, 헌화 및 촛대, 벤치 등과 같은 추모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스웨덴의 미네스룬드는 철저한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점(철저한 공유개념).
 - 스웨덴의 미네스룬드는 집단 매장방식 중의 하나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민간에서 채택은 쉽지 않겠지만 공공부문에서 도입은 보다 용이할 것임.
- 스웨덴의 말뫼 램함 묘지



<스웨덴 말뫼 림함묘지의 미네스룬드>

- 1964년 묘지 안에 고별식장 및 화장장이 건립
- 1967년 미네스룬드가 설치되었음.
- 1997년에 미네스룬드 가까운 곳에 잔디합동봉안묘역(kistlund)이 설치
- 넓은 잔디밭에 유골을 묻거나 뿐린 다음, 추모공간에서만 추모하도록 하고 있음.

핀란드 헬싱키의 히에타니에미묘지(Hietaniemen hautausmaa)



<핀란드 헬싱키 히에타니에미묘지의 잔디형태 자연장지>



* 고인의 이름을 작은 동판에 새겨 돌에 붙여둠

- 묘지의 해안 쪽 산책로를 따라 긴 부지에 다양한 자연장지, 봉안묘 및 산골장소를 조성
- 화초형태의 자연장지로써 꽃, 다년생 풀과 돌을 조합하여 아름다운 꽃밭을 마련하고 유골을 묻거나 뿌리며, 고인의 이름은 작은 동판에 새겨 돌에 붙여 둠.
- 히에타니에미묘지의 자연장지의 모습은 우리 사설(재단법인) 묘지 운영 자들이 관심을 둘 만하지만 손길이 많이 가야하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6. 외국 선진 장사시설 사례의 시사점

일본 광역 화장장의 권역별 설치·운영

<표 4-23> 일본 광역 장사시설 참여 자치단체 현황

(2012.7.1 현재)

	합계		협의회		사무위탁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설치수	참여 단체수	설치수	참여 단체수	설치수	참여 단체수	설치수	참여 단체수	설치수	참여 단체수
화장장	323	863	3	9	88	88	218	704	14	62
묘지	9	25	-	-	-	-	8	23	1	2

* 자료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www.soumu.go.jp/kouiki/kouiki.html) 자료를 편집한 것임.

- 인구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큰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시설과 임투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일본·프랑스·벨기에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몇 개의 자치단체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광역 화장장을 흔히 볼 수 있음.
- 일본 기초자치단체 중 300여개 이상의 市·町·村은 (단독) 화장장이 아닌 광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시·군에 해당하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는 市·町·村으로 총 1,719개소(市 790, 町 746, 村 183, * 2014년 1월 1일 현재)가 있음.
 - 863개 자치단체가 323개소 화장장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으로서 1화장장 당 평균 2.6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부락 단위 화장터 수준에서 시·정·촌 단위의 재래식 화장장으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현대식 광역 화장장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 농촌지역의 광역화장장은 2~3개의 자치단체에 인구 10만 명 내외, 관할 면적 30km^2 내외 정도에서 화장로 5기 내외를 보유한 화장장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
 - 면적이 넓어지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가 이용함에 따른 불편도 따른다고 판단
 - 입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지를 한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찾는 것 보다는 그 범위를 넓힐수록 좀 더 입지가 양호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은 입지를 찾을 수 있음.

최소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

- 일본 사례의 경우 묘지 설치 경향을 살펴보면, 관할 구역 내에 수개소의 (봉안)묘지들을 확보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 지지체들의 사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함.
- 스위스 취리히(Zürich Switzerland) 시에는 2개소의 화장장이 있고, 시립묘지 19개소는 12개 구(Kreis 1 ~ Kreis 12)에 고루 분산되어 있음.

□ 묘지와 연계(연접)한 수목장림 조성

- 독일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 다름슈타트, 스위스 다보스, 오스트리아 일부 도시의 발트프리드호프(Waldfriedhof: ‘산림묘지’라는 뜻), 독일 드레스덴 하이데묘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중앙묘지 등지의 묘지 내에 바움그레베(Baumgräber),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몬쥬의 묘지와 콜세호라 묘지, 스위스 취리히 시립묘지에 연접한 산림에서 운영하는 수목장림의 공통점은 수목장을 시행할 공간을 묘지 내부 숲이나 인접한 임야에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희망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
 - 수용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및 자치단체의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음.

□ 산골에 대한 새로운 접근

- 홍콩의 최근 장사정책은 녹색장묘(Green Burial)라고 하는 산골 장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환경 친화적인 녹색장묘의 핵심시설은 기념화원(Gardens of Remembrance)이라는 산골장소라고 할 수 있고, 품격 높은 산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비록 산골이지만 좋은 환경에다 상당한 격식을 갖춘 장법을 이행한 후에 원하는 사람은 고인의 이름을 불일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줌.
- 우리나라의 화장장에 마련되어 있는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은 대부분 “유택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나같이 유골을 버리는 공간으로 머무르고 있음.
 - 높은 수준의 산골시설을 개발하여 보급이 필요하며, 여기에다 강이나 산에 산골하는 것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장법의 기본이 자연으로의 환원인 만큼 봉안시설 유골항아리 속에서 보존되는 것보다 흙과 물로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착안함.

□ 공유개념의 고품격 자연장지 마련

- 외국의 자연장지들은 모두 강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높은 작품성을 띠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들 자연장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수준 높은 추모조형물과 조경시설이라는 점
- 국내 공설 자연장지를 보면 사람의 墓地라기에는 시설이 너무 조악해 보이며, 게다가 시설을 설치한 후 수목이 채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장공간이 황량함.
 - 공공부분의 가장 취약점인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공설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싼 값에 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기도 함.
- 가족형 자연장지가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임.
 - 자연장지의 특성상 1개 영역은 아주 협소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작은 명패를 설치하는 것 또한 동물무덤을 연상시켜줄 뿐이며, 자연장지의 토지와 시설은 이용자 모두의 공동시설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독일과 스웨덴의 자연장지 모두 이와 같은 공동체 개념)
 - 독일 등에서 익명묘지의 증가, 일본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동 ‘합장식(埋藏)시설’ 수요 증가
 - 외국에서나 한국에서 묘지를 돌볼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제5장 장사문화에 대한 충북도민 의식조사

제1절 도민의식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및 내용

- 충청북도 거주도민들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충청북도 거주 도민 800명, 기초지자체 인구통계 할당
- 조사기간 : 2013년 9.28~10.13
- 통계프로그램 : spss19

<표 5-1> 장사문화관련 시민의식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충청북도 거주 도민
조사방법	면접조사
조사인원	800명
표본추출	리스트 추출
표본오차	95% 신뢰 ±3.64%
조사기간	2013.9.28~10.13
통계프로그램	spss19

○ 장사문화에 대한 도민의식조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희망하는 장사방법 및 장례 문화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음.

<표 5-2> 장사문화관련 도민의식조사의 조사 항목

구분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연령	- 성별	- 학력	- 거주지역
	- 권역	- 거주기간	- 가족 월소득	- 종교
2. 희망하는 장사방법	- 희망하는 장례 장소		- 희망하는 장례 방식	
	- 장례 방식에 대한 논의		- 희망하는 묘지 유형	
	-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3. 장례문화	- 충청북도의 장례형태		-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	
	- 자연장의 인지 여부		-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	
	-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		- 자연장의 조성 주체	
	- 바람직한 자연장 시설형태		- 현재 거주지역에 자연장 설치 생각	
	- 봉안시설의 적정한 안치기간		- 선호하는 봉안시설 형태	
	- 적절한 유골 관리방법		- 종합장사시설을 확충하는 어려운 점	
	- 충청북도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대상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게 남녀, 연령, 학력, 소득에 따라 거주 기초지자체의 2009년 말 인구비율을 적용하였음.

<표 5-3> 도민의식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항목	규모(명)	비율(%)
성	전체	800	100
	남성	388	48.5
	여성	41.2	51.5
연령	20대	145	18.1
	30대	169	21.1
	40대	183	22.9
	50대	163	20.4
	60대	75	9.4
	70대	48	6.0
	80대	14	1.8
	90대 이상	3	0.4
교육수준	초졸	39	4.9
	중졸	40	5
	고졸	258	32.3
	대졸	379	47.4
	대학원졸	35	4.4
	결측값(무응답)	49	6.1
거주기간	5년 미만	106	13.3
	5년 이상 - 10년 미만	76	9.5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4	50.5
	20년 이상 - 30년 미만	70	8.8
	30년 이상	22	2.8
	결측값(무응답)	122	15.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2.4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82	10.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3	12.9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37	17.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	12.5
	500만원 이상	176	22
	결측값(무응답)	183	22.9

구분	항목	규모(명)	비율(%)	
종교	불교	182	22.8	
	개신교(기독교)	157	19.6	
	천주교	85	10.6	
	기타	11	1.4	
	없음	360	45	
	결측값(무응답)	5	0.6	
기초단체	1권역	청주	337	42.1
		청원	81	10.1
		증평	17	2.1
	2권역	충주	106	13.3
		괴산	20	2.5
	3권역	제천	70	8.8
		단양	16	2
	4권역	진천	33	4.1
		음성	49	6.1
	5권역	보은	18	2.3
		옥천	27	3.4
		영동	26	3.3

- 조사응답자의 남녀비율은 여성 41.2%, 남성 51.5%임.
- 연령대는 20대가 18.1%, 30대에서 50대까지 각 연령대별 약 20%이며, 60대 이상은 17.6%를 차지.
-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51.8%, 대졸미만이 42.2%임.
- 거주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전체의 5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 가구소득은 월 500만원 이상이 22%로 가장 많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7.1%로 그 다음으로 높음.
- 종교는 무종교가 전체의 45%, 불교가 22.8%, 그 다음 개신교 19.6%, 천주교 10.6%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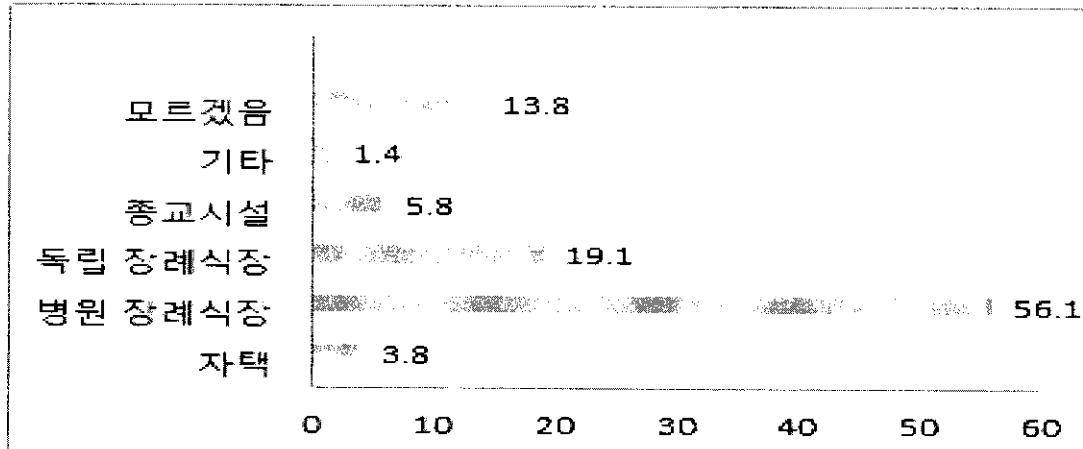
제2절 도민 의식조사 결과

1. 희망하는 장사방법

○ 희망하는 장례장소

<그림 5-1> 희망 장례장소

(규모 79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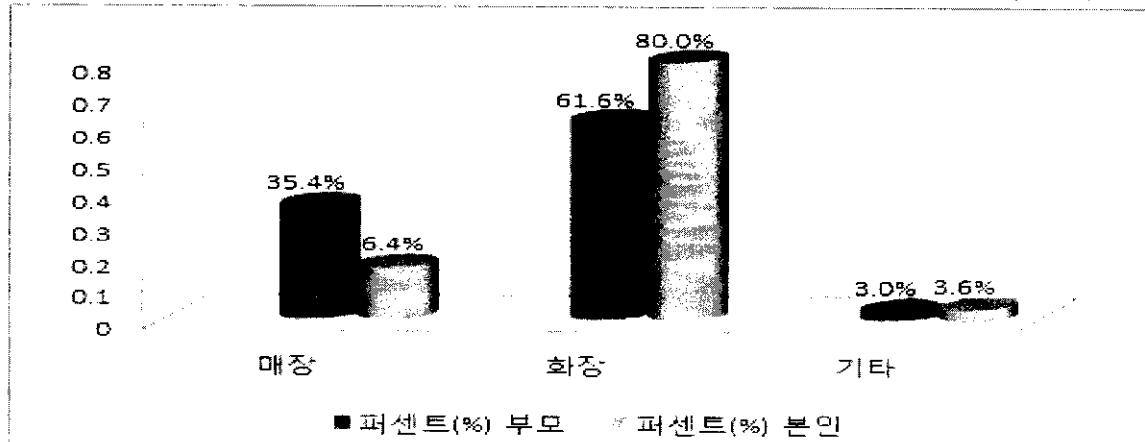


- 희망하는 장례장소를 살펴보면, 병원장례식장 56.1%, 독립장례식장 19.1%의 순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장사방법

<그림 5-2> 부모님 및 본인 장사방법

(부모, 본인 각각 규모 800명, 단위 %)



- 희망하는 장사방법을 살펴보면, 부모님(또는 다른 연로한 가족)이 돌아가셨을 경우 매장이 35.4%, 화장이 61.6%로 나타나나, 본인 사망 후에는 매장 16.4%, 화장이 80%로 화장 선호도가 높음.
- 부모 세대보다 자식세대에서 화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장률의 상승이 예견됨.

<표 5-4> 희망하는 장사방식 교차

(규모 800명, 단위 %)

구분	항목	부모님			본인		
		매장 (%)	화장 (%)	기타 (%)	매장 (%)	화장 (%)	기타 (%)
	전체	35.4	61.6	3	16.4	80	3.6
성	남성	20.1	28.4	1.1	10.7	37.6	1.7
	여성	15.3	33.2	1.9	5.7	42.4	1.9
연령	20대	25.7	69.2	5	15.9	79.7	4.3
	30대	44.5	53.8	1.7	13.5	83.7	2.8
	40대	38.4	59.2	2.3	12.1	85.9	1.9
	50대	30.7	67.4	2	15.2	82.4	2.4
	60대	35.5	61.7	2.8	26.4	67.2	6.4
	70대	32.1	64.2	3.8	25.9	72.2	1.9
	80대	42.9	35.7	21.4	20	46.7	33.3
	90대 이상	60	40		33.3	66.7	
교육수준	초졸	39.6	56.2	4.2	19.2	75	5.8
	중졸	18.6	81.3		18	77	4.9
	고졸	32.5	64.3	3.3	15.2	82.4	2.3
	대졸	38.8	59.5	1.7	15.3	82	2.7
	대학원졸	34.2	57.9	7.9	16.7	75	8.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80.9		17.4	78.3	4.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8.6	68.1	3.3	15.6	82.3	2.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6.3	69.5	4.2	15.6	82.8	1.6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9.7	58.3	2	15.5	77.6	6.8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9.5	57.2	3.2	18.4	78	3.5
	500만원 이상	42.2	54.5	3.3	20.1	77.4	2.5
종교	불교	41.6	57.1	1.3	21.1	74.5	4.5
	개신교(기독교)	32.1	66.3	1.6	14.4	81.2	4.3
	천주교	39.4	57.5	3.2	16.7	82.2	1.1
	기타	7.1	92.9		7.1	71.4	
	없음	33.5	62.6	3.9	15.2	76	2.8
기초단체	청주	37.9	59	3.1	17.1	80.6	2.4
		52.7	45.2	2.2	20	74.7	5.3
		64.7	35.3		33.3	66.6	
	충주	24.2	71.7	4.2	13.4	83.2	3.4
		56	44		39.1	56.5	4.3
	제천	14.1	82	3.8	11	87.8	1.2
		38.5	61.5		6.7	93.3	
	단양	24.3	75.7		10	87.5	2.5
		31	63.8	5.2	13.6	78	8.5
	보은	36.8	63.2		20.8	75	4.2
		32.1	64.3	3.6	16.1	71	12.9
		37.5	59.3	3.1	12.9	80.7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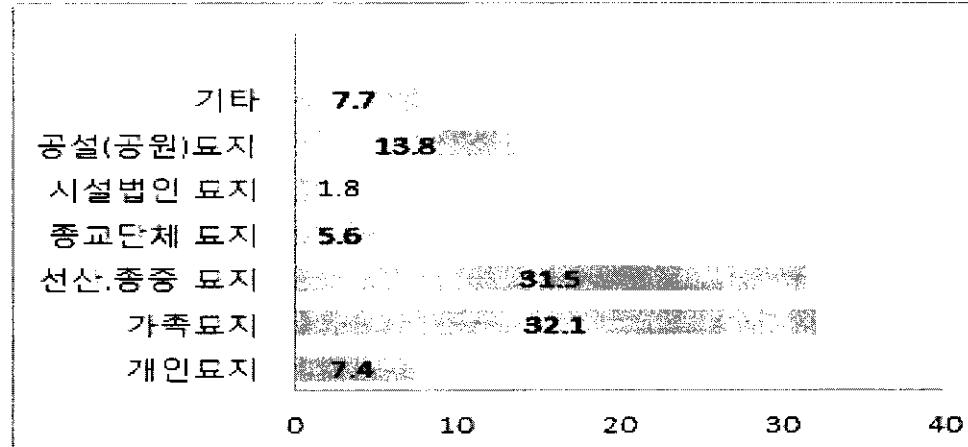
구분	항목	부모님			본인		
		매장 (%)	화장 (%)	기타 (%)	매장 (%)	화장 (%)	기타 (%)
권역별	1권역(청주, 청원, 증평)	41.6	55.6	2.8	18.1	79	2.9
	2권역(충주, 괴산)	29.7	66.9	3.4	17.6	78.9	3.5
	3권역(제천, 단양)	17.6	79.1	3.3	10.3	88.6	1
	4권역(진천, 음성)	28.4	68.4	3.2	12.1	81.9	6.1
	5권역(보은, 옥천, 영동)	35.4	62	2.5	16.3	75.6	8.1

- 본인의 사망 후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은 남성 37.6% 보다 여성이 42.4%로 근소하게 높음.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화장하겠다는 비율은 남성 28.4%, 여성 33.2%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본인이 40대까지는 70% 이상이 화장을 선호하나 60대 이상 부터는 다소 선호도가 떨어짐.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화장 선호도가 고졸이 82.4%로 가장 높고, 대졸이 82%, 대학원졸이 75%를 나타냄.
- 가구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화장 선호도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이 8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종교별로 살펴보면, 천주교 신자 82.2%가 화장을 가장 많이 선호함.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단양이 93.3%, 제천 87.8%, 충주 83.2%, 청주 80.6%로 화장을 선호하나(기존 화장통계 수치의 순위와 유사), 진천 87.5%, 영동 80.7%도 기존 화장을과는 다르게 상당히 화장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음.
- 화장시설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을 인근 시군과 둑어서 권역별로 구분하여 화장선호도를 살펴보면, 제3권역인 제천, 단양권이 88.6%의 가장 높은 화장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현재의 화장을 순위와도 일치함.
- 제4권역인 보은, 옥천, 영동권이 75.6%의 선호도로 타권역에 비해 가장 낮아서 화장률이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희망하는 묘지유형

<그림 5-3> 희망하는 묘지 유형

(규모 39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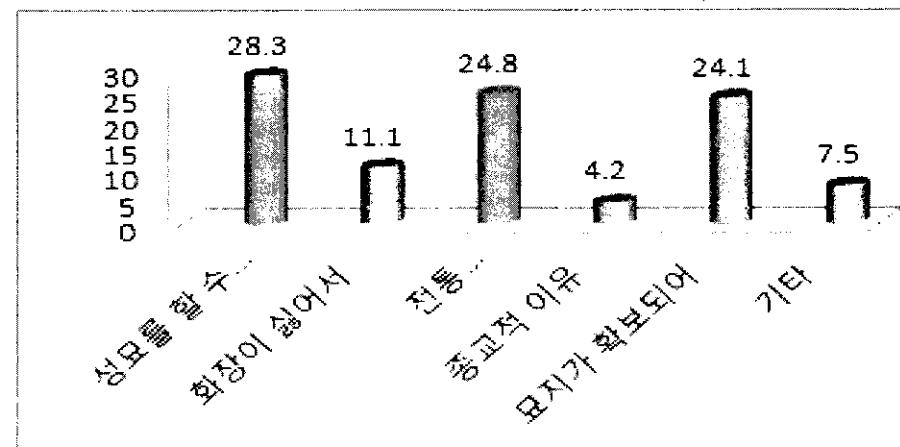


- 매장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묘지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묘지와 선산, 종종묘지가 각각 32.1%, 31.5%이며 공설(공원)묘지는 13.8%로 나타남.

○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그림 5-4>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규모 307명, 단위 %)



-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는 대개 가족묘지와 선산, 종종묘지가 있기 때문에 성묘할 수 있거나 묘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일 경우가 많음.

<표 5-5>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 교차

(규모 307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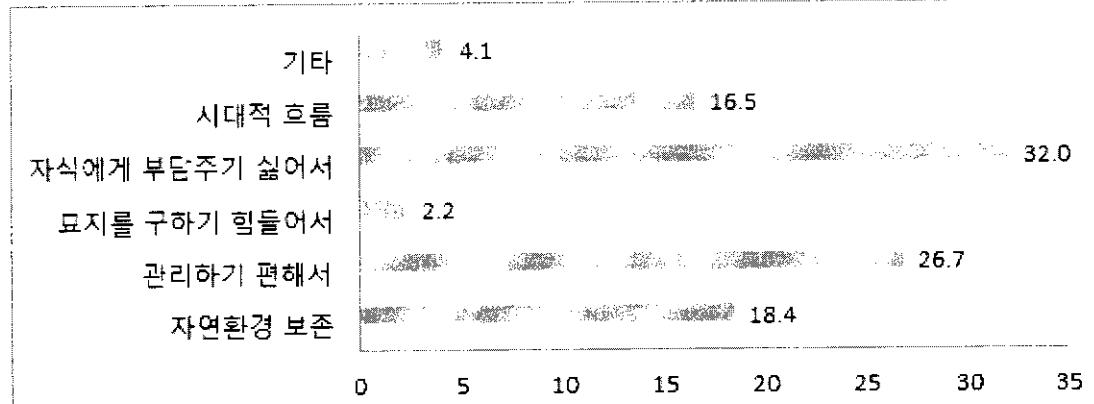
구분	항목	이유(%)					
		성묘를 할 수 있어서	화장이 실어서	전통문화	종교적	묘지가 있어서	기타
성 (307)	남성	23.7	11.2	33.1	3.6	24.9	3.6
	여성	34.1	10.9	14.5	5.1	23.2	12.3
연령 (307)	20대	40	7.5	32.5	2.5	12.5	5
	30대	37.1	3.2	38.7	1.6	14.5	4.8
	40대	34.9	7.9	20.6	3.2	25.4	7.9
	50대	14.1	15.5	19.7	4.2	39.4	7
	60대	23.9	15.2	21.7	10.9	17.4	10.9
	70대	21.1	21.1	10.5	5.3	36.8	5.3
	80대	25	25	0	0	0	50
	90대 이상	0	50	0	0	50	0
	초졸	33.3	9.5	9.5	4.8	38.1	4.8
교육 수준 (290)	중졸	36	8	12	8	16	20
	고졸	33.7	14.3	17.3	1	26.5	7.1
	대졸	25.4	6	35.1	6.7	21.6	5.2
	대학원졸	8.3	16.7	41.7	0	33.3	0
	100만원 미만	62.5	0	0	0	25	12.5
가구 소득 (24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	16	36	8	8	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3.3	15.4	15.4	2.6	30.8	2.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6.3	5.3	29.8	0	28.1	10.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3.3	9.5	14.3	2.4	28.6	11.9
	500만원 이상	30	5.7	21.4	7.1	24.3	11.4
종교 (305)	불교	25.3	11.5	34.5	0	25.3	3.4
	개신교(기독교)	26.3	14	15.8	10.5	24.6	8.8
	천주교	25.9	7.4	22.2	18.5	18.5	7.4
	기타	25	0	0	25	0	50
	없음	32.3	10.8	24.9	4.3	24.3	7.2

-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로, 남성은 성묘를 할 수 있어서 23.7%, 묘지가 있어서 24.9%, 전통문화 때문에가 33.1%이고, 여성은 성묘를 할 수 있어서 34.1%, 묘지가 있어서 23.2%이나, 전통문화 때문에는 14.5%로 나타남.
- 여성보다 남성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준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는 대졸과 대학원 졸업자가 전통문화 때문이라는 이유에 35.1%와 41.7%로 다른 학력그룹보다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고학력자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됨.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그림 5-5>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규모 587명, 단위 %)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인 이유가 32%, 관리하기가 편해서가 26.7%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환경보전이나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 5-6>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교차

(규모 587명, 단위 %)

구분	항목	이유(%)					
		환경 보존	관리 편리	묘지 구하기 어려워	부담 주기 싫어서	시대적 흐름	기타
성 (587)	남성	15.8	25.7	3.3	32	19.9	3.3
	여성	20.6	27.6	1.3	32.1	13.7	4.8
연령 (587)	20대	16.3	43.3	1.9	20.2	14.4	3.8
	30대	18.9	35.1	2.7	25.2	16.2	1.8
	40대	19.6	23.2	1.4	35.5	15.2	5.1
	50대	15.2	16.7	3	40.9	21.2	3
	60대	27.1	11.9	3.4	33.9	18.6	5.1
	70대	14.7	29.4	0	38.2	8.8	8.8
	80대	14.3	14.3	0	42.9	14.3	14.3
	90대 이상	50	50	0	0	0	0
	초졸	7.7	26.9	0	30.8	23.1	11.5
교육 수준 (554)	중졸	16.7	16.7	0	53.3	13.3	0
	고졸	17.6	26.8	2.9	32.7	16.1	3.9
	대졸	19.9	27.3	2.6	28.8	17.7	3.7
	대학원졸	18.2	40.9	0	31.8	9.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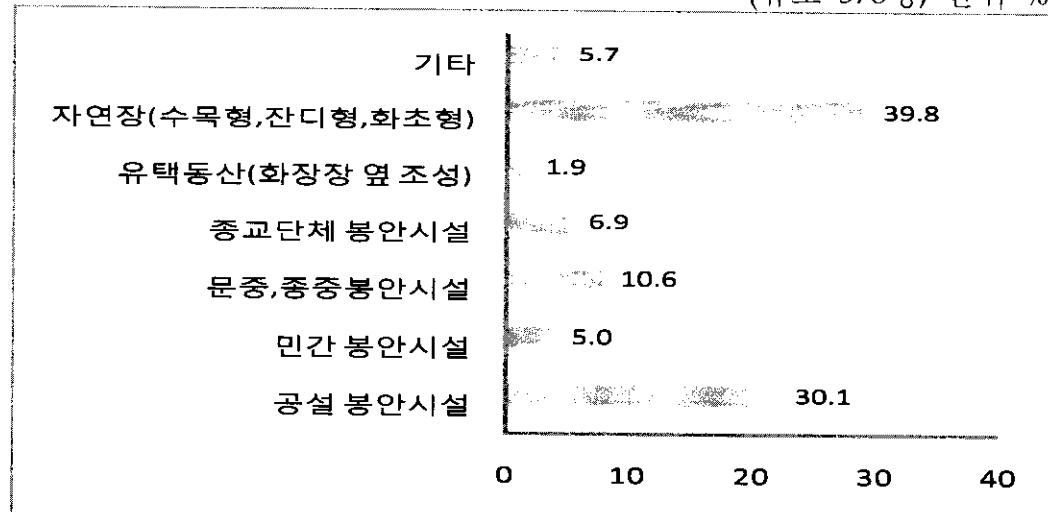
구분	항목	이유(%)					
		환경 보존	관리 편리	묘지 구하기 어려워	부담 주기 싫어서	시대적 흐름	기타
가구 소득 (449)	100만원 미만	21.4	35.7	0	28.6	14.3	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	26.7	1.7	35	13.3	3.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3.2	22.4	5.3	39.5	17.1	2.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1.9	25	2.1	34.4	14.6	2.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8.1	29	2.3	26.7	18.3	6.9
	500만원 이상	18.3	27.2	2.2	32.5	15.6	5.3
종교 (583)	불교	16.8	24.4	3.8	33.6	18.3	3.1
	개신교(기독교)	22.2	29.9	0.9	30.8	11.1	5.1
	천주교	19.4	25.4	0	29.9	19.4	6
	기타	25	12.5	0	37.5	25	0
	없음	16.9	27.3	2.7	32.3	17.3	3.5

-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로 남녀가 비슷한 비중으로 '관리하기 편해서'와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음.
- 연령별로는 세대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데 20대와 30대가 43.3%와 35.1%로 관리하기 편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든 반면, 40대부터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 비해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에 가장 많은 이유가 있음을 나타냄.
- 학력별, 가구소득별, 종교별로 살펴보면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화장 후 유골 안장 방법

<그림 5-6> 화장 후 유골 안장 방법

(규모 578명, 단위 %)



- 화장 후 안장 방법은 공설 봉안시설이 30.1%, 자연장(수목형, 잔디형, 화초형)이 39.8%로 나타남.

<표 5-7> 화장 후 유골 안장 방법

(규모 578명, 단위 %)

구분	항목	처리 방법(%)						
		공설 봉안	민간 봉안	문중 봉안	종교 봉안	유택 동산	자연장	기타
성 (578)	남성	30.7	7.9	15.4	4.5	3.7	31.8	6
	여성	29.6	2.6	6.4	9	0.3	46.6	5.5
연령 (578)	20대	44	7	5	6	2	33	3
	30대	36.6	7.1	8.9	7.1	1.8	34.8	3.6
	40대	32.1	3.6	8.6	5.7	1.4	42.1	6.4
	50대	25.6	4.8	14.4	5.6	2.4	43.2	4
	60대	16.9	3.4	15.3	11.9	1.7	44.1	6.8
	70대	6.1	0	18.2	12.1	3	42.4	18.2
	80대	0	0	0	0	0	71.4	28.6
	90대 이상	0	50	50	0	0	0	0
교육 수준 (545)	초졸	26.9	0	19.2	3.8	0	30.8	19.2
	중졸	12.5	9.4	18.8	0	3.1	50	6.2
	고졸	33.3	5.1	10.3	6.7	1.5	39.5	3.6
	대학졸	33.8	4.1	9.8	7.1	1.9	39.1	4.1
	대학원졸	19.2	7.7	0	11.5	3.8	53.8	3.8
가구 소득 (446)	100만원 미만	6.2	0	31.2	12.5	0	50	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1.1	3.6	8.9	8.9	3.6	28.6	5.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5.7	6.8	8.1	5.4	2.7	44.6	6.8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3.2	10.1	13.1	5.1	4	38.4	6.1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6.6	1.4	7	9.9	0	36.6	8.5
	500만원 이상	31.5	3.8	6.9	6.9	0.8	46.2	3.8
종교 (574)	불교	21.5	3.8	16.2	6.9	0.8	46.9	3.8
	개신교(기독교)	31.6	5.1	6	10.3	2.6	38.5	6
	천주교	24.2	4.5	4.5	16.7	1.5	37.9	10.6
	기타	0	0	10	20	0	70	0
	없음	36.7	5.6	11.2	2.4	2.4	36.7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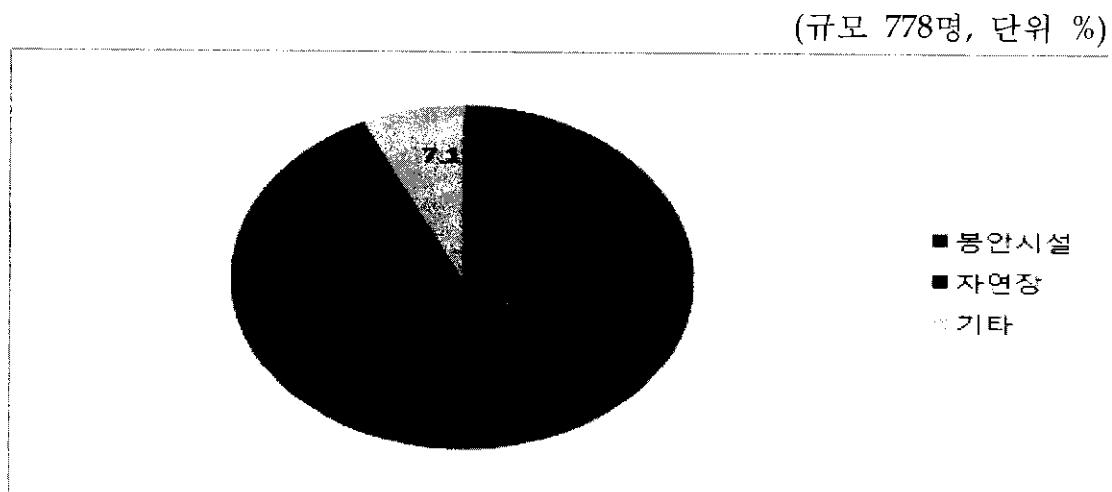
- 화장 후 안장 방법은 전체적으로 자연장 선호도가 가장 높은데, 남성이 31.8%, 여성이 46.6%로 나타남.
- 젊은 층에 비해 4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 비교적 자연장 선호도는 높게 나타남.

- 대학원 졸 이상 학력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53.8%의 자연장 선호도를 나타냄.
- 소득수준별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계계층과 상대적으로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계계층 응답자가 각각 50%와 46.2%로 타계층보다 비교적 자연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종교적인 신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불교 신자가 46.9%로 타종교 신자보다 자연장 선호도가 근소하게 높음.

2. 장례 문화

○ 충청북도 장례형태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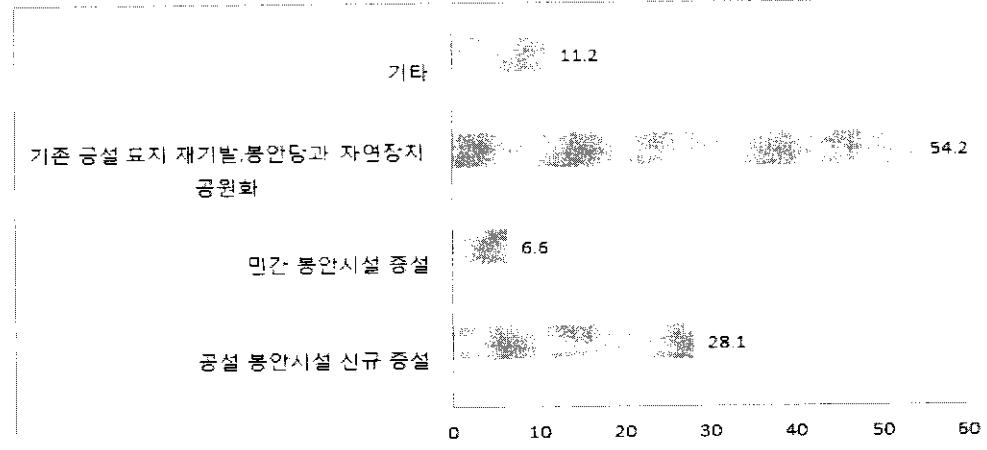
<그림 5-7> 충북도의 장례 형태의 발전 방향



-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 자연장 선호도와 실제 이용실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도민의 자연장 선호도가 전체 응답자에 57.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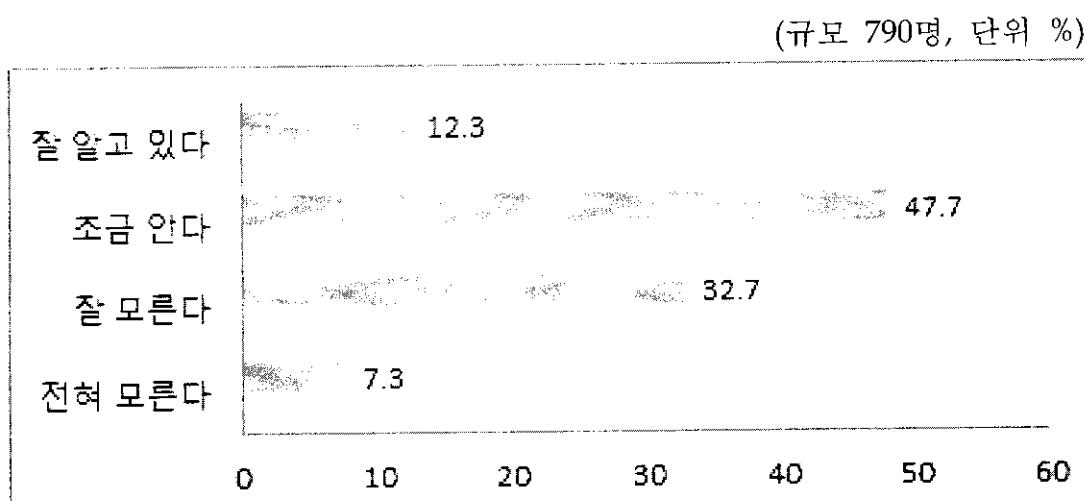
<그림 5-8> 장사시설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책 방향
(규모 762명, 단위 %)



-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질문에 기존 공설묘지재개발, 봉안당과 자연장지 공원화가 54.2% 찬성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 만장이 되어가는 기존 공설묘지에 대한 재개발이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연장에 대한 인지

<그림 5-9> 자연장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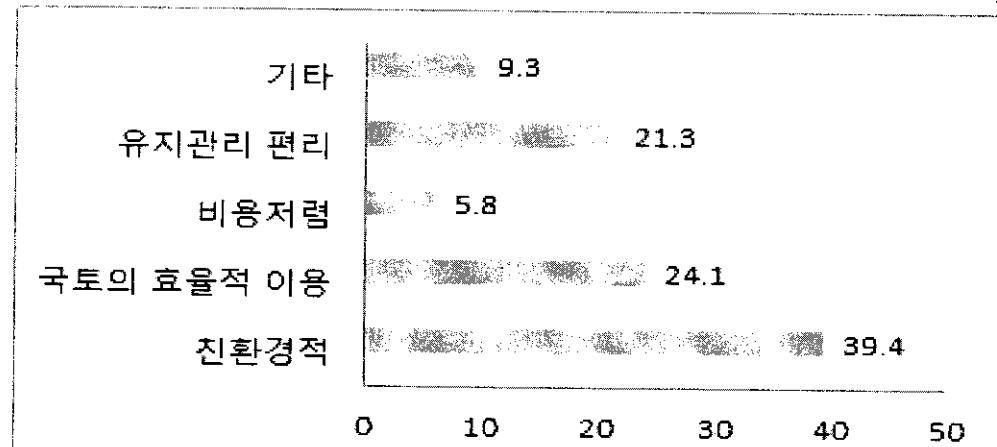


- 자연장에 대한 인지정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른다가 32.7%, 조금 안다가 47.7%로 앞서의 선호도에 비해 아직은 흥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

<그림 5-10>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

(규모 718명, 단위 %)



- 자연장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친환경적이어서가 39.4%,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24.1%, 유지관리가 편리해서가 21.3%로 나타남.
- 자연장 선호 이유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환경과 국토효율적 이용이 보다 많은 이유인 것으로 해석됨.

○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

<표 5-8>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

(규모 731명, 단위 %)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선호하는 자연장 형태	77	11.2	11.8

-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는 수목장이 77%로 압도적이나 현재 수목장의 확산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선호도에 비해 실제 수목장 이용자 수는 적음.

○ 자연장 활성화의 조성 주체

<표 5-9> 자연장 활성화의 조성 주체

(규모 744명, 단위 %)

	공공부문	종교단체	장사법인	민관공동
자연장 활성화의 조성주체	73.5	3.5	4.2	18.8

-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조성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에 73.5%로 답함.

○ 자연장의 바람직한 형태

<표 5-10> 자연장의 바람직한 형태

(규모 759명, 단위 %)

	시·군소유림 중 접근성이 좋은 숲	시·군내 집단묘지 (공동묘지) 재정비, 자연장지로 전환	기존의 묘지공원에 추가로 조성	기타
자연장의 바람직한 형태	56.9	23.1	12.5	7.5

- 자연장 시설이 설치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 시·군 소유산림 중 접근성이 좋은 숲에 56.9%가 찬성함.

○ 자연장 신설에 대한 의견

<표 5-11>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자연장 신설에 대한 의견

(규모 785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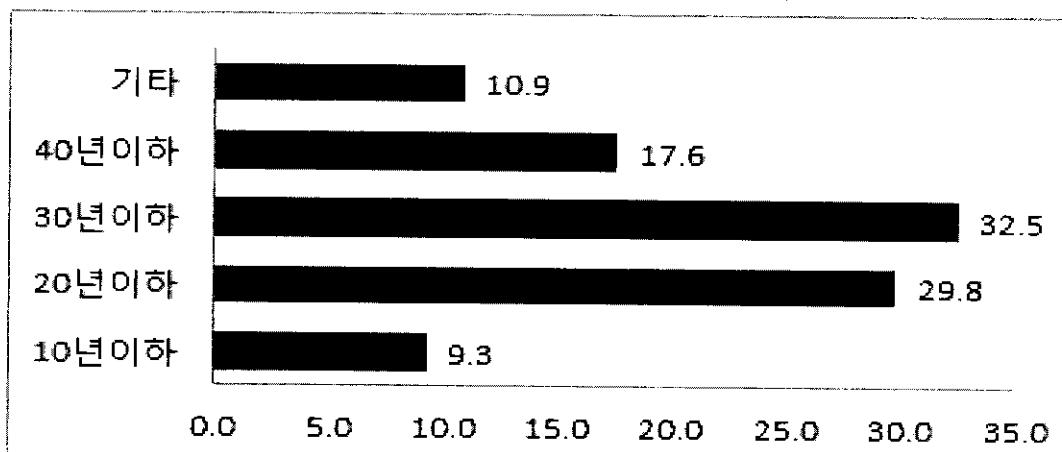
	매우 반대	반대	찬성	적극 찬성	모르겠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자연장 신설에 대한 의견	2.9	12.1	41.5	11	31.9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자연장 신설 질문에 찬성이 41.5%로 가장 높음.

○ 봉안시설의 적정 안치기간

<그림 5-11> 충북도내 봉안시설의 적정 안치기간

(규모 785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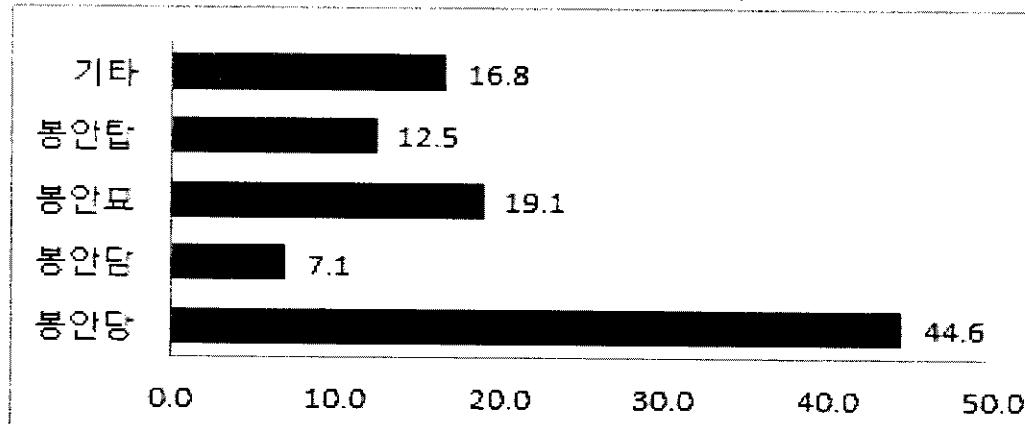


- 충북도내 봉안시설의 적장한 안치기간을 묻는 질문에 30년 이하가 32.5%로 가장 높고, 20년 이하가 29.8%로 그 다음 순을 차지.
- 대개 봉안시설의 적정기간에 대해 자식이 돌볼 수 있는 적정기간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 선호하는 봉안시설

<그림 5-12> 선호하는 봉안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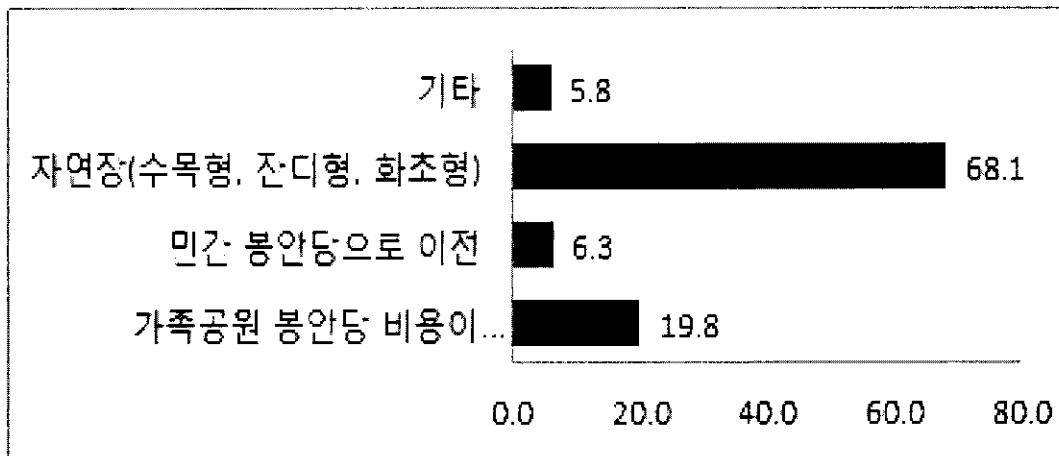
(규모 734명, 단위 %)



- 선호하는 봉안시설은 봉안당이 44.6%로 압도적으로 높음.
- 봉안당 안치기간 15년 이후 유골 처리

<그림 5-13> 봉안당 안치기간 15년 이후 유골 처리에 대해

(규모 758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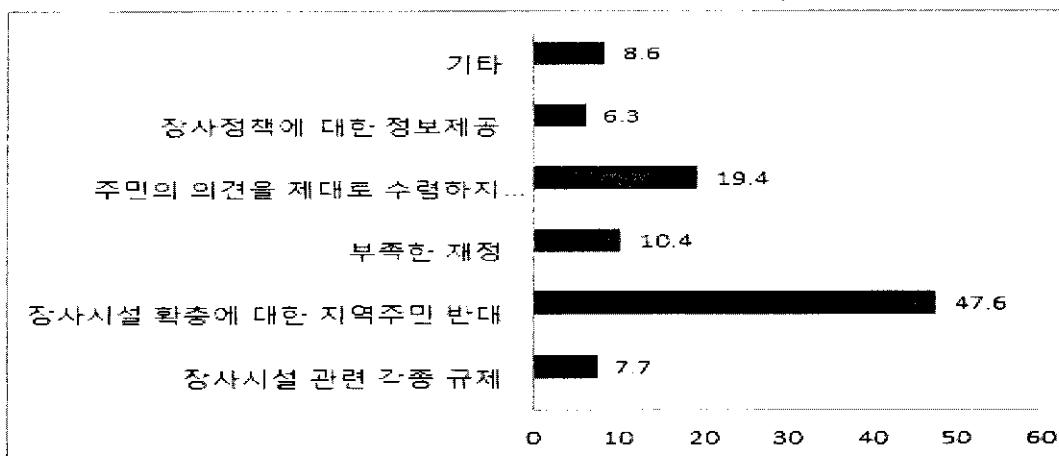


- 봉안당 안치가 끝난 후 유골처리에 대해 자연장이 68.1%로 압도적인 선호

- 종합장사시설 확충에 어려운 점

<그림 5-14> 종합장사시설 확충에 어려운 점

(규모 758명, 단위 %)



<표 5-12> 종합장사시설 확충에 어려운 점*교차

(규모 8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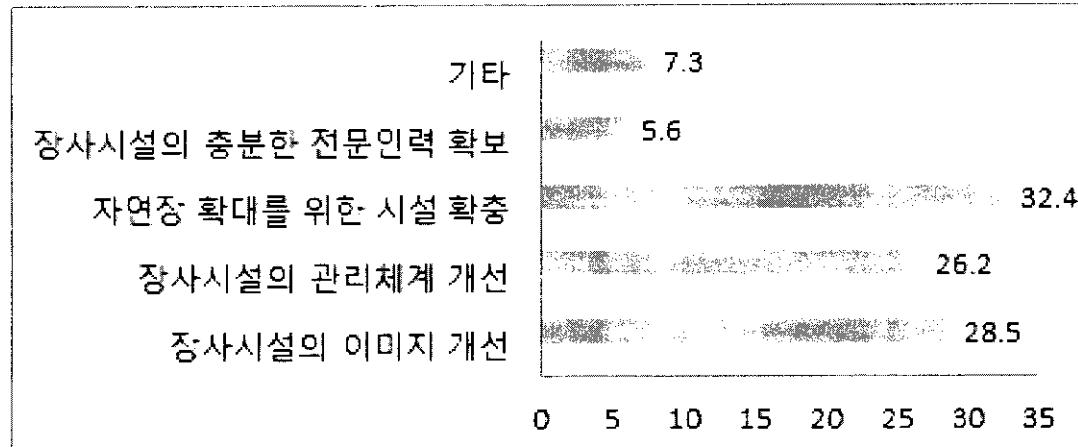
구분	항목	어려운 이유(%)					
		각종 규제	주민 반대	재정 부족	의견 미반영	정보 제공	기타
성 (758)	남성	7.4	49.3	11.2	19.9	6.5	5.7
	여성	7.9	46	9.7	18.9	6.1	11.3
연령 (758)	20대	6.5	47.1	13	20.3	8.7	4.3
	30대	6.7	55.2	9.7	20.6	3.6	4.2
	40대	10.1	52.5	7.3	18.4	7.8	3.9
	50대	8.1	50.3	11.4	18.8	5.4	6
	60대	8.8	30.9	16.2	26.5	2.9	14.7
	70대	4.7	25.6	9.3	11.6	7	41.9
	80대	0	30.8	0		15.4	53.8
	90대 이상	0	0	0	33.3	33.3	33.3
교육 수준 (711)	초졸	12.1	18.2	9.1	12.1	6.1	42.4
	중졸	5.9	35.3	23.5	26.5	0	8.8
	고졸	8.1	41.3	13	22.7	8.9	6.1
	대졸	7.2	58.4	8.3	17.6	5.8	2.8
	대학원졸	11.8	52.9	11.8	20.6	2.9	0
가구 소득 (586)	100만원 미만	5.6	50	5.6	22.2	5.6	11.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2.8	42.3	20.5	15.4	5.1	3.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7.3	44.8	12.5	15.6	8.3	11.5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1	43.9	10.6	23.5	4.5	11.4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9.2	46.9	6.1	17.3	5.1	15.3
	500만원 이상	6.7	55.5	9.1	16.5	6.1	6.1
종교 (753)	불교	8.8	44.1	10.6	21.8	4.7	10
	개신교(기독교)	8.2	48.3	10.9	20.4	5.4	6.8
	천주교	10.8	49.4	8.4	13.3	6	12
	기타	0	50	0	30	10	10
	없음	6.4	48.7	11.1	19.2	7.3	7.3
기초 단체 (758)	청주	7.1	55.6	9.3	15.4	7.1	5.6
	청원	9.6	47.9	11	21.9	5.5	4.1
	증평	0	47.1	11.8	23.5	11.8	5.9
	충주	7.9	33.7	13.9	20.8	9.9	13.9
	괴산	0	55	5	30	5	5
	제천	11.1	44.4	11.1	15.9	7.9	9.5
	단양	13.3	73.3	0	0	6.7	6.7
	진천	6.1	30.3	6.1	24.2	0	33.3
	음성	6.7	42.2	11.1	40	0	0
	보은	12.5	56.2	6.2	12.5	0	12.5
권역 별 (758)	옥천	11.5	26.9	7.7	26.9	3.8	23.1
	영동	4	36	28	20	4	8
	1권역(청주, 청원, 증평)	7.2	53.9	9.7	16.9	7	5.3
	2권역(충주, 괴산)	6.6	37.2	12.4	22.3	9.1	12.4
	3권역(제천, 단양)	11.5	50	9	12.8	7.7	9
4권역(진천, 음성)	6.4	37.2	9	33.3	0	14.1	
	5권역(보은, 옥천, 영동)	9	37.3	14.9	20.9	3	14.9

- 종합 장사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으로는 지역주민 반대가 47.6%, 그 다음 주민의견 미반영이 19.4%로 나타남.
- 도민들도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 충청북도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그림 5-15> 충청북도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규모 766명, 단위 %)



<표 5-13> 충청북도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구분	항목	바람직한 방향				
		이미지 개선	관리 체계	시설 확충	인력 확보	기타
성 (766)	남성	28.5	25.5	35.5	4.8	5.6
	여성	28.4	26.9	29.4	6.3	8.9
연령 (766)	20대	41	38.1	12.2	6.5	2.2
	30대	26.7	27.9	32.7	9.7	3
	40대	32.8	21.1	41.1	2.2	2.8
	50대	24.8	26.8	39.2	5.9	3.3
	60대	18.3	16.9	42.3	5.6	16.9
	70대	15.9	15.9	22.7	2.3	43.2
	80대	0	33.3	16.7	0	50
	90대 이상	0	0	50	0	50

구분	항목	바람직한 방향				
		이미지 개선	관리 체계	시설 확충	인력 확보	기타
교육 수준 (720)	초졸	11.8	26.5	11.8	11.8	38.2
	중졸	21.2	12.1	51.5	9.1	6.1
	고졸	28.7	27.9	33.5	4.8	5.2
	대졸	32.9	25.3	34.5	5.7	1.6
	대학원졸	20.6	38.2	35.3	5.9	0
가구 소득 (589)	100만원 미만	16.7	22.2	50	5.6	5.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7.5	26.2	27.5	5	3.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4.5	22.4	38.8	5.1	9.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5.4	26.9	34.3	5.2	8.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3.4	20.2	35.1	6.4	14.9
	500만원 이상	30.3	30.9	27.9	4.8	6.1
종교 (762)	불교	23.4	28.1	32.7	7	8.8
	개신교(기독교)	26.7	24.7	36.7	4.7	7.3
	천주교	32.5	19.3	34.9	4.8	8.4
	기타	10	20	6-	0	10
	없음	31.6	27.6	29.3	5.7	5.7
기초 단체 (766)	청주	29.1	28.2	31.6	5.8	5.2
	청원	38.4	20.5	31.5	2.7	6.8
	증평	29.4	41.2	17.6	5.9	5.9
	충주	26.5	24.5	33.3	5.9	5.9
	괴산	10.5	47.4	36.8	0	5.3
	제천	31.3	19.4	34.3	7.5	7.5
	단양	26.7	6.7	60	0	6.7
	진천	27.3	30.3	15.2	6.1	21.2
	음성	23.9	30.4	15.2	6.1	21.2
	보은	18.8	6.2	56.2	6.2	12.5
	옥천	26.9	19.2	30.8	3.8	19.2
	영동	23.1	34.6	30.8	7.7	3.8
권역별 (766)	1권역(청주, 청원, 증평)	30.8	27.4	31	5.3	5.5
	2권역(충주, 괴산)	24	28.1	33.9	5	9.1
	3권역(제천, 단양)	30.5	17.1	39	6.1	7.3
	4권역(진천, 음성)	25.3	30.4	26.6	7.6	10.1
	5권역(보은, 옥천, 영동)	23.5	22.1	36.8	5.9	11.8

- 충청북도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장사시설의 이미지 개선에 28.5%, 장사시설의 관리체계 개선에 26.2%, 자연장 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에 32.4%로 응답함.
- 도민은 장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지자체 관리체계 개선, 자연장 확대가 고르게 발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제6장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요 및 공급량 추계

○ 제6장의 주요 내용

- 충청북도 장래 인구 및 사망자 추계(통계청, 시계열분석)
- 시군별 장래 인구 및 사망자 추계
- 1~5권역별 사망자 추계
- 화장을 추계분석 및 권역별 화장시설 수용가능성 분석
- 장사시설 시설용량 및 수용 가능성 분석

제1절 장사시설 수요추계

1. 충청북도 장래 인구 및 사망자 추계

○ 인구 추계 방법

- 장래인구 :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기준으로 함
- 사망률 : 통계청에서 분석한 충청북도 장래 사망률 추계와 과거 8년간 사망자 추이를 시계열로 예측한 사망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예측 값을 선택

○ 충청북도 인구 및 사망자 추이

<표 6-1> 충청북도 인구 및 사망자 추이(2005-2012년)

연도	인구(명)	사망자(명)	사망률(%)
2005	1,488,803	9,661	0.65%
2006	1,484,559	9,508	0.64%
2007	1,506,608	9,638	0.64%
2008	1,519,587	9,717	0.64%
2009	1,527,478	9,985	0.65%
2010	1,549,528	9,825	0.63%
2011	1,562,903	10,176	0.65%
2012	1,565,628	10,478	0.67%

1) 통계청 인구추계

○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표 6-2> 충청북도 연령별 장래 인구추계

(단위: 명, %)

연도	총계	0~19세		20~64세		65세 이상	
2013	1,561,471	338,784	21.7%	995,032	63.7%	227,655	14.6%
2014	1,571,742	331,699	21.1%	1,005,366	64.0%	234,677	14.9%
2015	1,581,687	324,883	20.5%	1,015,668	64.2%	241,136	15.2%
2016	1,591,372	318,168	20.0%	1,024,863	64.4%	248,341	15.6%
2017	1,600,819	312,025	19.5%	1,030,927	64.4%	257,867	16.1%
2018	1,609,994	306,697	19.0%	1,035,437	64.3%	267,860	16.6%
2019	1,618,839	301,922	18.7%	1,038,005	64.1%	278,912	17.2%
2020	1,627,416	297,701	18.3%	1,038,436	63.8%	291,279	17.9%
2021	1,635,763	293,994	18.0%	1,036,762	63.4%	305,007	18.6%
2022	1,643,827	292,759	17.8%	1,030,766	62.7%	320,302	19.5%
2023	1,651,564	292,646	17.7%	1,022,270	61.9%	336,648	20.4%
2024	1,659,094	292,375	17.6%	1,013,094	61.1%	353,625	21.3%
2025	1,666,389	292,970	17.6%	1,002,223	60.1%	371,196	22.3%
2026	1,673,325	293,618	17.5%	989,721	59.1%	389,986	23.3%
2027	1,679,789	293,290	17.5%	977,732	58.2%	408,767	24.3%
2028	1,685,899	291,918	17.3%	967,638	57.4%	426,343	25.3%
2029	1,691,641	291,285	17.2%	957,163	56.6%	443,193	26.2%
2030	1,696,893	290,546	17.1%	946,463	55.8%	459,884	27.1%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른 충청북도의 장래인구 추계는 2013년 1,561,471명을 시작으로 2030년 1,696,893명으로 예측됨.
- 연령별 인구비중은 0~19세가 21.7%에서 17.1%로 감소, 20~64세는 63.7%에서 55.8%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14.6%에서 27.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인구 및 사망자 추계

- 화장에 대한 선호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에도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

성별에 따른 선호도 : 설문조사결과 화장의 선호도가 남성 37.6%, 여성 42.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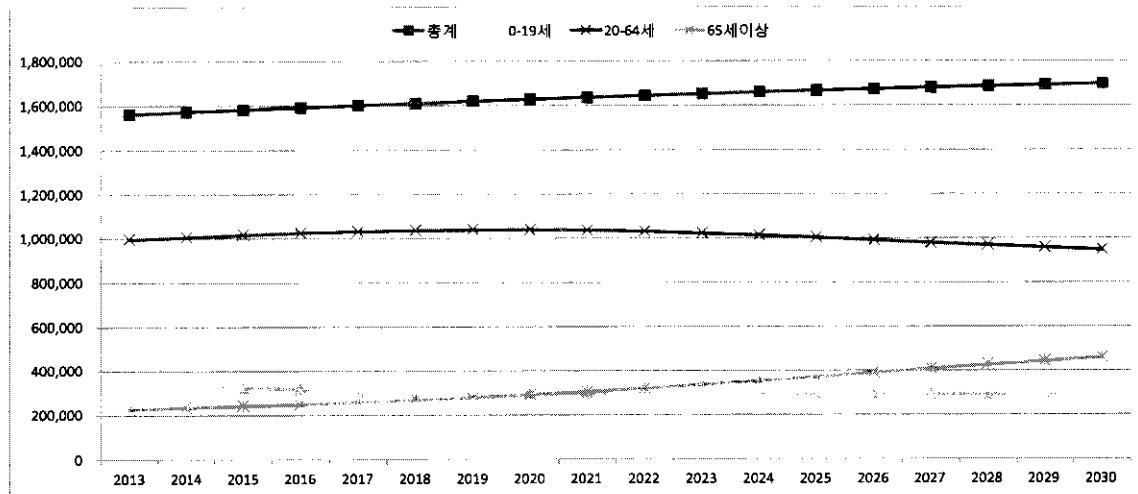


그림 6-1. 충북도 연령별 장래 인구 추계(단위: 명)

<표 6-3> 충청북도 장래인구 및 사망자 추계-통계청

연도	추계 인구(명)			사망 인구(명)			사망률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3	1,561,471	787,632	773,839	10,774	5,435	5,339	0.69%
2014	1,571,742	792,380	779,362	11,159	5,626	5,533	0.71%
2015	1,581,687	797,002	784,685	11,546	5,818	5,728	0.73%
2016	1,591,372	801,488	789,884	11,935	6,011	5,924	0.75%
2017	1,600,819	805,898	794,921	12,326	6,205	6,121	0.77%
2018	1,609,994	810,206	799,788	12,719	6,401	6,318	0.79%
2019	1,618,839	814,339	804,500	13,113	6,596	6,516	0.81%
2020	1,627,416	818,356	809,060	13,345	6,711	6,634	0.82%
2021	1,635,763	822,266	813,497	13,740	6,907	6,833	0.84%
2022	1,643,827	826,044	817,783	14,137	7,104	7,033	0.86%
2023	1,651,564	829,663	821,901	14,534	7,301	7,233	0.88%
2024	1,659,094	833,156	825,938	14,766	7,415	7,351	0.89%
2025	1,666,389	836,536	829,853	15,164	7,612	7,552	0.91%
2026	1,673,325	839,689	833,636	15,395	7,725	7,669	0.92%
2027	1,679,789	842,633	837,156	15,790	7,921	7,869	0.94%
2028	1,685,899	845,371	840,528	16,185	8,116	8,069	0.96%
2029	1,691,641	847,929	843,712	16,409	8,225	8,184	0.97%
2030	1,696,893	850,214	846,679	16,969	8,502	8,467	1.00%

- 성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 2030년 총인구 1,696,893명 중에 남성 850,214명, 여성 846,679명으로 2013년 이후 남녀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사망자 추계 결과 2013년 10,774명(0.69%)에서 2030년 16,969명(1.00%)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 사망자 중 남성 8,502명, 여성 8,467명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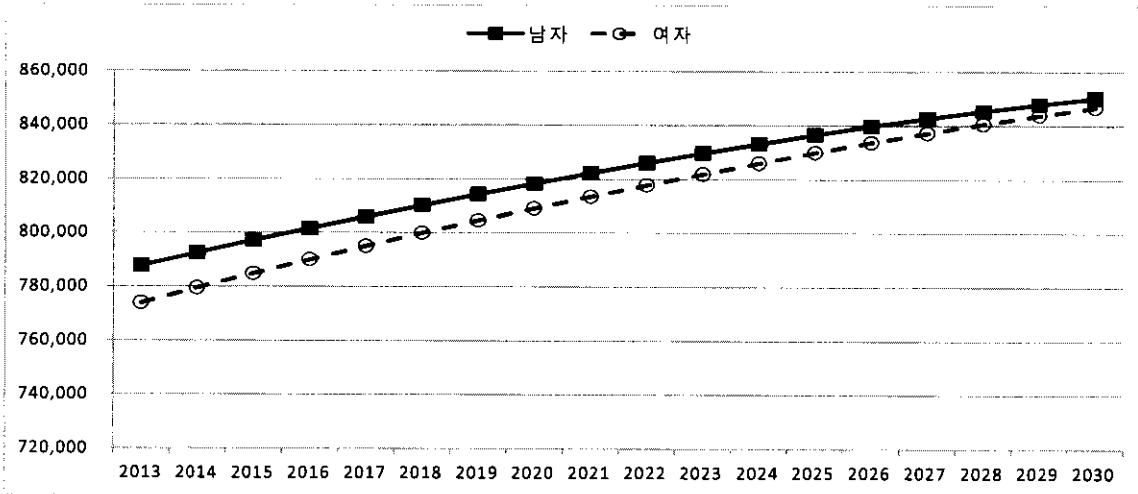


그림 6-2. 충청북도 성별 장래인구 추계 - 통계청(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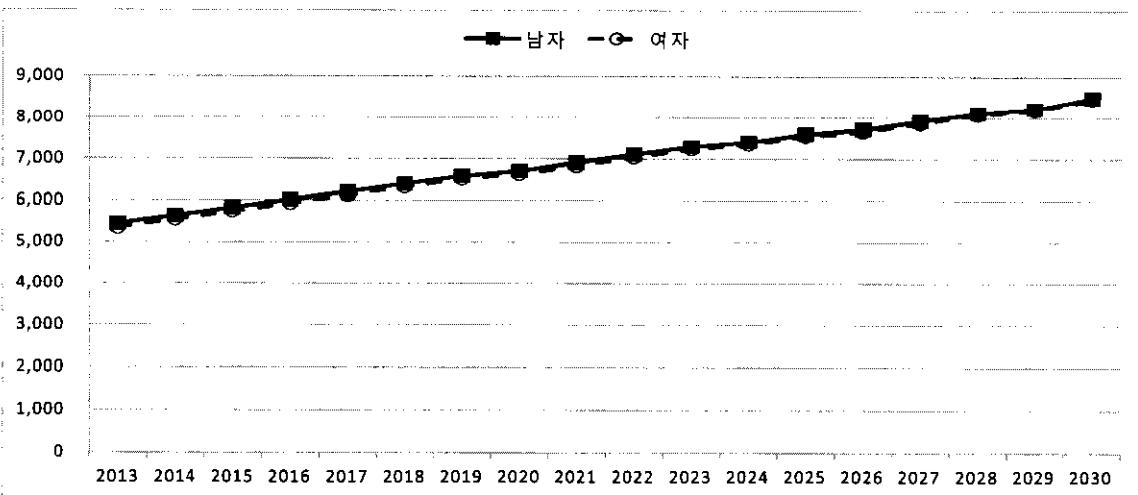


그림 6-3. 충청북도 성별 장래 사망자 추계-통계청(단위: 명)

2) 시계열분석 인구 추계

○ 시계열분석을 통한 장래 사망자 추계

- <표 6-1>의 과거 8년간 충청북도 사망률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하였으며, 일 반적인 시계열 분석기법인 선형분석과 인구증가의 한계치를 고려한 로그분석 방법을 이용함.
- 선형 시계열분석을 이용한 장래 사망률 추계는 2013년 0.66%, 2020년 0.67%, 2025년 0.68%, 2030년 0.69%로 나타남. 로그 시계열분석의 경우 2013년 0.65%, 2020년 0.65%, 2025년 0.66%, 2030년 0.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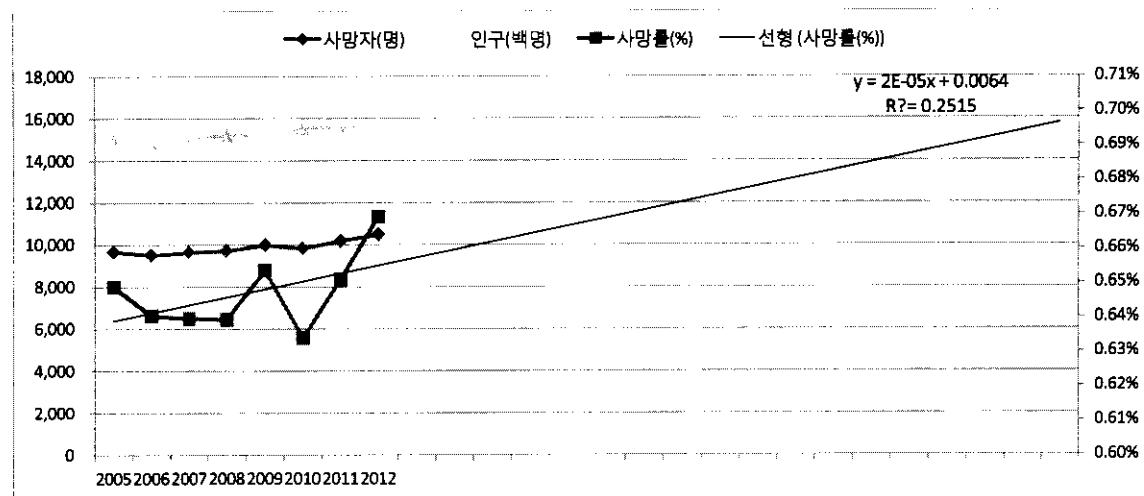


그림 6-4. 충청북도 장래 사망률 추계-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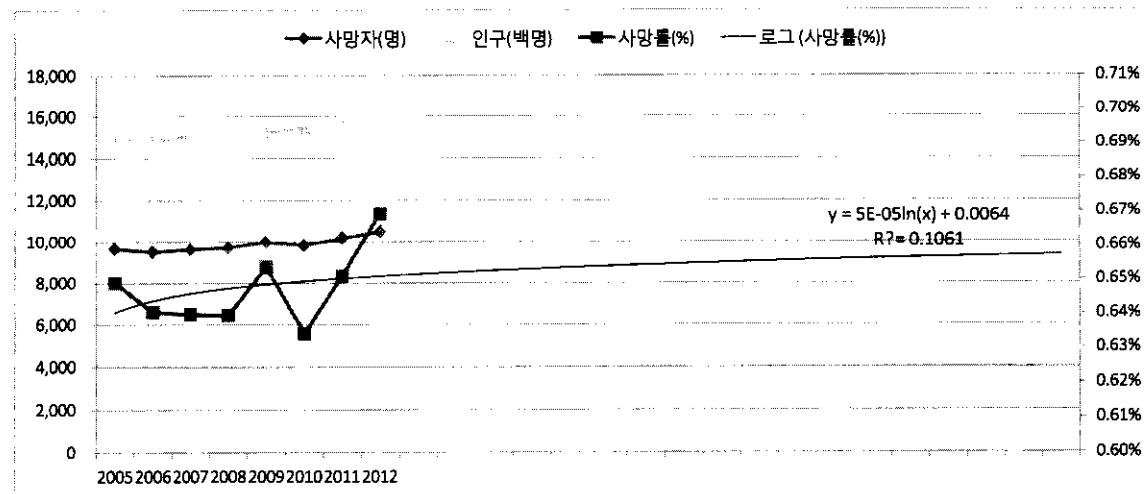


그림 6-5. 충청북도 장래 사망률 추계-로그분석

<표 6-4> 시계열분석과 통계청 자료에 의한 사망자 및 사망률 추계

연도	총 인구	선형 추계		로그 추계		통계청 추계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2013	1,561,471	10,274	0.66%	10,165	0.65%	10,774	0.69%
2014	1,571,742	10,373	0.66%	10,240	0.65%	11,159	0.71%
2015	1,581,687	10,471	0.66%	10,312	0.65%	11,546	0.73%
2016	1,591,372	10,567	0.66%	10,383	0.65%	11,935	0.75%
2017	1,600,819	10,661	0.67%	10,451	0.65%	12,326	0.77%
2018	1,609,994	10,755	0.67%	10,516	0.65%	12,719	0.79%
2019	1,618,839	10,846	0.67%	10,580	0.65%	13,113	0.81%
2020	1,627,416	10,936	0.67%	10,641	0.65%	13,345	0.82%
2021	1,635,763	11,025	0.67%	10,701	0.65%	13,740	0.84%
2022	1,643,827	11,112	0.68%	10,758	0.65%	14,137	0.86%
2023	1,651,564	11,198	0.68%	10,813	0.65%	14,534	0.88%
2024	1,659,094	11,282	0.68%	10,867	0.65%	14,766	0.89%
2025	1,666,389	11,365	0.68%	10,919	0.66%	15,164	0.91%
2026	1,673,325	11,446	0.68%	10,968	0.66%	15,395	0.92%
2027	1,679,789	11,523	0.69%	11,014	0.66%	15,790	0.94%
2028	1,685,899	11,599	0.69%	11,058	0.66%	16,185	0.96%
2029	1,691,641	11,672	0.69%	11,099	0.66%	16,409	0.97%
2030	1,696,893	11,742	0.69%	11,137	0.66%	16,969	1.00%

- 사망률 추계를 이용하여 사망자 수를 산정한 결과 선형 시계열분석은 2013년 10,274명, 2020년 10,936명, 2025년 11,365명, 2030년 11,742명으로 분석되었으며, 로그 시계열분석은 2013년 10,165명, 2020년 10,641명, 2025년 10,919명, 2030년 11,137명으로 분석됨.
- 통계청의 사망자 추계자료와 비교할 때 선형분석은 5,227명, 로그분석은 5,832명이 적게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통계청의 사망률 및 사망자 수가 일반적인 시계열분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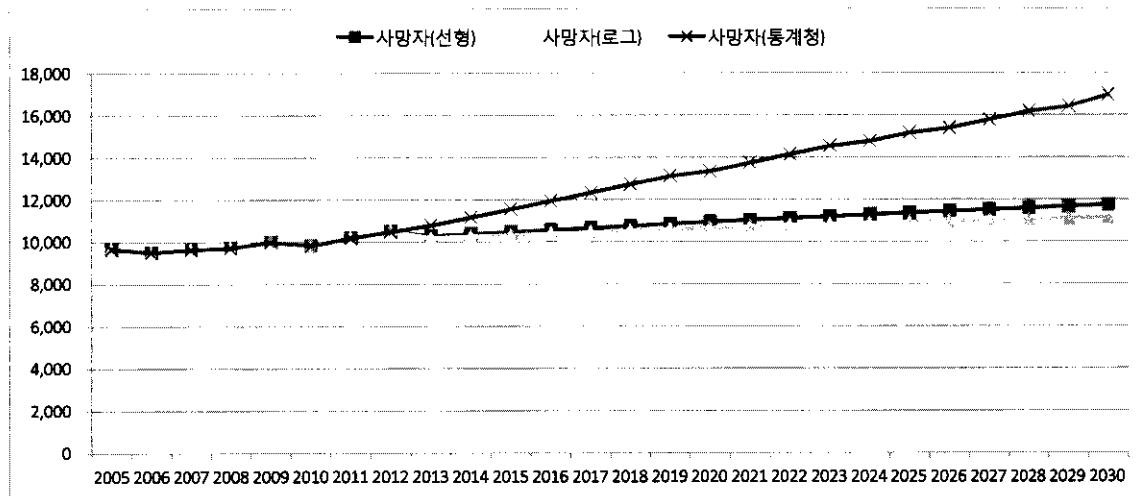


그림 6-6. 시계열분석(선형, 로그)과 통계청에 의한 사망자 추계(단위: 명)

3) 장래인구 및 사망자 추계 방법 선택

○ 타 지역 사례

- 경기도(2009) : 장래인구 및 사망자 추계에 통계청 자료 인용
- 인천광역시(2013)
 - 장래인구 추계 : 통계청 자료와 도시기본계획(2025) 비교
 - 사망률 추계 : 통계청 자료 인용

○ 본 연구에서의 적용방법

- 장래인구 및 사망자 추계에 대한 통일성 있는 자료가 요구되며
- 통계청 자료가 시계열(선형, 로그) 예측자료 보다 많게 예측하여 장사시설의 수요 및 수급을 전망할 때 충분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장래 인구 및 사망률을 근거로 분석함.

2. 시군별 장래 인구 및 사망자 추계

1)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 시군별 장래 인구 추계 방법

- 장래 인구 기준 : 통계청의 충북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시군별 장래 인구
 - 통계청에서 시군별 장래 인구를 추계한 자료가 없으므로
 - 충북 전체인구 중 최근 5년간 각 시군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분석하여
 - 선형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장래 시군별 인구비율을 추계하고
 - 충북 장래 추계인구 자료에 각 시군별 인구비율을 곱하여 시군별 장래인구를 산정한 후
 - 충북 전체인구와의 오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인구 수를 조절함⁵⁾.

○ 시군별 인구추이 현황(2005-2012년)

- 충북의 기준 시군별 인구추이는 2012년 기준 청주시 666,852명, 충주시 208,447명, 청원군 154,780명, 제천시 137,521명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충북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청주시 42.3%, 충주시 13.4%, 청원군 9.9%, 제천시 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년간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남.

5) 시군별 인구추계를 분석하여 합하면 충북도 전체 인구와 일치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많이 산정됨). 따라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구가 가장 많은(오차가 클 확률이 높은) 지역(청주시)에서 오차가 발생한만큼 조정해 준다(청주시 추정인구 = 충북도 인구 - 타 시군 인구 합).